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825호
2022. 11. 3.(목)



목 차

◆ 자치법규

[규 칙]

제451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
제451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제451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
제451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16
제4515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9
제4516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

[훈 령]

제104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21

[입법예고]

제2022-2914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
제2022-2916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6
제2022-29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8
제2022-2923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0
제2022-292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2
제2022-293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3
제2022-2954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4

[행정예고]

제2022-2927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36
제2022-2931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41

◆ 고 시

제2022-43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추가 고시	66
제2022-431호	2022년도 제4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안)	67
제2022-432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69
제2022-433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70

제2022-434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1
제2022-435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4
제2022-43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산역)	119
제2022-437호	월드컵 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현장근로자 대기실 신축)	121
제2022-43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가산디지털단지역)	122
제2022-43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새절역)	124
제2022-440호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126

◆ 공 고

제2022-2900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50
제2022-290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51
제2022-2908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56
제2022-2909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57
제2022-291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160
제2022-291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61
제2022-2920호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162
제2022-2925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164
제2022-293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96
제2022-2938호	서울향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197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1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

◆ 구 고 시

제2022-131호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계획시설(광장 : 종묘앞 광장) 결정(변경) - (종로구)	213
제2022-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종로구)	218
제2022-1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종로구)	221
제2022-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종로구)	223
제2022-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227
제2022-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중랑구)	231

제2022-176호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성북구)	234
제2022-14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북구)	235
제2022-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양천구)	238
제2022-160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동작구)	241
제2022-124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253
제2022-125호	도시관리계획(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변경) 고시(관악구)	255
제2022-1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서초구)	256
제2022-1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강동구)	258

◆ 구 공 고

제2022-12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광진구)	260
제2022-1213호	위커힐 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주민의견 수렴 공고(광진구)	262
제2022-1457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열람공고(성북구) ..	263
제2022-1463호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성북구)	279
제2022-146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성북구)	280
제2022-17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금천구)	283
제2022-2071호	『방배숲도서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서초구)	284
제2022-2079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서초구)	287
제2022-183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강동구) ..	291

◆ 사업소고시

제2022-3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2
제2022-3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2
제2022-3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3
제2022-3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3
제2022-3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4
제2022-3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4
제2022-3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5
제2022-3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95

◆ 기 타

제2022-27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96
제2022-2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한강유역환경청)	297
제2022-2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98
제2022-31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299
제2022-3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00

자치법규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 제4511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소방공무원 소방령관 및 소방사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령	163	24		139		
소방사	3,689	14		3,67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근무체계를 3조 2교대로 전환·확대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조 2교대 확대 추진을 위한 직급 조정

－ (직속기관) 소방사 △8 → 소방령 +8

◆ 서울특별시규칙 제4512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3회(최장6년)까지 연장” 을 “총 3회까지(최초 2년을 포함) 연장(최장 6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자금의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상환기간의 최대 연장횟수 및 기간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환조건 규정에서 “3회(최장6년)까지 연장” 을 “총 3회까지(최초 2년을 포함) 연장(최장 6년)” 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규칙 제451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사용허가)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 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2. 7. 11.)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 기준 규정 마련(제2조제4항)

- (1) 특정 단체의 장기간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등에 개방된 시설에 대해 예약전산 시스템 사용, 1일 최대 사용허가 시간 등 공정한 허가기준 규정

나. 시립체육시설 중 3개 시설, 4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 조정(별표 1, 2)

- (1)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조정 및 관련 비고 항목 삭제
- (2)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 교체에 따른 적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용료 규정 개정
- (3) 독섬 승마훈련원 기능 상실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별표 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4,000	
야구장	잠실야구장, 목동야구장, 서남권돔구장	4,000	
축구장	서울잠실울림파크주경기장, 잠실보조경기장, 서울월드컵주경기장,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서남권 돔구장	4,000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	
육상장(트랙)	잠실보조경기장, 목동주경기장, 효창운동장	1,000	
체력단련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서남권 돔구장 체력단련장	4,000	
실내골프연습장	잠실 제1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성인	5,000
		청소년	3,000
	스크린 골프연습장	9홀	8,000
		18홀	15,000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성인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체조관	잠실체조관	3,000	
수영장	잠실 제1수영장, 잠실 제2수영장	성인	4,000
		청소년	3,000
		어린이	2,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성인	4,000 (1시간)
		청소년	2,800 (1시간)
		어린이	2,500 (1시간)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성인	3,500 (1시간)
		청소년	2,000 (1시간)

시 설		금 액	
		어린이	1,500 (1시간)
빙상장	목동실내빙상장	성인	4,000
		청소년	3,500
		어린이	3,000
클라이밍장	산악문화체험센터	성인	3,000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비고	1.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2. 천연잔디가 식재된 경기장·운동장에 대하여는 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3. 월 개인연습사용권은 해당 사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개인연습사용료에 관하여는 위 표의 시설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준용한다.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가. 잠실종합운동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제1·2 수영장	성 인	21,000	40,000	60,000	75,000	85,000	95,000
	청소년	12,000	24,000	35,000	42,000	50,000	55,000
	어린이	9,000	18,000	24,000	32,000	40,000	44,000
체력단련장		45,000					
골프연습장	성 인	50,000					
	청소년	40,000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	성 인	7,500	15,000	22,500	30,000	33,700	36,700
	청소년	5,600	11,200	16,800	22,400	25,200	27,400
	어린이	4,700	9,400	14,100	18,800	21,100	22,9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은 월 개인사용료 이용자에 한한다.						

나. 서남권 돔구장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4,000	28,000	42,000	56,000	63,000	68,600
	청소년	8,000	16,000	24,000	32,000	36,000	39,200
	어린이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29,400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다. 목동실내빙상장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성 인 반(주 3회)	73,000	1일 1시간, 1개월 기준
초·중·고반(주 2회)	73,000	
초·중·고반(주 3회)	88,000	
초·중·고반(주 5회)	140,000	
주말반(주 1회, 1일 2시간)	73,000	

라. 창동문화체육센터

(단위: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수영장	성 인	15,400	35,000	48,400	61,600	69,300	75,400
	청소년	8,800	17,600	34,000	35,200	39,600	43,100
	어린이	8,200	16,400	30,000	32,800	36,900	40,100
체력단련장	44,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50분으로 한다.						

마. 장충체육관

시 설	수강료
다목적실1	100,000
다목적실2	100,000
비 고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바. 산악문화체험센터

(단위 : 원)

시 설	대 상	수 강 료	비 고
클라이밍장	성 인	36,000	월8회, 1일 1시간 기준
	청소년	32,000	
	어린이	30,000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통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3,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1,000	181,000	423,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73,000	110,000	244,000	
	제1·2 수영장	09 : 00-18 : 00	804,000	1,206,000	1,548,000	
		09 : 00-12 : 00	268,000	402,000	516,000	
		12 : 00-18 : 00	680,000	1,020,000	1,341,000	
	야구장		221,000	331,000	530,000	
	올림픽주경기장		516,000	774,000	1,252,0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8,000	222,000	355,000	
	체조관		41,000	62,000	138,0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5,000			
	풋살구장(2시간)		41,6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571,000	857,000	1,267,000	
	보조경기장	1일	232,000	350,000	560,000	
		2시간	93,000	140,000	224,000	
	풋살구장(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			
	회의실(4시간)		388,000			
	연회장(4시간)		715,000			
	VIP룸(4시간)		1,050,300			
	가변무대		749,000			
	3층데크,광장(4시간, m²당)		210			
	회원실식당(4시간)		630,25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 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A2				77,800
		A3				63,400
		A4				61,800
		A5				45,600
서남권 돛구장	야 구 장		224,000	336,000	538,000	
	축구장	1일	155,000	232,000	372,000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수영장	2시간	51,000	77,000		
		09:00 - 18:00	489,000	735,000	942,000	
		09:00 - 12:00	163,000	245,000	314,000	
		12:00 - 18:00	413,000	621,000	816,000	
	보행광장 (4시간, m ²)		200			
	풋살구장 (1면, 2시간)		32,000	48,000	64,000	
	볼펜 (2시간)		94,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수하지 아니한다.)			
기초운동장	주경기장	1일	170,000	256,000	409,000	
		2시간	68,000	102,000	163,000	
	야구장	1일	111,000	167,000	466,000	
		3시간	66,000	100,000		
	실내빙상장		102,000 (1시간)	153,000 (1시간)	7,331,000	110,000 (1시간)
	다목적구장		44,000(1면, 2시간) 89,000(2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5,000	187,000	300,000	
		2시간	50,000	74,000		
장충체육관	주체육관		129,000	193,000	451,000	
	보조체육관(3시간)		25,800	60,000	79,800	
	다목적실(3시간)		12,000	31,200	37,200	
구의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신월야구공원		1일	99,000	149,000	285,000	
		3시간	59,000	89,000		
창동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3시간)		173,000	173,000	224,900	
산악문화체험센터	기획전시실		158,000			
	다목적실		352,000			
	시청각실		232,000			
	클라이밍장 (1루트 2시간) ※개인연습사용료 별도		25,000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비 고	1. 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평일, 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권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7.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권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 서울특별시규칙 제4514호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맡는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위기청소년 업무 담당 장학관
2. 서울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취업 업무 담당 부서장
4. 서울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장 및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단장
5. 서울북부·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
6. 서울보호관찰소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7. 서울특별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8. 각급 학교의 장
9.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시설의 장
10.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5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을 맡는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기청소년 발굴 및 보호를 위해 시장이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며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규칙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 설치 및 구성

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및 개최 시기 및 수당 지급 등

◆ 서울특별시규칙 제4515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립된 마일리지”를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납세자가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한 포인트 및 마일리지(mileage)”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하여는 마일리지 소멸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있는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 30만원 미만 납부 건당 350원 적립 및 부과금액 30만원 이상 납부 건당 850원 적립과 자동이체자 납부 건당 500원 적립을 폐지함(제3조 제3항 삭제).

◆ 서울특별시규칙 제4516호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조례가 2021. 5. 30. 폐지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 폐지함.

2. 주요내용

— 시행규칙 폐지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43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 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총 2,185명” 을 “총 2,176명”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원 정원조정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2,185명에서 2,176명으로 9명 감원 조정(제4조 및 별표).

[별 표]

공무직 정원표 (제4조 관련)

(단위:명)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총 계	2,176	336	529	81	438	233	143	8	17	11	26	430	246	116
본 청	279	106	15	0	69	28	30	0	6	0	5	82	6	1
민방위담당관	4				2	1	1					2		
빅데이터담당관	4	4												
일자리정책과	22	22												
복지정책과	3	3												
안심돌봄복지과	1	1												
어르신복지과	1	1												
택시정책과	1	1												
물류정책과	1	1												
문화재관리과	11	2	9											
총무과	166	53			54	22	23		4		5	59		
정보공개담당관	8	8												
정신건강과	1	1												
감염병관리과	3	3												
동물보호과	8	2	6											
건축기획과	2	2												
광화문광장사업과	11				2				2			8	1	
주택정책과	2	2												
소방행정과	16				5	3	2					5	5	1
안전지원과	14				6	2	4					8		
직속기관	284	62	2	0	115	92	15	0	2	2	4	81	24	0
서울시립대학교	104	22			22	10	8		2		2	40	20	
보건환경연구원	25	8			10	4	4			2		7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인재개발원	4											4		
서울종합방재센터	1											1		
농업기술센터	10	7			2						2	1		
119특수구조단	1											1		
소방서	120	25			75	75						20		
소방학교	19		2		6	3	3					7	4	
사업소	1,602	168	512	81	254	113	98	8	9	9	17	256	216	115
상수도사업본부	128	9	7		50	21	20				9	46	12	4
한강사업본부	138		76		5	1	1		1	1	1	51	3	3
데이터센터	9				3	3						3	3	
시립어린이병원	45	12			9	4	5					11	2	11
시립서북병원	63	7			12	5	6		1			10	9	25
시립은평병원	27	4			8	4	4					5	6	4
서울역사박물관	127	37			28	14	14					28	34	
한성백제박물관	89	44			14	4	4		1	1	4	8	23	
서울시립미술관	49	5			14	8	5		1			17	9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7		44											23
서울도서관	3	3												
동부도로사업소	26		1	14	8	4	4					1	2	
서부도로사업소	18		1	14								1	1	1
남부도로사업소	21		1	13								2	4	1
북부도로사업소	19		1	14								1	1	2
성동도로사업소	17		1	13								2	1	
강서도로사업소	16		1	13								1		1
서울역사편찬원	9	8										1		
중랑물재생센터	10		3		3	2		1				3	1	
난지물재생센터	7		4		1			1				1		1
동부공원여가센터	76	2	58									6	8	2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계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통신	기타			
중부공원여가센터	114	1	87		3	1	2						23	
서부공원여가센터	137		93		2						2	4	32	6
북부공원여가센터	45		26		2	1	1						17	
서울대공원	192	4	62		67	29	20	6	5	6	1	24	9	26
서울식물원	76	4	46		11	5	5			1		9	6	
아동복지센터	6				2	1	1					3	1	
공무원수련원	15				6	3	3					7	2	
차량정비센터	1											1		
서울시립과학관	47	26			6	3	3					8	6	1
서울기록원	2	2												
품질시험소	3											2	1	
의회사무처	11	0	0	0	0	0	0	0	0	0	0	11	0	0
의회사무처	11											11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14호****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담당 공무원이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단속활동으로 조례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와 달리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누수신고 포상금”을 “포상금”으로 개정(안 제63조제2항)
- 민원신청 등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 사항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63조제2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3146-1209
- (2) E-mail: choyh333@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02-3146-1181)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16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20.10.5.)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기준 및 지원기준을 명료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구를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 에서 “본인 또는 부모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구인 경우” 로 명료화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나. 졸업의 개념 정의를 신설하여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수료 포함)를 말한다.” 라고 규정함(안 제2조)
- 다. 조례상 “서울지역 대학생” 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 “대학생”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중복 해석의 우려가 있는 표현 변경 및 삭제 (안 제3조, 제5조)
- 라. 대출 종류에 따라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또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기준으로 체계화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마.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전화: 02-2133-6578, FAX: 02-768-8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6층

2) 이메일: kyunghwa14@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1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신부, 영유아, 이동 불편 가족 동반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
- 정기간 수요가 높은 노상주차장의 월 정기간 발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주차장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①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 및 이용대상 등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개정)
 -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를 정함(안 제25조의2제4항 개정, 별도 제3호 서식 변경)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신설)
 -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 주차구획은 가족우선 주차구획으로 봄
 - 여성우선 주차구획과 관련된 다른 조례 동시 정비(안 부칙 제3조 신설)
 - 「서울특별시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상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변경
- ② 노상주차장 월 정기간 발행에 관한 내용 신설
 - 주차수요, 지역 여건 등을 고려, 노상주차장 월 정기간 발행
(안 제6조제1항 별표1 비고 제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차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1) FAX : 02-2133-1051

(2) E-mail : lsa9074@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청사 6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53)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3호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 신설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 기금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시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로 변경함.
- 나. 기금명을 기반시설설치기금에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3조).
- 다. 법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을 재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비로 활용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기금의 운용과 기금관리담당공무원의 지정 및 기금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마.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공자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온라인

- (1) F A X : 02-2133-0757
- (2) 이 메 일 : volumeup84@seoul.go. kr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공공자산담당관(☎02-2133-9427)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누수 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청·동주민센터·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관할 수도사업소에 이첩한 누수신고 민원에 대해서도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63조제1항)
 나. 누수신고 포상금 지급 기한 명시(안 제63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FAX: 02)3146-1529
 (2) E-mail: dejavu55@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대응과(☎02-3146-1520)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5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원칙적으로 전액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되, 수도사용자 등의 보온조치 소홀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전액 시의 부담으로 교체하되,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이 훼손·노출·이탈된 상태에서 계량기가 동파된 경우에는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을 비용으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54조제1항).

나. 별지 제57호 서식 변경(설치비용 및 봉인대금 면제 신청서 → 수도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면제 신청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FAX: 02)3146-1209
- (2) E-mail: shsarang@seoul.go.kr
- (3)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02-3146-1249)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54호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광화문광장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광장 내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의 보장 등을 위해 현행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음연도 사용허가 가능범위 확대(안 제4조)

- 다음연도 사전 신청가능 범위를 30일에서 100일로 확대
- 광화문광장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나. 광고 및 판매행위 가능 단서 조항 추가(안 제7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공익 목적의 경우, 광장 내 광고 및 판매행위를 허용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 광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한 완화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광화문광장사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화문광장사업과(전화: 02-2133-7727, 팩스: 02-768-8956, 이메일: marchair@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9층 광화문광장사업과
- 이메일 : marchair@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7호****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예규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 하수급인의 권리보호,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안 제20조제5항 신설).

나. 계약상대자는 주요 공정별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함(안 제2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 (1) 팩스: 02-768-8892
- (2) 이메일: ragen22@seoul.go.kr
-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02-2133-8555)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팀장 신현석, 담당 김성길								
4. 근거법령명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등				관 련 규제수	2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서울특별시와 계약하는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건설공사 업체 등)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한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의무화 조항 신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건설현장은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구조적 문제로 이에 따른 불공정 행위는 하수 급인, 근로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어 안전·품질에 악영향
 - 원도급자의 경우 저가 하도급, 업무·비용 전가 등 문제 심각하므로 하도급 계약 시 불공정 관행 개선 필요
-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해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근거) 부재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제출을 의무화 하고,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공사 중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공공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계약 체결 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및 공사 중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등 확보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부당특약 및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방지 및 공사 중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은 관련 법,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및 공사 중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 의무화는 건전한 하도급 계약 및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사회적 제약요소는 없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현재의 기술수준, 행정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본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은 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해당 없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 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를 통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 제출 및 공사 중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하도급 계약 및 공사장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동영상 촬영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본 규정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공정한 하도급 계약 정착 및 공사품질 향상·안전 확보 등을 통한 공익성이 훨씬 크다 할 것임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부당특약 및 불공정 하도급 계약 방지 및 공사 중 주요 공정 동영상 촬영은 관련 법,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으로 규제의 기준은 명확함

☐ 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참가자는 공고를 통해 공사계약 특수조건 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입찰 참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게 됨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8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제2항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93조제11항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존속기한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해당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해당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1부.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1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조성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00호)에 따라 2019. 1. 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2호로 고시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시 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및 운영상 개선 필요사항의 보완을 위해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이해가 쉽게 기준 재구성

- 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천㎡ 이상 : 인증 관리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시뮬레이션 필요)
- 주거 30세대, 비주거 연면적 3천㎡ 미만 : 개별요소 관리
 - 에너지절약계획서 중 단열, 기밀, 냉난방설비 등 단순 항목 적용여부 체크

나. '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단계적 시행

- '23년부터 민간 비주거 10만㎡, 주거 1,000세대 ZEB 의무화 시행
- ZEB를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혁신적 기여

다. 소규모 건축물로 적용대상 확대하여 에너지 관리 강화

기 존	개 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냉난방면적 500㎡ 이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 확대 예상 물량 : 매년 3238동, 연면적 약 100만㎡

-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성능 요구수준은 비교적 낮게 시작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단열 점수 0.8점 획득 의무화

라. 효율과 경관 개선을 위한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도입

- 경관 개선을 위해 태양광 패널 상하단 높이 차이를 1m 이하로 유지

○ 디자인을 고려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적극 권장

마. 중대형 건축물 녹색건축 인증 의무기준 완화

○ [가]등급(연면적 10만, 1천세대 이상) : 녹색건축 1등급 → 2등급

○ [나]등급(연면적 1만, 3백세대 이상) : 녹색건축 2등급 → 3등급

바. 녹색건축 인센티브 부여량 및 중첩한도 명확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내 인센티브 중첩 상한치 명시(최대 15%)

○ 순환골재 인센티브량 조정(최대 15% → 5%)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3.(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건축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6

(2) E-mail : chjm2m@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건축기획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02-2133-7104~6, 7276)

※ 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부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31호

이 고시(안)은 확정된 고시안이 아니므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조성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0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2호, 2019.1.24.)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제1조 적용대상 및 방법**

- ① 이 기준은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 ②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재축의 경우 다음의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등급	주거	비주거
[가]	1000세대 이상	연면적의 합계 10만㎡ 이상
[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만㎡ 이상~10만㎡ 미만
[다]	30세대 이상 ~ 30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3천㎡ 이상~1만㎡ 미만
[라]	8세대 이상 ~ 30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천㎡ 이상~3천㎡ 미만
[마]	8세대 미만	연면적의 합계 1천㎡ 미만

- ③ 제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전면 대수선, 증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구 분	내 용
전면 대수선*	제1조제2항의 건축물 용도와 규모에 따른 등급에서 한 등급 낮추어 적용 ([가]→[나], [나]→[다], [다]→[라], [라]→[마])
전면 대수선* 외의 증축, 일부 개축, 용도변경	열 손실의 변동이 있는 부위가 포함된 실(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상인 경우, 그 변동 부위에 대하여 [마] 등급 적용

* 전면 대수선 : 건축물의 단열을 포함한 외피 면적의 80% 이상 및 주 열원 설비 전체를 철거 후 성능 개선을 시행하는 공사

④ 건축물 용도 및 규모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구 분	내 용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주거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제3호부터 제29호까지
	※ 동일 대지 내 주거와 비주거 용도를 구분하여 각각 적용	
규모	○ 주 거 : 세대수의 합계 ○ 비주거 : 연면적의 합계. 다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냉·난방 면적이 연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냉난방 면적의 합계를 적용	

제2조 적용기준

① 제1조제2항의 [가],[나],[다]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환경성능	녹색건축인증	[가]	그린 2등급(우수)							
		[나]	그린 3등급(우량)							
		[다]	그린 4등급(일반)							
에너지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가]	1++등급							
		[나] [다]	1+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1)	[가]	' 23년부터 ZEB 5등급							
		[나]	' 24년부터 ZEB 5등급							
		[다]	' 24년부터 ZEB 5등급				' 25년부터 ZEB 5등급			
에너지 관리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가]	①세대별 에너지원별모니터링2) +②공용부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③데이터 분석				④동별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⑤5종이상 에너지 용도별3) 모니터링 +⑥BEMS 설치			
		[나]	① + ②				④ + ⑤			
		[다]	①				③ + ④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4)		' 22	' 23	' 24	' 25~	' 22	' 23	' 24	' 25~
		[가]	9%	10%	11%	12%	13%	14%	15%	16%
		[나]	8.5%	9.5%	10.5%	11.5%	12%	13%	14%	15%
		[다]	8%	9%	10%	11%	11%	12%	13%	14%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태양광 설비 의무설치	[가] [나] [다]	태양광 설비 의무설치 용량(kWp) = 대지면적(m ²) × 0.01(kWp/m ²)	
기타	기계환기장치	[가] [나] [다]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5)을 갖는 열회수형 환기장치6) 설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가] [나] [다]	전체 승강기 동력의 60% 이상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7)	

-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성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항목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 2) 에너지원별 모니터링은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와 수도(단, 주거용 [다]급 건물은 수도 사용량 모니터링 제외)를 대상으로 하되, 주거 시설의 세대 분전함 내 배선은 기능(전열, 전등, 냉방)별로 분리한다.
- 3) 난방, 냉방, 급탕, 공조용 팬, 펌프(열원용, 급탕용, 급수용), 전등, 전열, 엘리베이터 중 5개 선택하여 적용한다.
- 4) 태양광은 [별표1] 설치기준을 따르며, 산출방식은 「서울특별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서울특별시 고시)을 따르되 공동주택은 용도별 단위에너지사용량을 230kWh/m²으로 반영한다. 또한 [별표2]에 따른 대체 비율은 의무설치 비율의 최대 50% 미만까지 인정한다.
- 5)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는 입자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 광산란 적산법으로 95% 이상 확보한다.
- 6)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되,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은 냉방 45%, 난방 70% 이상 수준 의 열회수 기능을 확보한다.
- 7) 5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기계실 없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조제2항의 [라], [마] 등급에 대하여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에너지성능 (A 또는 B 선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A)	[라]	1등급 (' 25년부터 ZEB 5등급)
		[마]	2등급
	EPI1) 기준 (B)	[라]	건축부문 1번(거실의 외벽단열), 2번(지붕단열), 3번(바닥단열), 5번(창 및 문의 기밀성능), 기계부문 1번(난방), 2번(냉방)2), 전기부문 12번(대기전력차단장치) 항목 각 0.9점
		[마]	건축부문 1번(거실의 외벽단열), 2번(지붕단열), 3번(바닥단열), 5번(창 및 문의 기밀성능), 기계부문 1번(난방), 2번(냉방), 전기부문 12번(대기전력차단장치) 항목 각 0.8점

구 분	평가내용	적용기준	
		대상	주거, 비주거
기타	기계환기장치	[라]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3)을 갖는 열회수형 환기장치4) 설치

-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성능지표(EPI)이며, EPI의 점수 및 내용은 [별표 3]을 따른다.
- 2) 기계부문 1번(난방), 2번(냉방) 설비 평가는 다음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기계부문 1번 : 전체 난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열식 전기난방,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 난방, 소각로 활용 폐열시스템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부문 2번 : 전체 냉방 용량의 80% 이상을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방(단, 가스히트펌프 방식은 제외), 지역냉방 또는 소형열병합 냉방으로 채택한 경우
 - 기계부문 1번 및 2번 : 입주자 공사분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시 까지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신설하거나 교체하지 않는 경우
- 3)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서 규정하는 입자포집률을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 이상, 광산란 적산법으로 95% 이상 확보한다.
- 4) 전체 외기도입 풍량의 60%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되,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유효전열교환효율은 냉방 45%, 난방 70% 이상 수준의 열회수 기능을 확보한다.

제3조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완화기준의 적용은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과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완화기준 적용 방법

가. 용적률 완화 : 용적률 $\times$ [1 + 완화기준]

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최고높이 $\times$ [1 + 완화기준]

2. 완화기준 적용 대상 : 제3호 완화기준 등급을 달성한 건축물

- ※ 2024년까지 제2조 적용기준 적용 시에도 제3호 완화기준 적용이 가능하나,
2025년부터는 제2조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등급을 달성한 경우에만 제3호 완화기준 적용

3. 완화기준 : 가~다 항목을 합산하여 15%이하로 적용하되, 가목과 나목은 합산하지 않고 달성한 등급에 해당하는 최대 완화비율을 적용한다.

- 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9%	6%
1등급	6%	3%

나.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최대완화비율
ZEB 1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인 건축물	15%
ZEB 2	에너지 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인 건축물	14%
ZEB 3	에너지 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인 건축물	13%
ZEB 4	에너지 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인 건축물	12%
ZEB 5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 ~ 40% 미만인 건축물	11%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을 획득한 경우 최대 완화비율은 10%

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량의 용적비율	최대완화비율
15% 이상 사용하는 경우	3%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4%
25% 이상 사용하는 경우	5%

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경감률(2023.12.31.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녹색건축 인증 등급	최우수 (그린1등급)	우수 (그린2등급)
	1+등급 이상	10%	5%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등에 따른 완화기준에 따른 경감률(2023.12.31.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경감률
ZEB 1~ZEB 3	20%
ZEB 4	18%
ZEB 5	15%

제4조 제출 시기 및 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해당시)
사용승인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제5조 적용의 완화

건축주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기초공사 전으로서 전면 재설계(에너지요구량 10%이상 증가, 연면적 10%이상 변경, 건축물의 주용도 변경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의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녹색건축 설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이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

건축물의 태양광설비 설계기준**1. 공통사항**

- 가. 태양광설비는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고, 색상과 디자인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 나. 아래의 기준에 대하여 디자인 등 특화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심의 등을 통해 완화 적용할 수 있다.

2. 옥상 및 지붕 설치 등 수평형

- 가. 독립구조형 태양광 패널의 설치 경사각은 발전효율 및 오염(soiling)을 고려하여 10~40도 이내로 설치하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차를 1m이하로 계획한다.
- 나. 경사지붕형은 남향에 접한 지붕에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 다. 관리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 시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 등의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 라. 태양광 발전과 연계하여 옥상녹화 및 쿨루프 계획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마.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벽면 및 발코니 설치 등 수직형

- 가. 일조환경이 적정할 경우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 외벽, 창호 등)를 최대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나. 발전효율 및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사를 주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세대별로 개별 설치하는 불가하며, 동별로 설치하는 가능하다.

※ 태양광설비 설치 관련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을 따른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 대체비율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성능 대체비율	건축물의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보다 1차에너지소요량이 적으면 차이값만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를 완화 (1)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 대상건축물의 1차에너지소요량(b) (2)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및 소요량(b) (단위: kWh/m²·y)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주거</th><th colspan="3">비주거</th></tr><tr><th>[가]</th><th>[나]</th><th>[다]</th><th>[가]</th><th>[나]</th><th>[다]</th></tr><tr><td>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td><td>90</td><td colspan="2">120</td><td>140</td><td colspan="2">200</td></tr><tr><td>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td><td colspan="6">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td></tr></table>	구 분	주거			비주거			[가]	[나]	[다]	[가]	[나]	[다]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90	120		140	200		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구 분		주거			비주거																														
		[가]	[나]	[다]	[가]	[나]	[다]																													
	규모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값(a)	90	120		140	200																														
대상건축물 1차에너지 소요량(b)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결과 또는 1차에너지소요량 분석결과																																			
(3) 성능대체비율 도출 (단위: kWh/m²·y)																																				
<table><tr><th colspan="2">주 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0당 대체비율 0.25% 포인트씩 대체 인정</th><th colspan="2">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5당 대체비율 0.5% 포인트씩 대체 인정</th></tr><tr><th>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th><th>대체비율</th><th>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th><th>대체비율</th></tr><tr><td>10 이상</td><td>0.25%</td><td>15 이상</td><td>0.50%</td></tr><tr><td>20 이상</td><td>0.50%</td><td>30 이상</td><td>1.00%</td></tr><tr><td>30 이상</td><td>0.75%</td><td>45 이상</td><td>1.50%</td></tr><tr><td>40 이상</td><td>1.00%</td><td>60 이상</td><td>2.00%</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주 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0당 대체비율 0.25% 포인트씩 대체 인정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5당 대체비율 0.5% 포인트씩 대체 인정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대체비율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대체비율	10 이상	0.25%	15 이상	0.50%	20 이상	0.50%	30 이상	1.00%	30 이상	0.75%	45 이상	1.50%	40 이상	1.00%	60 이상	2.00%	.	.	.	.	.	.	.	.	.	.	.	.
주 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0당 대체비율 0.25% 포인트씩 대체 인정		비주거: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15당 대체비율 0.5% 포인트씩 대체 인정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대체비율	1차에너지소요량 차이값	대체비율																																	
10 이상	0.25%	15 이상	0.50%																																	
20 이상	0.50%	30 이상	1.00%																																	
30 이상	0.75%	45 이상	1.50%																																	
40 이상	1.00%	60 이상	2.00%																																	
.	.	.	.																																	
.	.	.	.																																	
.	.	.	.																																	
대지외부 대체비율	(1) 설치유형 : 신설(기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는 미인정) (2) 설치장소 : 대상건물 대지 외 (3) 제출서류 : 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비를 계산서, 설치 전후 사진 및 도면, 설치관련 계약서(협정서), 활용계획서, 납품확인서 등 증빙서류																																			

[별표 3]

에너지성능지표(EPI) (제2조제2항 관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지제1호)

구 분			배 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W/m²·K) (창 및 문을 포함)		비주거	0.490미만	0.490~ 0.560미만	0.560~ 0.620미만	0.620~ 0.680미만	0.680~ 0.740미만
			주거	0.340미만	0.340~ 0.380미만	0.380~ 0.420미만	0.420~ 0.460미만	0.460~ 0.500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W/m²·K)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		0.090미만	0.090~ 0.100미만	0.100~ 0.110미만	0.110~ 0.130미만	0.130~ 0.150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W/m²·K)		0.120미만	0.120~ 0.130미만	0.130~ 0.150미만	0.150~ 0.170미만	0.170~ 0.210미만	
	5.기밀성 창 및 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m³/h·m²))		1등급 (1 m³/h·m² 미만)	2등급 (1~2 m³/h·m² 미만)	3등급 (2~3 m³/h·m² 미만)	4등급 (3~4 m³/h·m² 미만)	5등급 (4~5 m³/h·m² 미만)	
기 계 부 문	1.난방 설비 (효율%)	기름 보일러		93이상	90~ 93미만	87~ 90미만	84~ 87미만	84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90이상	86~ 90미만	84~ 86미만	82~ 84미만	82미만
			개별난방방식	1등급 제품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기타 난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2.냉방 설비	원심식(성적계수, COP)		5.18 이상	4.51~ 5.18미만	3.96~ 4.51미만	3.52~ 3.96미만	3.52미만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 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 2중효용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③ 3중효용					
			④ 냉온수기					
	기타 냉방설비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	-	그 외 또는 미설치	
	6.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			전체 환기소요량의 60% 이상 적용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이상, 난방시 15이상,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5%이상, 난방시 70%이상일 경우 배점)				
전 기 부 문	12.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80% 이상	70%이상 ~80%	60%이상 ~70%	50%이상 ~60%	40%이상 ~50%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설계 검토서

○ 사업 개요

사 업 명	000 신축공사		
건 축 주	00건설(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률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용도별면적	000시설 : 000.00㎡ , 000시설 : 000.00㎡		
추진경위	- 2022.00.00. :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 신청 구분

구 분	적 용 여 부 (■ 표시)			
용도	☐ 주거	☐ 비주거		
등급	☐ [개]	☐ [내]	☐ [대]	☐ [래] ☐ [매]
행위 (별첨1)	☐ 신축, 별동 증축, 개축, 재축	☐ 전면 대수선	☐ 전면 대수선 외 (수평·수직 증축, 대수선 등)	☐ 기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ZEB 1	☐ ZEB 2	☐ ZEB 3	☐ ZEB 4 ☐ ZEB 5
신재생에너지	☐ 성능대체	☐ 외부대체	☐ 해당없음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 성능 적용 수준

항 목			적용 수준		근거
			적용기준	설계내용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4등급	그린3등급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EPI 건축부문 1번 항목 (거실의 외벽 단열성능)				
	EPI 건축부문 2번 항목 (지붕 단열성능)				
	EPI 건축부문 3번 항목 (바닥 단열성능)				
	EPI 건축부문 5번 항목 (창 및 문의 기밀성능)				
	EPI 기계부문 1번 항목 (난방 열원설비)				
	EPI 기계부문 2번 항목 (냉방 열원설비)				
	EPI 전기부문 12번 항목 (대기전력차단장치)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신재생 에너지	원별 설치 규모	태양광 (kW)			
		태양열 (㎡)			
		지열 (kW)			
		수열 (kW)			
		연료전지 (kW)			
		집광채광 (㎡)			
		기타()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외부설치** (%)				
기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은 **내용 미기재 가능

○ 건축기준 완화비율

항 목	적용기준	완화비율		근거
		용적율	높이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3~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	(10~15%)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3~5%)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하여 설계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구 분	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설 계 자	(주)00사사무소 (인)	(주)000사무소 (인)	(주)00종합기술 (인)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참여기술자 0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담 당 공무원	홍 길 동 ☎ 02-0000-0000		

○ 검토서 체크리스트(인·허가단계)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	●인증서 등급의 확인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	●인증서 등급 확인
	EPI 기준	외벽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1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지붕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2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바닥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3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기밀성 창 및 문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5번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난방 설비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1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냉방 설비	●에너지성능지표 기계부문 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대기전력 차단장치	●에너지성능지표 전기부문 12번 항목 확인가능서류(세움터 등)	●배점 기준 확인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설치 도면 및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비주거 시설 동별 계량 가능여부 확인도서	●기준충족(장비설치) 여부 확인 ●BEMS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12 만족여부 확인	
신재생 에너지	원별 설치규모	●신재생 설치 도면, 계산서	●신재생 설치용량 확인 ●태양광 의무 설치량 만족여부 확인	
	신재생에너지공급률	●적용비율계산서 ●설계개요	●적용비율 확인 ●용도, 연면적 확인	
기타	기계환기장치	●관련도면(장비일람표) ●환기장치 시험성적서	●기계환기장치에 설치된 공기여과기(필터)의 입자포집률 및 효율 만족여부 확인 ● (유효)전열(%) 냉방/난방 및 도입풍량 확인	
	전력회생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상세도	● 전력회생 인버터 적용여부 확인	

○ 검토서 체크리스트(건축심의단계): 건축기준 완화 적용 건축물일 경우

항목	근거서류	검토사항
녹색건축인증	●녹색건축(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와 가채점표	●인증 등급의 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혹은 적용예정확인서와 적용요소계획	●인증 등급의 확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서,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이상) (예비)인증서 혹은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도면 및 계산서	●인증 등급의 확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따른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확인서	●자재 사용 비율의 확인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형 태양광설비 설치 기준 검토서

건축물	건물(사업)명			주 소		
	층 수			연면적		
검토자	회사명			이 름		
	연락처(☎)			이메일		
설치기준 검토 내용						
구 분	내 용				적합여부	비고
1. 공통 사항	가. 태양광설비는 발전효율을 고려하여 위치와 배치 형태를 결정하고, 색상과 디자인은 도시경관 및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2. 옥상 및 지붕형	가. 독립구조형 태양광 패널의 설치 경사각은 발전효율 및 오염(soiling)을 고려하여 10~40도 이내로 설치하되,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평지붕 옥상의 독립구조형 패널은 상단부와 하단부의 높이차를 1m이하로 계획한다.					
	나. 경사지붕형은 지붕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자가 점검 및 유지관리 시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 등의 점검공간을 확보한다.					
	라. 태양광 발전과 연계하여 옥상녹화 및 쿨루프 계획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마.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의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벽면형	가. 일조환경이 적정할 경우 건물일체형 태양광설비(BIPV : 외벽, 창호 등)를 최대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나. 발전효율 및 입면 디자인을 고려하여 경사를 주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위세대별로 개별 설치하는 불가하다.					
설치 내용						
설비종류	☐ 고정식 ☐ 추적식 ☐ BIPV ☐ BIPV 그 외					
설치용량	모듈(kW)			인버터(kW)		
태양광 모듈	모델명			최대출력(kWp)	수량(매)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인버터	모델명			정격용량(kW)	대수(수)	
	인증여부	☐ 예 ☐ 아니오		인증번호		
연계방식	☐ 자가용 ☐ 상계처리형 ☐ 발전사업형					
설치위치	☐ 옥상 ☐ 벽면 ☐ 지상 ☐ 기타 :					
설비면적	패널면적	㎡		수평투영면적	㎡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형 녹색건축물 이행 확인서

○ 사업 개요

사업명	000 신축공사	인·허가일자	2022. . (제 호)
건축주	0000(주) 대표이사 000		
대지위치	서울시 00구 00동 00번지		
대지면적	000.00(㎡)	냉난방면적	000.00(㎡)
건축면적	000.00(㎡)	건 폐 율	000.00(%)
연 면 적	000.00(㎡)	용 적 른	000.00(%)
건물규모	지하 00층, 지상 00층	최고높이	000(m)
용 도	00 시설	건물동수	00(동)
시 공 자	00건설(주)	착공일	2022.00.00
추진경위	- 2022.00.00. : 건축허가 - 2022.00.00. : 허가변경	건축허가시 적용기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000호
제출용도	☐ 주거 ☐ 비주거		
건물등급	☐ ㉠ ☐ ㉡ ☐ ㉢ ☐ ㉣ ☐ ㉤		
행위	☐ 신축, 별동 증축, 개축, 재축 ☐ 전면 대수선 ☐ 전면 대수선 외 (수평·수직 증축 등) ☐ 기타		
한전 파워플랜트 (구 i-SMART)	고객번호: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 높이 ☐ 해당없음		
작성책임자 (시공사)	소속: 직위: 성명: (인)		
최종확인자 (감리자)	소속: 직위: 성명: (인)		

○ 이행 확인사항

항 목		적용현황	확인결과
환경 성능	녹색건축인증	그린3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외피 평균 단열성능	외벽	0.9점 (0.500W/m ² K)
		지붕	0.9점 (0.095W/m ² K)
		바닥	0.8점 (0.140W/m ² K)
	기밀성능	창 및 문	0.9점
	냉난방 열원설비	난방	1.0점
		냉방	0.9점
	대기전력차단장치	0.8점 (65%)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관리**	에너지모니터링 및 분석	세대별·원별 모니터링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의무설치	(kW) 10.5kW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태양열	(㎡) -	-
	지열	(kW) 175.8kW	-
	수열	(kW) 100.0kW	-
	연료전지	(kW) -	-
	집광채광	(㎡) -	-
	기타()	-	-
	신재생에너지공급률	(%) 5.1%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자립률(ZEB대상)	(%) 20%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기타	기계환기장치	광산관적산법	96.5%
		계수법	-
		냉방효율	80%
		난방효율	80%
		적용 비율	전체 풍량의 00%
	전력회생 엘리베이터	적용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은 **내용 미기재 가능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2. 구 분							
		신설	○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담당주무관 천희준								
4. 근거법령명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 제31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제3조, 제8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 제7조					관 련 규제수		3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사업자 등								
6. 규제존속기한	관련 규정 폐지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 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단계적 시행 - ' 23년부터 ㉠항목(민간 주거 및 비주거) - ' 24년부터 ㉡항목(민간 주거 및 비주거), ㉢항목(민간 주거) - ' 25년부터 ㉣항목(민간 비주거) - 에너지성능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내용 도입 ○ 소규모 건축물로 적용대상 확대(바닥면적 합계 85㎡ 초과) - 에너지효율 2등급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단열 점수 0.8점 획득 의무화(㉠항목 신설) ○ 환경성능 부문의 녹색건축인증 적용기준 완화 - ㉠항목 : 그린2등급 / ㉡항목 : 그린3등급 ※ 항목별 등급은 낮아졌으나 실제 등급 달성 기준은 강화됨 ○ 에너지성능 부문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의 적용기준 강화 - ㉠항목 : 1++등급 / ㉡·㉢항목 : 1+등급 ○ 녹색건축 인센티브 부여량 조정 - 순환골재 인센티브량 조정 : 최대 5% ○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도입(별표1) - 효율과 경관 개선을 위해 태양광 패널 상하단 높이 차이 1m 이하 유지 및 건물 일체형 태양광 설치 적극 권장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 강화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기준 신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본 고시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경우 ‘07년 성능 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초로 하여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절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건강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임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68.8%를 건물부문에서 차지
-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 추세이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추세로 적극적 감축 노력 필요
- 서울시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는 구조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규모 및 노후 건축물의 개선 필요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 23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 단계적 시행
 - 에너지성능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을 주거, 비주거 구분없이 ㉠항목을 ’ 23년부터 ZEB 5등급 적용, ㉠항목을 ’ 24년부터 ZEB 5등급 적용, ㉠항목의 주거 대상 ’ 24년부터 ZEB 5등급 적용, ㉠항목의 비주거 대상 ’ 25년부터 ZEB 5등급 적용
 - 에너지성능 부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평가내용 도입
- 소규모 건축물로 적용대상 확대
 - 건축물 온실가스 발생 실태조사 용역(2021, 서울기술연구원) 결과, 서울시 주거용 건축물 중 저층주거지(단독, 다가구, 다세대)의 에너지소비량이 62%, 30세대 미만인 64.3%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소규모 건물에 대한 에너지관리가 필요함
 - 바닥면적 합계가 85㎡ 초과하는 건축물 중 제11조에 따른 허가 및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냉·난방면적 500㎡이상)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바닥면적 합계 85㎡초과)으로 개선
 - ㉠항목 성능등급 강화 및 ㉠항목 추가
 - 기존 적용대상 건축물 중 ㉠항목 주거(30세대 미만) 및 비주거(연면적 합계 3천㎡미만)를 ㉠항목 주거(8세대 이상~30세대 미만) 및 비주거(연면적의 합계 1천㎡이상~3천㎡미만), ㉠항목 주거(8세대 미만) 및 비주거(연면적의 합계 1천㎡ 미만)로 구분
 - ※ ㉠항목 →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에너지성능지표(EPI) 도입하여 적용기준 강화
 - 주거, 비주거 구분없이 ㉠항목은 에너지효율 1등급 또는 에너지절약 계획서 단열 점수 0.9점 획득(건축부문 단열 기준 상향), ㉠항목은 에너지효율 2등급 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단열 점수 0.8점 획득(건축기계전기 부문 신설)
- 환경성능 부문의 녹색건축인증 적용기준 완화
 - ㉠항목 : 그린2등급 / ㉠항목 : 그린3등급
 - ※ 항목별 등급은 낮아졌으나 실제 등급 달성 기준은 강화됨
- 소형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 확대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의무대상을 바닥면적 85㎡ 초과 소형건축물까지 확대
 - 기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냉·난방면적 500㎡이상) →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바닥면적 합계 85㎡초과)으로 개선
- 적용대상 건축물 주거(세대) 및 비주거(연면적)에 따른 등급 조정
 - 기존 적용대상 건축물 중 ㉠항목 주거(30세대 미만) 및 비주거(연면적 합계 3천㎡미만)를 ㉠항목 주거(8세대 이상~30세대 미만) 및 비주거(연면적의 합계 1천㎡이상~3천㎡미만), ㉡항목 주거(8세대 미만) 및 비주거(연면적의 합계 1천㎡ 미만)로 구분
 - ※ ㉠항목 → ㉠·㉡항목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성능지표(EPI) 도입하여 적용 기준 점수 강화
- ㉠, ㉡, ㉢항목 성능등급 강화 및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의무화 적용
 - 환경성능 및 에너지성능 부문 적용기준 등급 개선 및 강화
 - 환경성능 부문의 녹색건축인증 적용기준을 기존 적용대상 건축물 ㉠, ㉡, ㉢항목에서 등급을 개선(㉠ : 그린1등급 → 그린2등급(우수), ㉡ : 그린2등급 → 그린3등급(우량), ㉢ : 그린4등급 → 그린4등급(일반))
 - 에너지성능 부문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적용기준 강화

구분		시행	개정
주거	㉠	평균전용면적 60㎡초과 :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이하 : 1등급 이상	1++등급
	㉡, ㉢	평균전용면적 60㎡초과 : 1등급 이상 평균전용면적 60㎡이하 : 2등급 이상	1+등급
비주거	㉠	1+등급 이상	1++등급
	㉡	1등급 이상	1+등급
	㉢	2등급 이상	

※ 주거, 비주거 구분없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항목은 1++등급,

㉡·㉢항목은 1+등급으로 적용 강화

- 신·재생에너지 부문 연도별 의무설치 비율(%) 강화

○ [별표1] 건축물의 태양광설비 설계기준 적용

- 옥상·지붕 설치 등 수평형 및 벽면·발코니 설치 등 수직형 설치시 준수하여야 할 설비 기준 제시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 주거, 비주거 구분없이 ㉠, ㉡, ㉢항목에 전체 승강기 동력의 60% 이상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 5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기계실 없이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

○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적용 조정

- 2025년부터 제2조의 적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완화 기준 적용하고, 완화 기준 적용시 (가)~(다) 기준 합산 상한 규정을 15% 이하 적용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4조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재활용 건

축자재 사용에 따른 완화비율 조정(최대완화 비율 15% → 5% 조정)

-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항목 중 ZEB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건축자재의 완화비율 조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5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비율 조정(2023.12.31.까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 시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그린1등급)일 경우 10%, 우수(그린2등급)일 경우 5% 경감률 적용(2023.12.31.까지)
 - 제로에너지건축물 ZEB 1~3등급 인증시 20%, ZEB 4등급 인증시 18%, ZEB 5등급 인증시 15% 경감률 적용(2023.12.31.까지)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 사항들의 적용을 통해 건축 비용이 소폭 증대된다는 점에서 건축주의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인원에게 에너지 비용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큰 반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기존의 녹색건축 설계기준의 적용에서도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요소들의 적용에 따른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가는 혜택과 국가적 혜택이 큼에 따라 큰 반대사항은 없었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 가능성

-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의 경우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관련 법 개정 후 시행 중이며, 승강기 정지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요금 10~30%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음
- 태양광 의무 설치 비율의 경우 보편적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하였으므로 실현가능성 높고 「건축물의 태양광설비 설계기준」 및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에 따라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 장치의 의무화를 통한 장비 설치비
(제조사 등에 따른 설치비)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 장치 온실가스 감축량(300대일 경우)

→ $1\text{tCO}_2/\text{대/년} \times 300\text{대} = 300\text{tCO}_2$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 장치 전기요금 절감(300대일 경우)

→ $88.9\text{원/kWh} \times 2,897\text{kWh} \times 300\text{대} = \text{약 } 77\text{백만원/년}$

○ 온실가스 저감으로 인한 서울시민의 건강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시민 건강 향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포함하여 단순 편익 비교는 어려움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검토시 확인 후 설계 반영/시공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제31조(녹색건축물의 확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목적),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제8조(국·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조(목적), 제7조(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경우 ‘07년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해 온 기준으로 개별적 요소에 대한 변동사항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

– 향후 개정을 통한 관련 항목 폐지시까지 존속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기존 건축 인·허가시 해당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자가 작성하여 담당자가 검토해 온 사항으로 집행을 위한 추가 소요 없음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여부

○ 기존 건축 인·허가시 해당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자가 작성하여 담당자가 검토해 온 사항으로 기존 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 가능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기존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에서 추가한 요소로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에 큰 변동사항 없음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 기존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용에서 추가한 요소로 처리기관 및 처리 절차에 큰 변동사항 없음

III.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및 전기요금 절감량 확인 등
- 승강기 자가발전(회생제동) 장치 전기요금 절감량 확인 등

2.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0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 추가 고시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를 추가(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및 수수료(변경)

시험구분 (종별)	시험항목	시험방법	단위	시험수수료 (원)		처리기간 (일)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치수	KS F 4419	조	11,430	11,440	4	4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투수성)	치수	KS F 4419	조	11,430	11,440	4	4	
	투수계수	KS F 4419	조	84,090	84,490	7	1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02-513-4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1호
2022년도 제4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안)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2022년도 제4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기타물건 : 3건

－ 차량(이륜차) 3건

(단위: 건)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구조변경등)
		신규	재분류	인상	인하	
총 계	3	2	0	0	1	-
차량(이륜차)	3	2	0	0	1	-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세부내역 붙임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news.seoul.go.kr/gov/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 ⇒ 자료실 ⇒ 세금 ⇒ 시가표준액표
(건물, 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고시내용 중 신규물건은 2022년 9월 8일부터 시행하며 조정물건은 2022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붙 임: 기타물건 기준가격 추가 산정 및 조정 내역 1부. 끝.

붙임**기타물건 기준가격 추가 산정 및 조정내역**

□ 차량(이륜자동차) : 총 3건(조정 1건, 신규 2건)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현행	변경
조정*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TRIUMPH	SPEED TWIN 900**	D31	17,400	12,450
신규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TRIUMPH	SPEED TWIN 1200	D54	-	17,400
신규	4.이륜자동차 4-1.형식분류 나. 외산	TRIUMPH	SPEED TWIN 1200	DA	-	17,400

* 당초 기준가격 산정시 전산데이터 오류에 따른 조정분 / ' 22.1.1.부터 소급적용

** 차명 변경 : (종전) SPEED TWIN → (변경) SPEED TWIN 9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2호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01호(2019.6.20.)로 고시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 역 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강북구 수유동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628,000㎡	-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2017년 ~ 2022년	2017년 ~ 2023년	마중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기간연장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관련 도면 : 변경사항 없음

4.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2133-8293)/강북구 주택과(☎901-6822)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3호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04호(2019.9.11.)로 고시된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현황

가. 지역의 명칭 :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개요

지역명	유형	위치	면적	비고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근린재생형 (중심사가지형)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10-3 일대	약 576,971㎡	-

다. 사업기간(마중물사업)

기 정	변 경	변 경 사 유
2017년 01월 ~2022년 12월	2017년 01월 ~2023년 12월	마중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기간연장

2.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 변경사항 없음

3.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 변경사항 없음

4. 관련도면 : 변경사항 없음

5. 관련서류 열람

관련서류는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2133-8287)/성동구 도시재생과(☎02-2286-6601)에서 열람 가능하며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4호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 12. 2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I. 결정취지

- 동작구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II.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2,740.0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신 설	-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2,740.0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740.0	-	2,740.0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0.0	감) 2,719.0	21.0	0.77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증) 2,719.0	2,719.0	99.23	

나.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 정 사 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2,740.0	감) 2,719.0	21.0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함
		근린상업지역	-	증) 2,719.0	2,719.0	

다. 용도지구 : 해당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1	35	주간선도로	2,810	대방지하차도	대림동삼거리	일반도로	77.07.09 건고137	
기정	중로	3	174	12	집산도로	725	신대방동 351-5	신대방동 375-7	일반도로	85.08.14 서고550	

나.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시설의종류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도시철도 (신림선)	여의도동 56번지 일원	신림동 211번지 일원	대방역/신림역/보라매역/샛강역	7,760	78,184.7	16.04.07 서고2016-98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가. 획지 결정(신설) 조서

도면표시	획 지 계 획		비 고
	위 치	면 적(㎡)	
획지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2,719.0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획지계획 수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구분(도면표시)		결정내용		결정사유
용도	불허용도 (가)	전층	· 건축법시행령 별표1 -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제17호의 공장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제28호의 장례식장 ·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역세권활성화사업 반영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획지구분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획지	건 폐 율	· 6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용 적 률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60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높 이	· 70m 이하	주변지역 및 근린상업지역 반영하여 높이계획 수립

○ 사업계획 기준(의무사항)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9.0%이상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혼합형(유형2+유형3) -공공임대오피스 30%이상 -공공임대주택 50%이상 -지역필요시설 20%이상	
건축물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연면적20%이상(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비율	·제한없음	
주택건설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85㎡이하 ·민간분양주택 : 기준 없음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100~299세대)의 주민커뮤니티 시설 설치	

※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19. 06. 20.)' 3-3-2 참조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1. 건축한계선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신설)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간선도로변(서측)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이면도로변(북측) :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 ·이면도로변(동측 4m 미만도로) : 도로중심에서 2m 후퇴 후 후퇴선에서 4m 후퇴 ·이면도로변(동측 4m 이상도로) : 대지경계로부터 2m 후퇴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 참고
1층부 벽면한계선	·간선도로변(서측)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후퇴 ·이면도로변(북측)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1m후퇴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 참고
전면공지	·도로변 건축한계선 내 보도부속형(서측, 북측) 및 보차도부속형(동측) 전면공지 조성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 참고

※ 동측 4m미만 도로 부분 도로중심선에서 2m 후퇴한 면적 21㎡는 동작구청으로 무상 귀속 함

※ 건축한계선 내 차도부속형 전면공지는 동작구청에 지상권 설정

2.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구 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비 고
공공임대주택 등	기본250%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 상한600%이하(근린상업지역)	부지면적의 20% 이상	공공기여유형은 유형2+유형3 혼합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로 매입하며, 그 외 공공기여시설(공공임대산업시설, 지역필요시설(보건지소))은 토지, 건물 모두 기부채납

※ 공공기여시설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2019. 06. 20.)' 3-3-2 참조

3. 교통처리 계획에 관한 결정(신설)

구 분	결정내용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서측 간선도로변(전부) 및 북측 이면도로변(일부)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안)도 참고

Ⅲ. 관련도면 : 불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02-2133-2598) 및 동작구 도시계획과(☎02-820-9335)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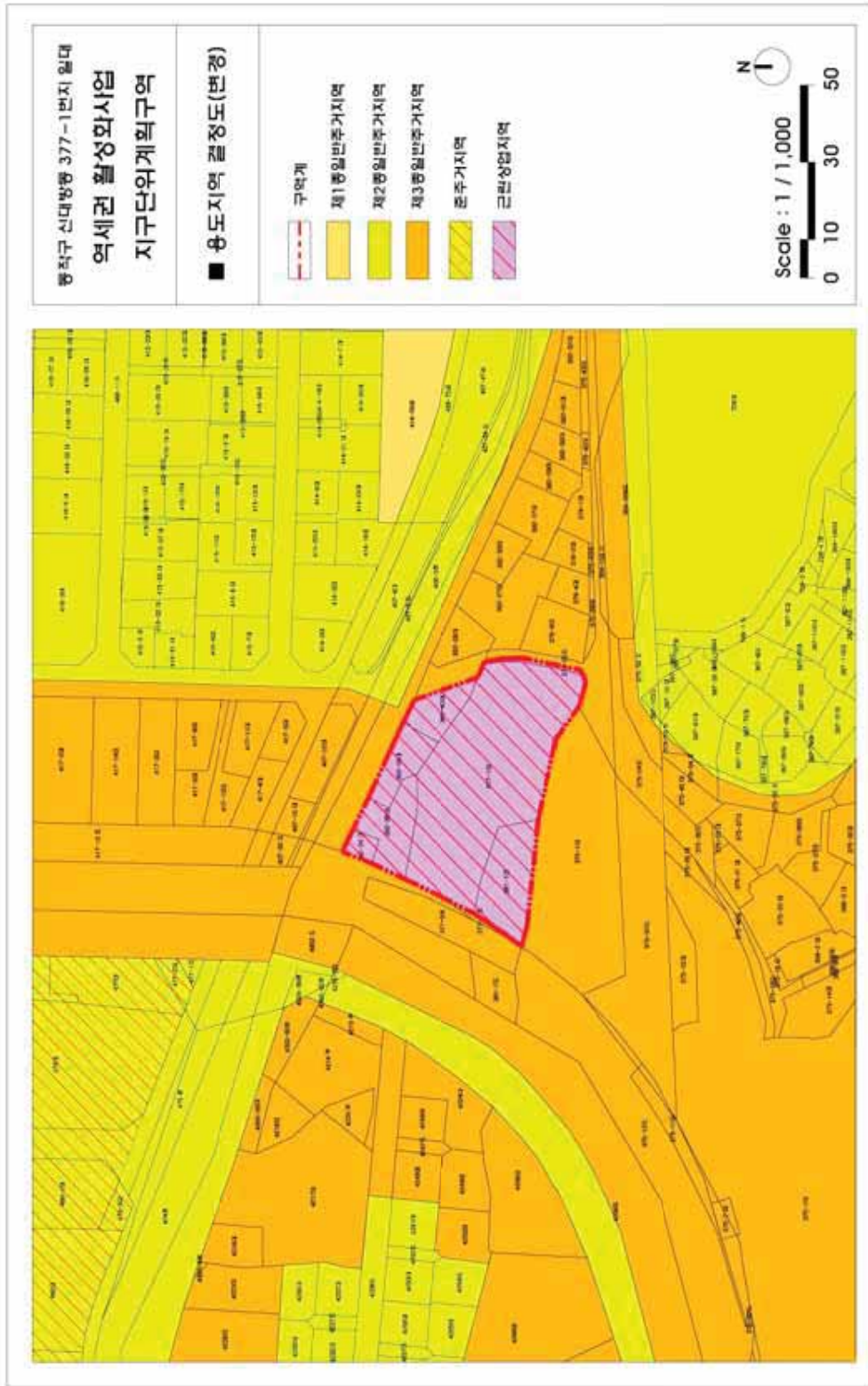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도]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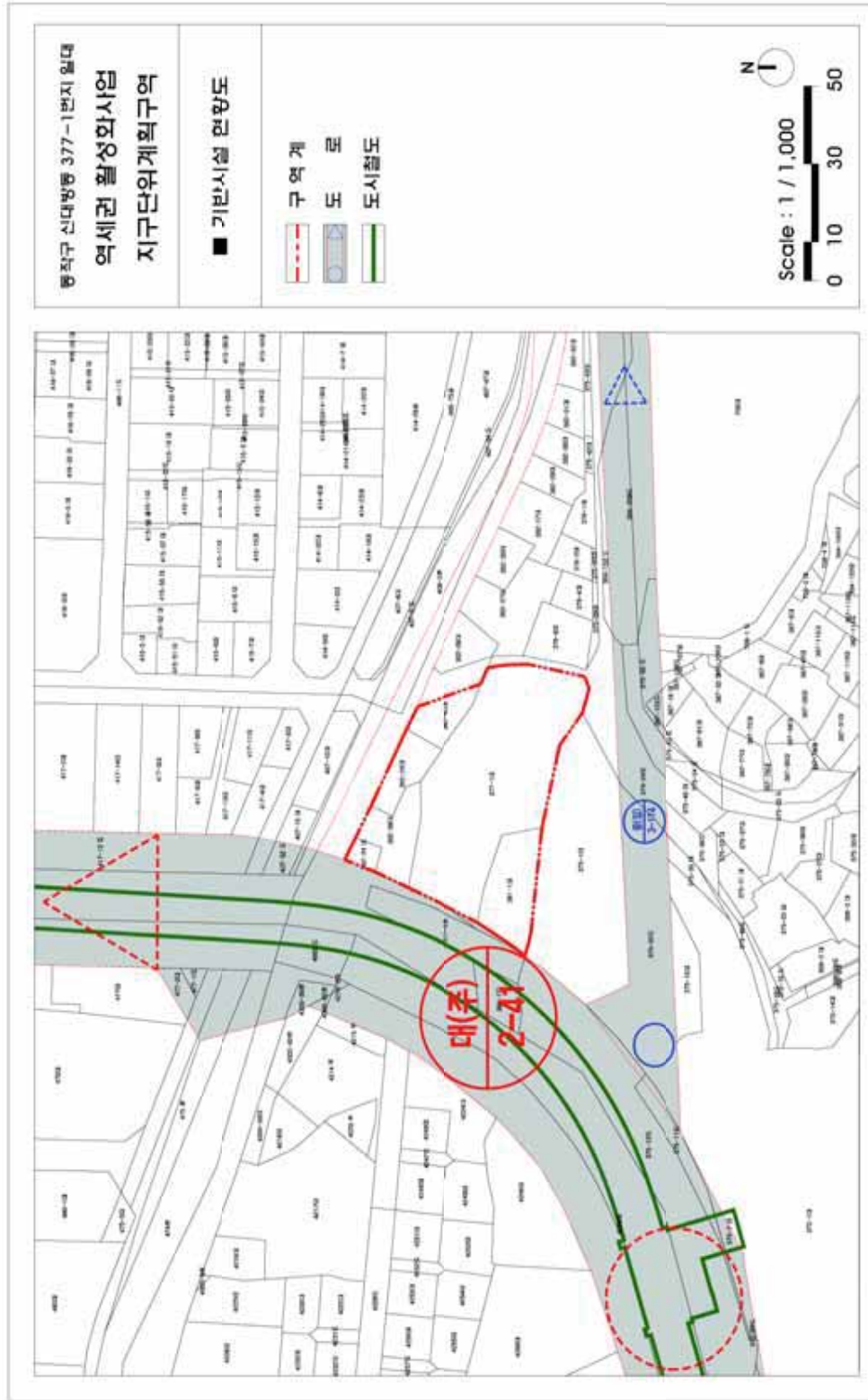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참고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동측도로 (21.0㎡제외) 부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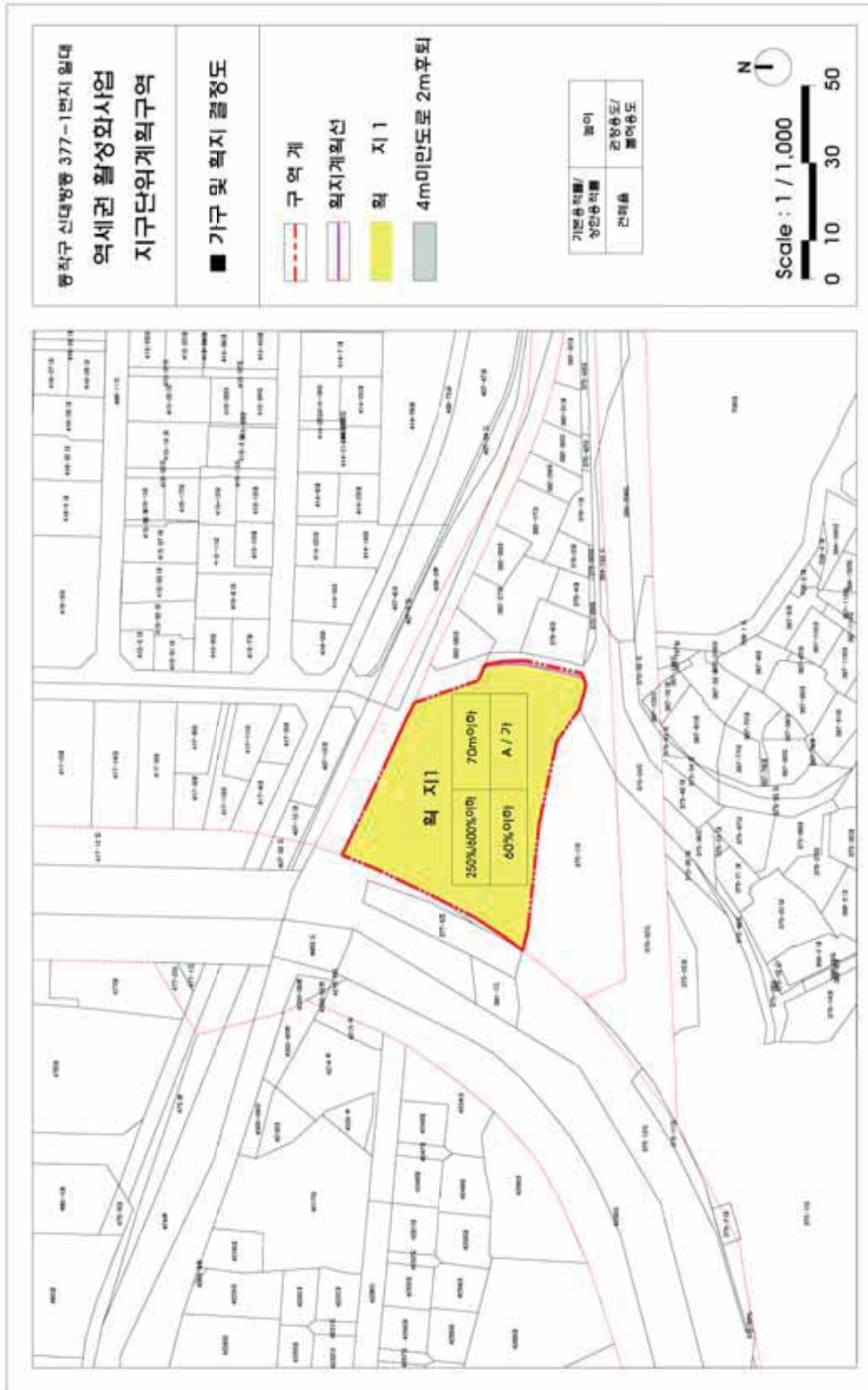


[기반시설 현황(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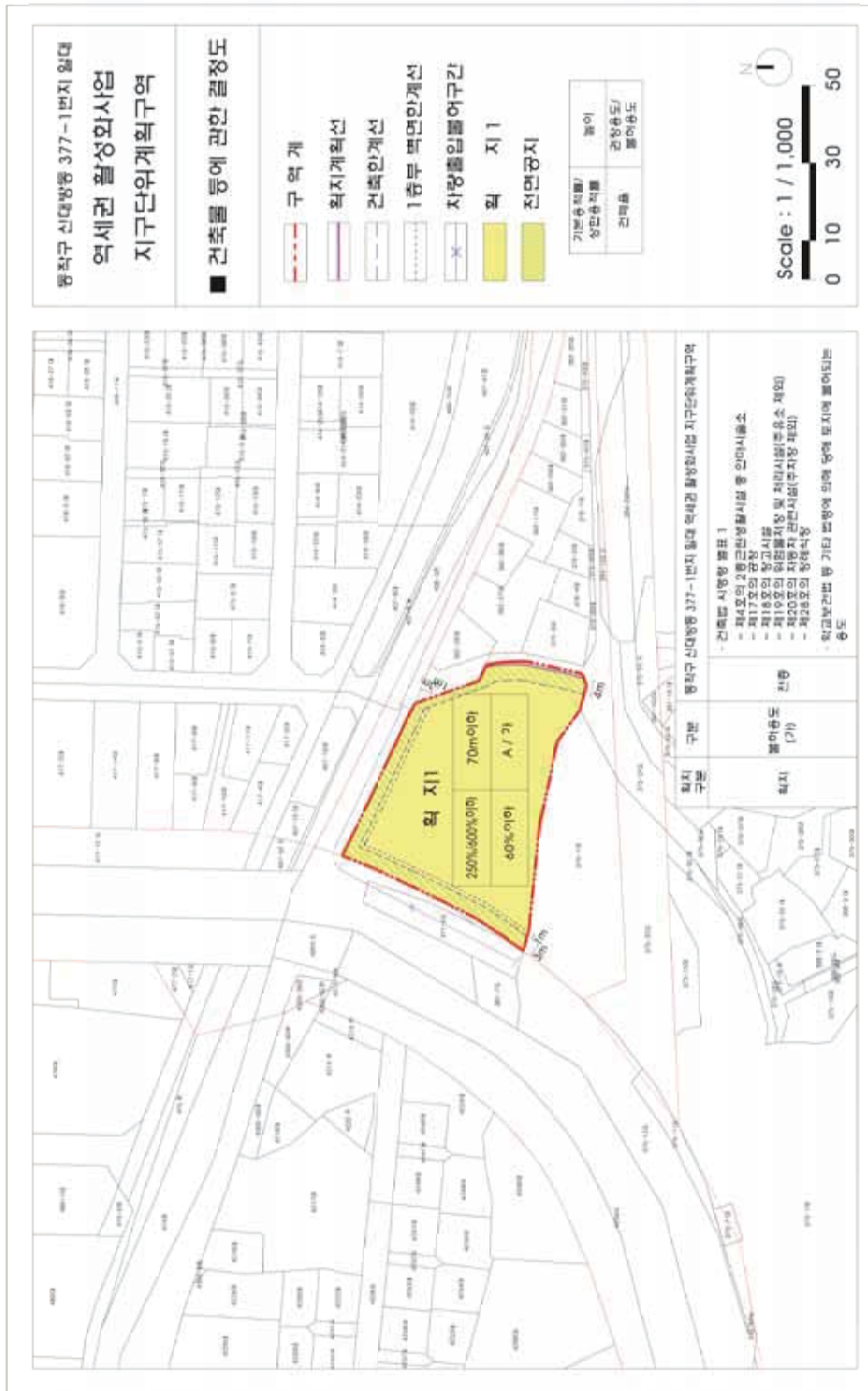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도시철도): 변경 없음(구역계와 연결함에 따라 현황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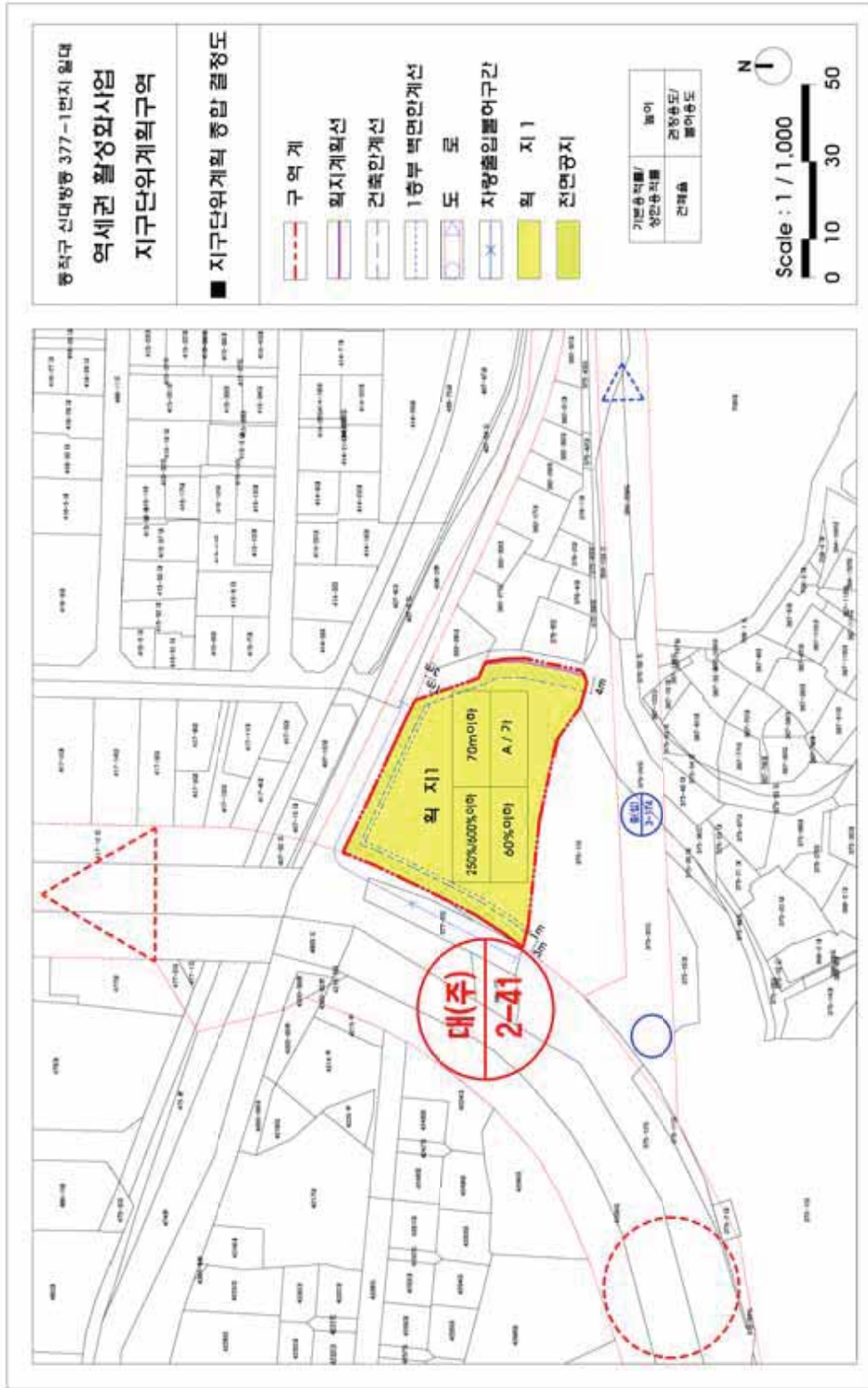
[기구 및 획지 결정(신설)도]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신설)도]



[지구단위계획 종합 결정(신설)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5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4.7), 제2011-98호(2011.4.21), 제2011-112호(2011.5.6), 제2011-259호(2011.9.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5.10), 제2012-191호(2012.7.26), 제2013-190호(2013.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2.23), 제2017-196호(2017.6.1), 제2018-403호(2018.12.13), 제2019-239호(2019.7.25.), 제2020-6호(2020.1.2.), 제2020-562호(2020.12.24.), 제2021-31호(2021.1.21.), 제2021-142호(2021.3.25.), 제2022-388호(2022.9.22.) 및 제2022-419호(2022.10.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I.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증감	변경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 지형	송파구 거여1·2동, 마천1·2동 일원	1,043,784.7	증) 745.6	1,044,530.3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거여·마천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 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 기준연도 : 2009년

○ 목표연도 : 2029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1,043,784.7	증) 745.6	1,044,530.3	100.00	
촉진지구	주거용지	소 계	704,030.4	증) 457.7	704,488.1	67.45	
		공동주택 (연도형주택)	358,575.6 (16,112.0)	증) 434.6	359,010.2 (16,112.0)	34.35 (1.54)	
		준주거	9,699.0	-	9,699.0	0.93	
		종교용지	6,008.4	증) 23.1	6,031.5	0.58	
		택시차고지	3,060.0	-	3,060.0	0.29	덕왕기업, 명신운수
		존 치	326,687.4	-	326,687.4	31.30	
	정비 기반 기설 용지	소 계	339,754.3	증) 287.9	340,042.2	32.55	
		도 로	216,561.0	증) 290.9	216,851.9	20.75	
		공 원	39,185.8	증) 21.4	39,207.2	3.75	
		녹 지	3,682.1	-	3,682.1	0.35	
		광 장	2,112.6	증) 28.3	2,140.9	0.20	
		하 천	25,811.9	-	25,811.9	2.47	성내천
		학 교	20,344.4	-	20,344.4	1.95	마천초교, 남천초교
		공공청사	11,795.8	감) 17.3	11,778.5	1.13	북한커뮤니티센터
		사회복지시설	2,290.0	-	2,290.0	0.22	마천1구역
		공공공지	8,479.8	감) 35.4	8,444.4	0.81	미래공공공지 (5,635.0㎡) 포함
		주차장	2,772.9	-	2,772.9	0.27	
		공용버스차고지	5,218.0	-	5,218.0	0.50	
		유치원	300.0	-	300.0	0.03	
		보육시설	1,200.0	-	1,200.0	0.11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 및 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2) 인구·주택 수용계획(45,026인 / 12,414세대) : 변경없음

○ 총괄현황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2,414	-	12,414	45,026	-	45,026	2.69인 적용
촉진 구역	소 계	9,464	-	9,464	25,460	-	25,460	
	60㎡이하	4,441	-	4,441	11,947	-	11,947	
	60~85㎡이하	4,377	-	4,377	11,775	-	11,775	
	85㎡초과	646	-	646	1,738	-	1,738	
존치지역		2,950	-	2,950	19,566	-	19,566	2.56인 적용

○ 구역별 현황

구 분			현 황 (호)	기 정(호)			
				분 양	임 대	존 치	계
합 계			8,885	7,769	1,695	2,950	12,414
재정비 촉진 구역	거여2	1지구	1,096	1,577	368	-	1,945
		2지구	809	972	227	-	1,199
	마천시장		13	185	-	-	185
	마천1		1,605	2,018	395	-	2,413
	마천3		1,698	1,952	398	-	2,350
	마천4		714	1,065	307	-	1,372
	준차관리구역			1,088	-	-	2,950
지구편입 (거여새마을, 마천식당)			1,136	-	-		
마천2구역			726	-	-		

주1) 현황 주택(호)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함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교육시설 : 변경없음

학 교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21,110.4	-	21,110.4	
마천초등학교	마천동 183-4일대	10,921.0	-	10,921.0	
남천초등학교	마천동 67일대	9,889.4	-	9,889.4	
유치원	마천동 363-6일대	300.0	-	300.0	마천3구역

○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22,565.6	감) 52.7	22,512.9	
공공청사 (북합커뮤니티센터)	거여동 195-1일대	3,308.8	감) 17.3	3,291.5	● 기정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시설 복합화 - 거여2동주민센터 존치 - 아동보육, 노인, 여성복지복합화
공공청사 (여성지원관련시설)	마천동 128-129일대	750.0	-	750.0	●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공공청사 (북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211-45일대	2,788.0	-	2,788.0	● 인성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시설 복합화 -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시설
공공청사 (북합커뮤니티센터)	마천동 567-2일대	4,949.0	-	4,949.0	● 청소년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마천동 128-9일대	2,290.0	-	2,290.0	● 노인복지센터 신설
공공공지	거여동 198-17 (거여2구역)	1,467.0	감) 35.6	1,431.4	● 공공공지
공공공지 (미래공공용지)	거여동 41-4 (거여2구역)	5,634.8	증) 0.2	5,635.0	● 공공공지→개발수요 발생시 공공시설로 개발
공공공지	마천동 185-6일대 (마천1구역)	1,378.0	-	1,378.0	● 공공공지 신설→마천1구역내 대로변 보행자 통행과 휴식공간 제공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

○ 공원 : 변경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총 계				39,185.8	증) 21.4	39,207.2	14개소
근린공원	소 계			10,480.3	증) 23.6	10,503.9	1개소
	향유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480.3	증) 23.6	10,503.9	
어린이 공원	소 계			5,759.0	-	5,759.0	5개소
	1	두레어린이공원	마천동 364-5일대	75.0	-	75.0	
	2	용마공원	마천동 45	1,500.0	-	1,500.0	현행공원
	3	개미공원	거여동 29	1,500.0	-	1,500.0	현행공원
	4	모슬어린이공원	거여동 28-7	550.0	-	550.0	현행공원
	5	-	마천동 71-2일대	2,134.0	-	2,134.0	
	소공원	소 계			22,946.5	감) 2.2	22,944.3
1		①	거여동 181-143일대	1,110.5	감) 2.2	1,108.3	
2		②	마천동 327-7일대	1,501.0	-	1,501.0	
3		A	마천동 363-2일대	991.0	-	991.0	마천3
4		B	마천동 364-8일대	4,977.0	-	4,977.0	마천3
5		C	마천동 276일대	6,757.0	-	6,757.0	마천3
6		D	마천동 586일대	612.0	-	612.0	
7		③	마천동 157-7일대	1,373.0	-	1,373.0	
8		④	마천동 158-8일대	5,625.0	-	5,625.0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 녹지 : 변경없음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682.1	-	3,682.1	4개소
경관녹지	마천동 207-2일대	1,025.0	-	1,025.0	마천3구역
경관녹지	마천동 329-22일대	113.0	-	113.0	마천3구역
경관녹지	마천동 309-55일대	2,108.0	-	2,108.0	마천4구역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1	-	436.1	거여2-2구역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Ⅰ장, [7] 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Ⅰ장, [8] 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증) 745.6㎡
변경	거여2	C	거여동	202	16.0ha	230%	-	60%	1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1	C	마천동	194-1	14.8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3	C	마천동	283	13.4ha	210%	-	6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기정	마천4	C	마천동	323	6.1ha	210%	-	50%	3	주택재개발	전면 개발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주1) 1단계 : 2008년부터, 2단계 : 2010년부터, 3단계 : 2012년부터

주2) 용적률, 건폐율, 층수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구성비 (%)	사업방식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소계				1,043,784.7	증) 745.6	1,044,530.3	100.00	-	-
촉진 구역	소 계			512,954.1	증) 745.6	513,699.7	49.18	-	5개소
	거여2 구역	1지구	거여동 180일대	98,409.4	증) 765.7	99,175.1	9.49	주택재개발	-
		2지구	거여동 234일대	61,806.7	감) 20.1	61,786.6	5.92	주택재개발	-
	마천시장구역		마천동 140-3일대	9,757.0	-	9,757.0	0.93	시장재건축	-
	마천1구역		마천동 194-1일대	148,498.0	-	148,498.0	14.22	주택재개발	-
	마천3구역		마천동 283일대	133,830.0	-	133,830.0	12.81	주택재개발	-
	마천4구역		마천동 323일대	60,653.0	-	60,653.0	5.81	주택재개발	-
준치 관리 구역	소 계			530,830.6	-	530,830.6	50.82	-	-
	준치시설		-	145,852.6	-	145,852.6	13.96	-	-
	마천성당		마천동 93-5일대	163,480.0	-	163,480.0	15.65	-	-
	거여새마을		거여동 549일대	123,282.0	-	123,282.0	11.80	-	-
	마천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마천동 183일대 (마천동307-48일대)	80,944.0 (12,485.0)	-	80,944.0 (12,485.0)	7.75 (1.20)	-	-
	거여2지구단위계획		거여동 37일대	17,272.0	-	17,272.0	1.66	-	-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 및 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

용도지역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1,043,784.7	증) 745.6	1,044,530.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109.0	-	122,109.0	11.7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99,585.0	-	299,585.0	28.7
	제2종일반주거지역	328,599.2	증) 98.4	328,697.6	31.5
	제3종일반주거지역	260,383.5	증) 647.2	261,030.7	24.9
	준주거지역	33,108.0	-	33,108.0	3.2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가) 거여2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160,216.1	증) 745.6	160,96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8,538.6	증) 98.4	18,637.0	11.6
	제3종일반주거지역	141,677.5	증) 647.2	142,324.7	88.4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나) 마천시장구역(시장재건축사업)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마) 마천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상한(%)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거여 2구역	1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5.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30.0	277.0이하	26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400.0이하	15이하/15이하	6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1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27.4이하	22이하/25이하	100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3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0	270.5이하	22이하/25이하	119이하	재정비촉진구역
마천4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300.0이하	30이하/33이하	123이하	재정비촉진구역

주1) 최고높이는 건축물 높이임

주2) 마천1구역 상한용적률은 가중평균용적률임(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263.7%이하)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구 분		면 적 (㎡)			비율(%)
		기 정	증 감	변 경	
재정비촉진지구		1,043,784.7	증) 745.6	1,044,530.3	100.00
기 반 시 설	소 계	339,754.3	증) 287.9	340,042.2	32.55
	도 로	216,561.0	증) 290.9	216,851.9	20.76
	공 원	39,185.8	증) 21.4	39,207.2	3.75
	녹 지	3,682.1	-	3,682.1	0.35
	광 장	2,112.6	증) 28.3	2,140.9	0.20
	하 천	25,811.9	-	25,811.9	2.47
	학 교	20,344.4	-	20,344.4	1.95
	공공청사	11,795.8	감) 17.3	11,778.5	1.13
	사회복지시설	2,290.0	-	2,290.0	0.22
	공공공지	8,479.8	감) 35.4	8,444.4	0.81
	주차장	2,772.9	-	2,772.9	0.27
	공용버스차고지	5,218.0	-	5,218.0	0.50
	유치원	300.0	-	300.0	0.03
	보육시설	1,200.0	-	1,200.0	0.11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 및 1지구 지적확정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구 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 시장	마천1	마천3	마천4	존치지역	지구전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구성비
면 적	160,216.1	160,961.7	9,757	148,498	133,830	60,653	530,830.6	1,043,784.7	1,044,530.3	100.00
합 계	46,774.6	47,062.5	2,588	38,907.5 ※3,090.7	44,608 ※4,662	15,167	191,709.2	339,754.3 ※7,752.7	340,042.2 ※7,752.7	32.55
도 로	23,529.5	23,820.4	2,588	24,924.5	20,216	10,033	135,270.0	216,561.0	216,851.9	20.76
공 원	11,590.8	11,612.2	-	8,952.0	12,725	1,501	4,417.0	39,185.8	39,207.2	3.75
녹 지	436.1	436.1	-	-	-	2,108	1,138.0	3,682.1	3,682.1	0.35
광 장	2,112.6	2,140.9	-	-	-	-	-	2,112.6	2,140.9	0.20
하 천	-	-	-	613.0	-	-	25,198.9	25,811.9	25,811.9	2.47
학 교	-	-	-	-	-	-	20,344.4	20,344.4	20,344.4	1.95
공공청사	2,003.8	1,986.5	-	750.0 ※688.6	4,949 ※3,759	1,525	2,568.0	11,795.8 ※4,447.6	11,778.5 ※4,447.6	1.13
사회복지시설	-	-	-	2,290.0 ※2,402.1	-	-	-	2,290.0 ※2,402.1	2,290.0 ※2,402.1	0.22

구 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 시장	마천1	마천3	마천4	존치지역	지구전체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구성비
공공공지 (미래 공공용지)	7,101.8 (5,634.8)	7,066.4 (5,635.0)	- (-)	1,378.0 (-)	- (-)	- (-)	- (-)	8,479.8 (5,634.8)	8,444.4 (5,635.0)	0.81
주 차 장	-	-	-	-	-	-	2,772.9	2,772.9	2,772.9	0.27
보육시설	-	-	-	-	1,200 ※511	-	-	1,200 ※511	1,200 ※511	0.11
유 치 원	-	-	-	-	300 ※113	-	-	300 ※113	300 ※113	0.03
자동차 정류장	-	-	-	-	5,218 ※279	-	-	5,218 ※279	5,218 ※279	0.50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주1) “※”는 시설기부채납에 따른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임

주2) 마천1구역의 건축물 환산부지면적(3,090.7㎡)은 공공청사-여성지원시설 및 주거복지센터(688.6㎡),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센터(2,402.1㎡)

구 분	소계		재정비촉진구역				
			거여2		마천1	마천3	마천4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재정비촉진사업구역(㎡)①	503,197.1	503,942.7	160,216.1	160,961.7	148,498	133,830	60,653
평균 분담률(%)②	11.97						
계획기반시설(㎡)③	153,209.8	153,497.7	46,774.6	47,062.5	41,998.2	49,270	15,167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④	33,635.3	33,635.3	13,029.7	13,029.7	7,012.6	10,521	3,072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⑤	59,532.0	59,532.0	16,308.6	16,308.6	18,698.4	19,518	5,007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⑥	-	-	-	-	-	-	-
순분담면적(㎡)B=③-④-⑤-⑥	60,042.5	60,330.4	17,436.3	17,724.2	16,287.2	19,231	7,088
순분담비율(%)	11.93	11.97	10.88	11.01	10.97	14.37	11.69

※ 변경사유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구분		도정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				도촉법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심의기준에 의한 추가임대주택건설				합 계				
						임대주택건설					장기전세(shift) 건설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소계	40㎡ 이하	40~50㎡	50~60㎡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거여2	계	474	238	180	56	63	25	25	13	-	-	-	-	-	-	58	39	17	2	595 (19%)	302 (51%)	222 (37%)	71 (12%)	- (0%)
	2-1	293	147	109	37	43	16	16	11	-	-	-	-	-	-	32	29	3	-	368 (19%)	192 (52%)	128 (35%)	48 (13%)	- (0%)
	2-2	181	91	71	19	20	9	9	2	-	-	-	-	-	-	26	10	14	2	227 (19%)	110 (49%)	94 (41%)	23 (10%)	- (0%)
마천1		367	273	94	-	-	-	-	-	-	-	-	-	-	-	28	23	5	-	395 (16%)	296 (75%)	99 (25%)	- (0%)	- (0%)
마천3		287	136	134	17	57	-	-	21	36	-	-	-	-	-	54	21	21	12	398 (17%)	157 (39%)	155 (39%)	50 (13%)	36 (9%)
마천4		158	70	74	14	-	-	-	-	-	132	26	61	9	36	17	8	7	2	307 (22%)	104 (34%)	142 (46%)	25 (8%)	36 (12%)
합계		1,286	717	482	87	120	25	25	34	36	132	26	61	9	36	157	91	50	16	1,659 (18%)	859 (52%)	618 (37%)	146 (9%)	36 (2%)

주1) 도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 도촉법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심의기준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서울시)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사업기간			해 당 구 역	비 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기정	1단계	2008	2010. 12이후	2014. 6	거여2구역, 마천시장구역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단계	2019	2022년 경	2025년 경	마천1구역	
기정	3단계	2017	2021년 경	2024년 경	마천3구역	
기정	3단계	2011	2019. 12이후	2022. 6	마천4구역	

주1) 일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이 각 단계의 총량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이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또는 해당구역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함

주2) 총량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별도 운용기준을 정함(예 : 4,000세대가 넘지 않는 범위 내)

15)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7)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8) 친환경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9) 기타계획(특성화계획, 기타계획) : 변경없음

20)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거여2구역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촉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60,216.1	증) 745.6	160,961.7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면적변경 (증 745.6㎡) - 면적 : 160,216.1㎡ → 160,961.7㎡ •구역계조정 : 1지구 증 20.1㎡, 2지구 감 20.1㎡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연접한 존치아파트 진출입부 확보 등을 위한 구역계 조정

(2) 정비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60,216.1	증) 745.6	160,961.7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6,774.6	증) 287.9	47,062.5	29.2	
	도 로	23,529.5	증) 290.9	23,820.4	14.8	
	공 원	11,590.8	증) 21.4	11,612.2	7.2	
	녹 지	436.1	-	436.1	0.3	
	공공청사	2,003.8	감) 17.3	1,986.5	1.2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101.8 (5,634.8)	감) 35.4 (증 0.2)	7,066.4 (5,635.0)	4.4 (3.5)	
	광 장	2,112.6	증) 28.3	2,140.9	1.3	
택지(획지)	소 계	113,441.5	증) 457.7	113,899.2	70.8	
	1-1-1	68,332.2	증) 393.8	68,726.0	42.7	공동주택
	1-1-2	1,406.9	증) 23.1	1,430.0	0.9	종교용지
	1-1-3	198.0	증) 40.8	238.8	0.2	대지
	1-2	43,504.4	-	43,504.4	27.0	공동주택

○ 1지구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8,409.4	증) 765.7	99,175.1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8,472.3	증) 308.0	28,780.3	29.0	
	도 로	11,835.9	증) 311.0	12,146.9	12.2	
	공 원	6,209.5	증) 21.4	6,230.9	6.3	
	공공청사	2,003.8	감) 17.3	1,986.5	2.0	
	공공공지 (미래공공부지)	7,101.8 (5,634.8)	감) 35.4 (증 0.2)	7,066.4 (5,635.0)	7.1 (5.7)	
	광 장	1,321.3	증) 28.3	1,349.6	1.4	
택지(획지)	소 계	69,937.1	증) 457.7	70,394.8	71.0	
	1-1-1	68,332.2	증) 393.8	68,726.0	69.3	공동주택
	1-1-2	1,406.9	증) 23.1	1,430.0	1.5	종교용지
	1-1-3	198.0	증) 40.8	238.8	0.2	대지 (부지형상변경)

○ 2지구 :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61,806.7	감) 20.1	61,786.6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18,302.3	감) 20.1	18,282.2	29.6	
	도 로	11,693.6	감) 20.1	11,673.5	18.9	1지구편입 (20.1㎡)
	공 원	5,381.3	-	5,381.3	8.7	
	녹 지	436.1	-	436.1	0.7	
	광 장	791.3	-	791.3	1.3	
택지(획지)	소 계	43,504.4	-	43,504.4	70.4	
	1-2	43,504.4	-	43,504.4	70.4	공동주택

(나) 용도지역 변경계획

용도지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60,216.1	증) 745.6	160,961.7	100.0	
일반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8,538.6	증) 98.4	18,637.0	11.6	
	3종일반주거지역	141,677.5	증) 647.2	142,324.7	88.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 1지구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98,409.4	증) 765.7	99,175.1	100.0	
일반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969.4	증) 118.5	17,087.9	17.2	
	3종일반주거지역	81,440.0	증) 647.2	82,087.2	82.8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 및 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 2지구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1,806.7	감) 20.1	61,786.6	100.0	
일반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569.2	감) 20.1	1,549.1	2.6	
	3종일반주거지역	60,237.5	-	60,237.5	97.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기정	대로	3	5	24~30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기정	중로	1	1	24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거여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건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1-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21.3	증) 28.3	1,349.6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791.3	-	791.3	서고294호 (08.8.28)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교통광장	•면적변경 (증 28.3㎡) - 면적 : 1,321.3㎡ → 1,349.6㎡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480.3	증) 23.6	10,503.9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변경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110.5	감) 2.2	1,108.3	서고294호 (08.8.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면적변경 (증 23.6㎡) - 면적 : 10,480.3㎡ → 10,503.9㎡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①	소공원	•면적변경 (감 2.2㎡) - 면적 : 1,110.5㎡ → 1,108.3㎡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1	-	436.1	서고259호 (11.9.8)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67.0	감) 35.6	1,431.4	서고294호 (08.8.28)	
변경	②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34.8	증) 0.2	5,635.0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면적변경 (감 35.6㎡) - 면적 : 1,467.0㎡ → 1,431.4㎡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②	공공공지	●면적변경 (증 0.2㎡) - 면적 : 5,634.8㎡ → 5,635.0㎡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308.8 (2,003.8)	감) 17.3	3,291.5 (1,986.5)	송고24호 (03.6.10)	거여2동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면적변경 (감 17.3㎡) - 면적 : 3,308.8㎡(2,003.8㎡) → 3,291.5㎡(1,986.5㎡)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라)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거여2 재정비 촉진 구역	기정	160,216.1	-	113,44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1,300	-	-	1,300	-	-
	변경	160,961.7									
	거여 2-1지구	기정 98,409.4 변경 99,175.1	1-1	69,937.1 70,394.8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004	-	-	1,004	-	-
	거여 2-2지구	기정 61,806.7 변경 61,786.6	1-2	43,504.4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296	-	-	296	-	-

○ 건축시설계획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60,216.1	-	113,441.5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 일대	307,992.9	공동 주택	50 이하	277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160,961.7 (증 745.6)		113,899.2 (증 457.7)							
거여 2-1지구	기정	98,409.4	1-1-1	68,332.2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87,845.6	공동 주택	30 이하	275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1-2	1,406.9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종교 시설	60 이하	200 이하	10층이하	
			1-1-3	198.0	송파구 거여동 235번지 일대	-	주택, 근생시설	60 이하	200 이하	-	
	변경	99,175.1 (증 765.7)	1-1-1	68,726.0 (증 393.8)	송파구 거여동 180번지 일대	187,845.6	공동 주택	30 이하	275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1-1-2	1,430.0 (증 23.1)	송파구 거여동 205번지 일대	-	종교 시설	60 이하	200 이하	10층이하	
			1-1-3	238.8 (증 40.8)	송파구 거여동 235번지 일대	-	주택, 근생시설	60 이하	200 이하	-	
거여 2-2지구	기정	61,806.7	1-2	43,504.4	송파구 거여동 234번지 일대	120,147.3	공동 주택	30 이하	277.0 이하	26 이하	33이하 (123이하)
	변경	61,786.6 (감 20.1)									
주택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총 호수 : 3,144호 (임대 595호) - 전용면적 60㎡이하 : 1,45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1,531호 - 전용면적 85㎡초과 : 161호						
				2-1지구	●총 호수 : 1,945호 (임대 368호) - 전용면적 60㎡이하 : 920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987호 - 전용면적 85㎡초과 : 38호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층수	최고층수 (m)
			2-2지구	●총 호수 : 1,199호 (임대 227호) - 전용면적 60㎡이하 : 532호 - 전용면적 60~85㎡이하 : 544호 - 전용면적 85㎡초과 : 123호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고심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과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주1) 거여2구역의 사업시행지구 분할에 따른 지구별 대비표

주2) 지구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법정 기준 내에서 사업시행단계에서 확정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비고
주택재개발사업	2008년	주택재개발조합	-	-	-

(바) 임대주택 등의 건설에 관한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전용면적)	호수	비고
기정	거여2 재정비 촉진구역	13,415	38,376.9	40㎡이하	302호	
				40~50㎡이하	222호	
				50~60㎡이하	71호	
				소 계	595호(18.9%)	
	거여 2-1 지구	8,169	23,737.2	40㎡이하	192호	
				40~50㎡이하	128호	
				50~60㎡이하	48호	
				소 계	368호(18.9%)	
	거여 2-2 지구	5,246	14,639.7	40㎡이하	110호	
				40~50㎡이하	94호	
				50~60㎡이하	23호	
				소 계	227호(18.9%)	

주1)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나) 마천시장구역 : 변경없음

다) 마천1구역 : 변경없음

라) 마천3구역 : 변경없음

마) 마천4구역 : 변경없음

21) 존치지역의 관리계획 : 변경없음

22)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도서(Ⅱ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거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02번지일대	160,216.1	증) 745.6	160,961.7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면적변경 (증 745.6㎡) - 면적 : 160,216.1㎡ → 160,961.7㎡ •구역계조정 : 1지구 증 20.1㎡, 2지구 감 20.1㎡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연접한 준치아파트 진출입부 확보 등을 위한 구역계 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160,216.1	증) 745.6	160,961.7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8,538.6	증) 98.4	18,637.0	11.6
	3종일반주거지역	141,677.5	증) 647.2	142,324.7	88.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 1지구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98,409.4	증) 765.7	99,175.1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6,969.4	증) 118.5	17,087.9	17.2
	3종일반주거지역	81,440.0	증) 647.2	82,087.2	82.8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 및 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 2지구 : 변경

용도지역		면 적(㎡)			구성비 (%)
		기 정	증 감	변 경	
계		61,806.7	감) 20.1	61,786.6	100.0
주거지역	2종(12층)일반주거지역	1,569.2	감) 20.1	1,549.1	2.6
	3종일반주거지역	60,237.5	-	60,237.5	97.4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	25	보조 간선도로	334	거여동 213-50	거여동 35-7	일반도로		서고574호	
기정	대로	3	5	24~30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마천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중로	1	220	20~27	보조 간선도로	571 (172)	거여동 31-17	거여동 31-17	일반도로		서고714호	
기정	중로	1	1	24	보조 간선도로	750	마천동 115-2	거여동 222-16	일반도로		서고48호 (74.3.15)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80 (135)	거여동 43-9	거여동 224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42 (193)	거여동 43-9	거여동 235-1	일반도로		건고364호 (81.9.26)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69	거여동 224	거여동 224	일반도로		건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87	거여동 41-22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66	거여동 43-9	거여동 43-9	일반도로		서고434호 (81.12.14)	구역외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2) 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철도	도시철도 (5호선)	강서구 방화동	마천동 370, 226	L=52,300 (227)	-	L=52,300 (227)	건고151호 (91.3.25)	

주) 연장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임

3) 광장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183-11일대	1,321.3	증) 28.3	1,349.6	서고294호 (08.8.28)	
기정	②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거여동 222-3일대	791.3	-	791.3	서고294호 (08.8.28)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교통광장	•면적변경 (증 28.3㎡) - 면적 : 1,321.3㎡ → 1,349.6㎡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4) 공원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원	근린공원	거여동 200-4일대	10,480.3	증) 23.6	10,503.9	서고294호 (08.8.28)	향유 근린공원
변경	①	공원	소공원	거여동 181-143일대	1,110.5	감) 2.2	1,108.3	서고294호 (08.8.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근린공원	•면적변경 (증 23.6㎡) - 면적 : 10,480.3㎡ → 10,503.9㎡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①	소공원	•면적변경 (감 2.2㎡) - 면적 : 1,110.5㎡ → 1,108.3㎡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5) 녹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기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①	녹지	연결녹지	거여동 35-7일대	436.1	-	436.1	서고259호 (11.9.8)	

6)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공지	-	거여동 198-17일대	1,467.0	감) 35.6	1,431.4	서고294호 (08.8.28)	
변경	②	공공공지	-	거여동 41-4일대	5,634.8	증) 0.2	5,635.0	서고294호 (08.8.28)	미래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공지	●면적변경 (감 35.6㎡) - 면적 : 1,467.0㎡ → 1,431.4㎡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②	공공공지	●면적변경 (증 0.2㎡) - 면적 : 5,634.8㎡ → 5,635.0㎡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7)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기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 장(m)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①	공공청사	-	거여동 195-1일대	3,308.8 (2,003.8)	감) 17.3	3,291.5 (1,986.5)	송고24호 (03.6.10)	거여2동사무소(기정), 사회복지시설 복합화

주) 면적 항목의 괄호 내용은 거여2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임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공공청사	●면적변경 (감 17.3㎡) - 면적 : 3,308.8㎡(2,003.8㎡) → 3,291.5㎡(1,986.5㎡)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가 구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획지	소 계	69,937.1	증) 457.7	70,394.8	71.0	-
	획지1-1-1	68,332.2	증) 393.8	68,726.0	69.3	공동주택
	획지1-1-2	1,406.9	증) 23.1	1,430.0	1.5	종교시설
	획지1-1-3	198.0	증) 40.8	238.8	0.2	주택, 근생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허용용도이외 용도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1-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기정	허용용도	획지1-1-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60	획지1-1-2, 1-1-3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획지1-1-1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230%	-	275%	-	획지1-1-1
기정	-	-	200%	-	획지1-1-2, 1-1-3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평균층수	최고층수(m)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26층이하	33층이하 (123m이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획지1-1-1)
기정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10층이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획지1-1-2)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건고싶은거리변(대로3-1) ●남북연결로(대로3-5)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m 후퇴
	●거마로변(대로2-33)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소로1-1) ●공원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후퇴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공동주택	●건고싶은 거리변은 연도형주동으로 계획하되, 가로변은 5층(1~2층상가, 3~5층 임대주택), 직각배치는 12층이하로 한다. ●데크형 주동의 1층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주차장으로 구성하고 2층은 주거전용 옥외공간으로 계획하여 동선을 구분한다. ●공원주변은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중저층 또는 낮은 고층으로 하고, 공원쪽으로는 통경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건물 진출입구	공동주택	●지구진입부는 랜드마크를 고려하여 고층으로 계획하되, 탑상형 주동사이 충분한 옥외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한다.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 외부형태	공동주택	●옥탑의 높이는 지붕층으로부터 돌출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함께 디자인한다. ●지붕선의 일직선 규제(리듬감 부여) 및 재료, 색채를 통일한다. ●최상층은 복층의 펜트하우스로 활용하거나, 옥상정원을 설치한다. ●물탱크는 지붕층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층부외관	공동주택	●필로티를 통해 각 세대의 지상 높이를 높여 조망권을 확보 ●필로티내부엔 화단 및 분수대를 설치하거나, 가로공간에 벤치를 두어 휴게공간을 제공
재료 및 색채	공동주택	●반사성 재료 사용금지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진입구 처리	공동주택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공동주택	●필로티를 계획하여 아파트내의 시각적인 경관통로를 확보해 단지내 개방감을 느끼도록 계획
조명계획	공동주택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
스카이라인	공동주택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전면공지	●건고실은거리변(대로3-1) ●남북연결로(대로3-5) ●거마로변(대로2-33)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소로1-1) ●공원변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공간은 보도 및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B)=6~10m ·건 고실은거리변, 남북연결로 : 10m ·거마로변, 현대아파트2차 도로변, 공원변 : 6m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차량출입 불허구간	대로2-33, 대로3-5 대로3-1, 소로1-1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공공시설 제외)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검토결과	환경현황	대책 및 반영사항
자연환경	비오톱	○	●녹지대 증가로 비오톱 변화	●조경식재로 인하여 주거지비오톱, 상업 및 업무지 비오톱, 공업지 및 도시기반시설지비오톱, 교통시설비오톱, 조경녹지비오톱 등이 형성됨
	녹지변동 녹지체계	○	●녹지대 증가	●공원녹지 확보
	습지보전	×	없음	

검토항목		검토 결과	환경현황	대책 및 반영사항
생 태 환 영 하 한 경	토양포장 우수유출	○	●불투수포장도의 변화 및 공사시 우수 유출	●촉진계획지구내 체계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공원·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 보함으로 사업시행전에 비해 불투수포장을 감소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지하굴착으로 인한 지형변동	●촉진지구별 개별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지형변화는 있으나 그 영향은 미 미함.
	물 순 환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생태 면적을 변화	●생태면적을 30%이상 (계획 46.21%) ●자연지반녹지율, 생태면적을 증가계획 수립
	수 질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우려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를 제거후 우수방류 등 토사유출 최소화
	일 조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일조영향예상	●장래 토지이용변화에 부합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의 높이 제한으로 일조 영향 최소화
	바 람	○	●건축물 설치계획에 따라 바람변화 예상	●지구내 녹지를 최대한 조성함으로써 풍속의 변화 최소화
	경 관	○	●고층의 높은 경관으로 변화	●주변 건축물 및 인근 주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층고계획 수립
	에 너 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증가	●에너지 사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기자재 사용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기기 사용
	환경오염	○	●공사장비 사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계획인구 및 유발인구에 의한 오수발생 ●건설폐기물 및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공사시 작업장비에 의한 소음 및 운영시 인근 도로변의 차량소음발생	●계획지구내 개별공사시 경계부에 방진망 설치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살수차량 운행 ●오수관거를 이용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서울시, 송파구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위탁처리 ●운영시 분리수거함을 이용 분리수거하여 송파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 라 처리 ●공사시 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및 저소음장비 사용

4) 인센티브 사항 : 해당없음

5)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시재정비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주택 규모별 비율(거여2구역정비계획)

- 거여2구역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소형주택
합계	3,144	100.0	595	595	-	18.9	100.0	-
40㎡이하	302	9.6	302	302	-	9.6	50.8	-
40㎡초과~50㎡이하	222	7.1	222	222	-	7.0	37.3	-
50㎡초과~60㎡이하	928	29.5	71	71	-	2.3	11.9	-
60㎡초과~85㎡이하	1,531	48.7	-	-	-	-	-	-
85㎡초과	161	5.1	-	-	-	-	-	-

- 거여2구역1지구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소형주택
합계	1,945	100.0	368	368	-	18.9	100.0	-
40㎡이하	192	9.9	192	192	-	9.9	52.2	-
40㎡초과~50㎡이하	128	6.6	128	128	-	6.6	34.8	-
50㎡초과~60㎡이하	600	30.8	48	48	-	2.4	13.0	-
60㎡초과~85㎡이하	987	50.7	-	-	-	-	-	-
85㎡초과	38	2.0	-	-	-	-	-	-

- 거여2구역2지구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소형주택
합계	1,199	100.0	227	227	-	18.9	100.0	-
40㎡이하	110	9.2	110	110	-	9.2	48.5	-
40㎡초과~50㎡이하	94	7.8	94	94	-	7.8	41.4	-
50㎡초과~60㎡이하	328	27.3	23	23	-	1.9	10.1	-
60㎡초과~85㎡이하	544	45.4	-	-	-	-	-	-
85㎡초과	123	10.3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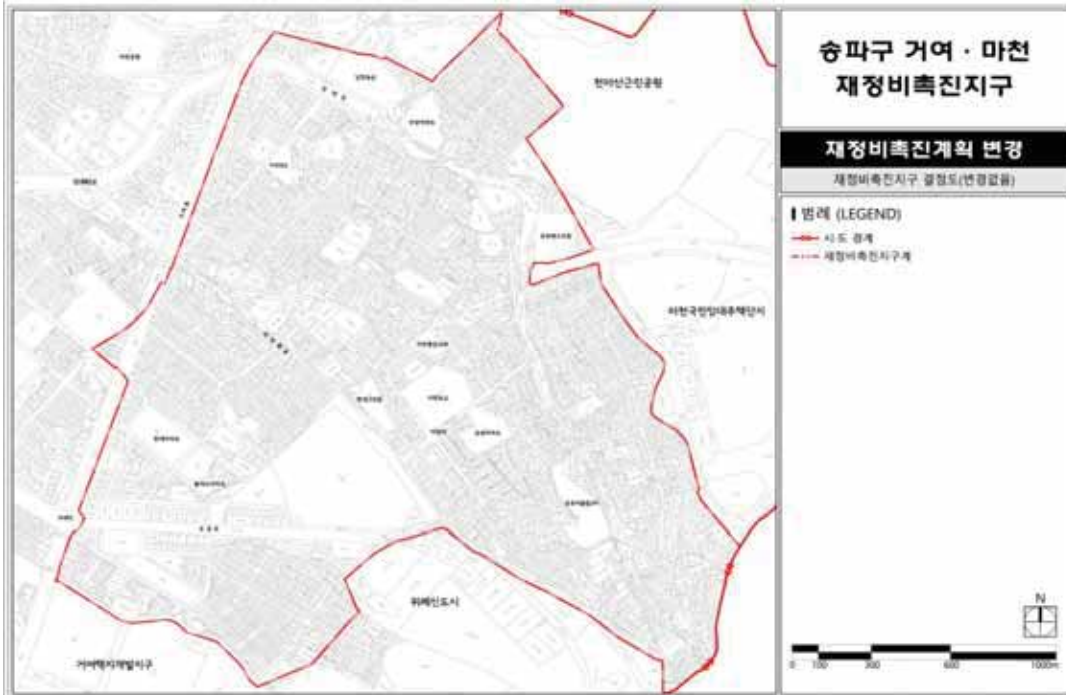
III. 관계도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송파구 주택사업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 첨부된 도면은(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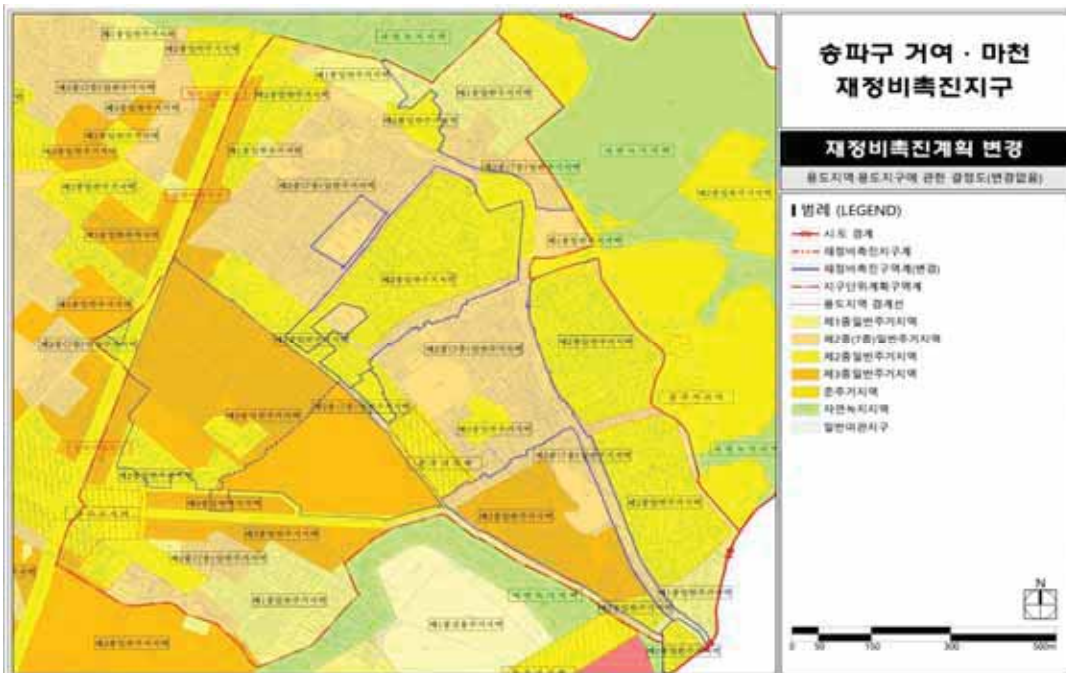
I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8) 및 송파구청 주택사업과(☎02)2147-2897)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붙임 : 관계도면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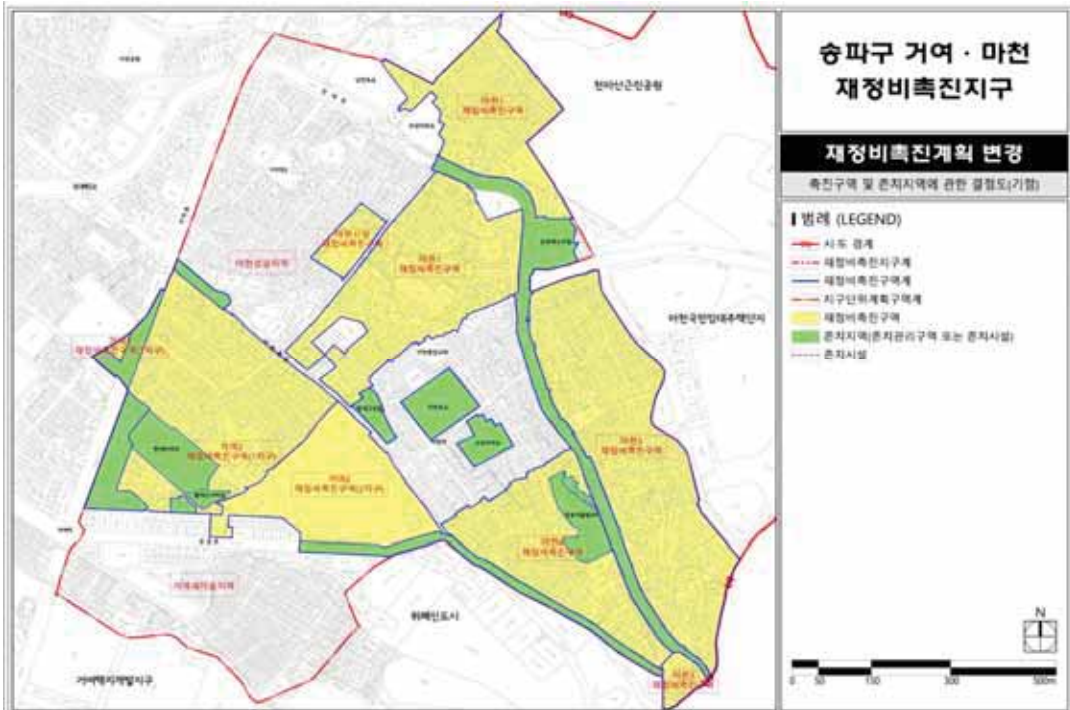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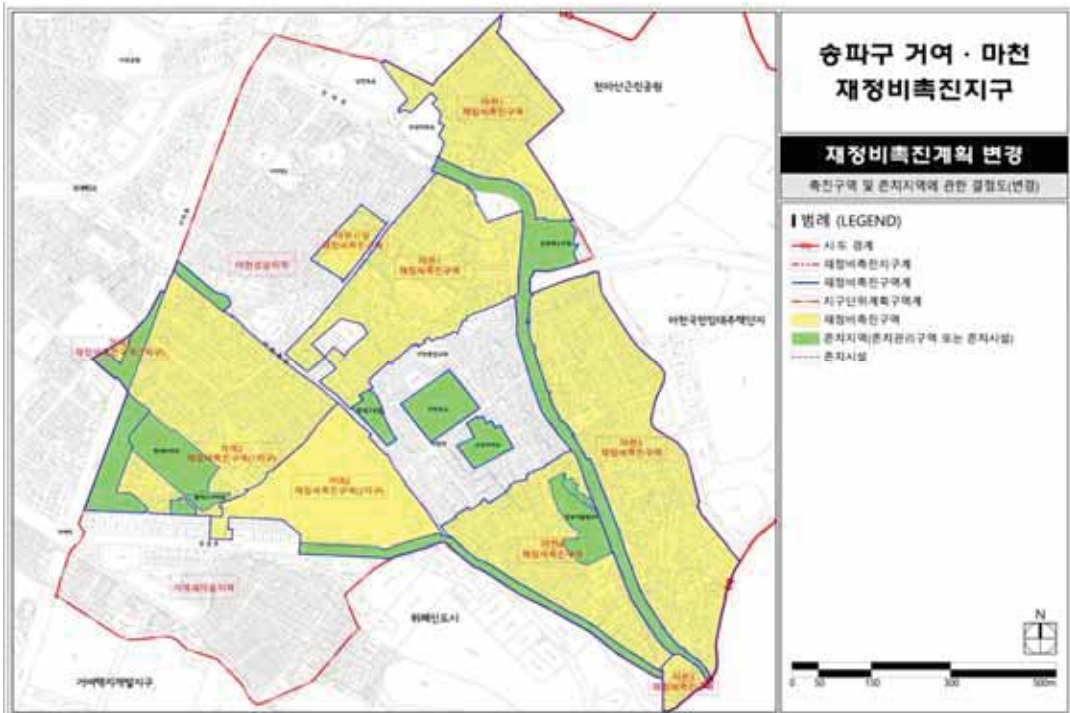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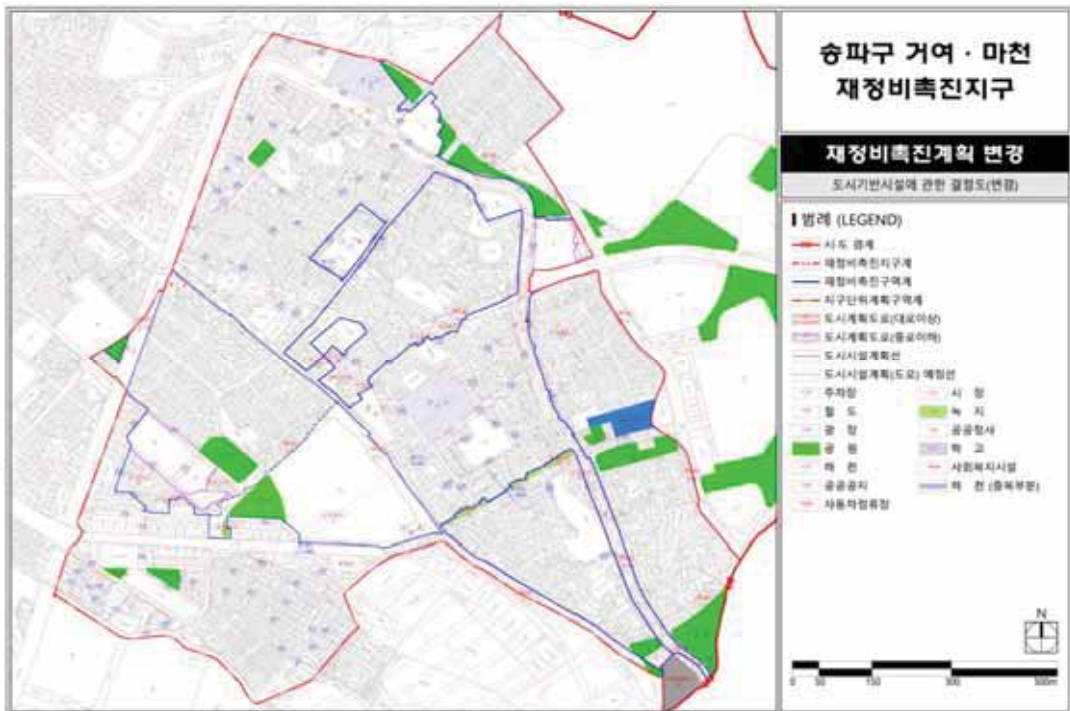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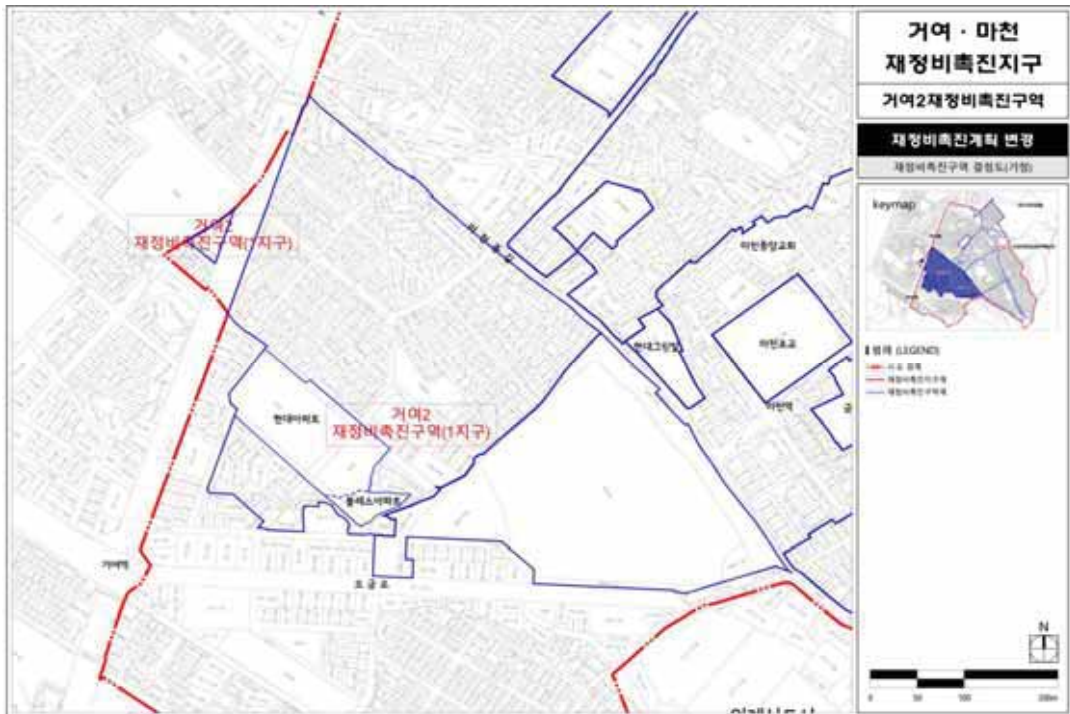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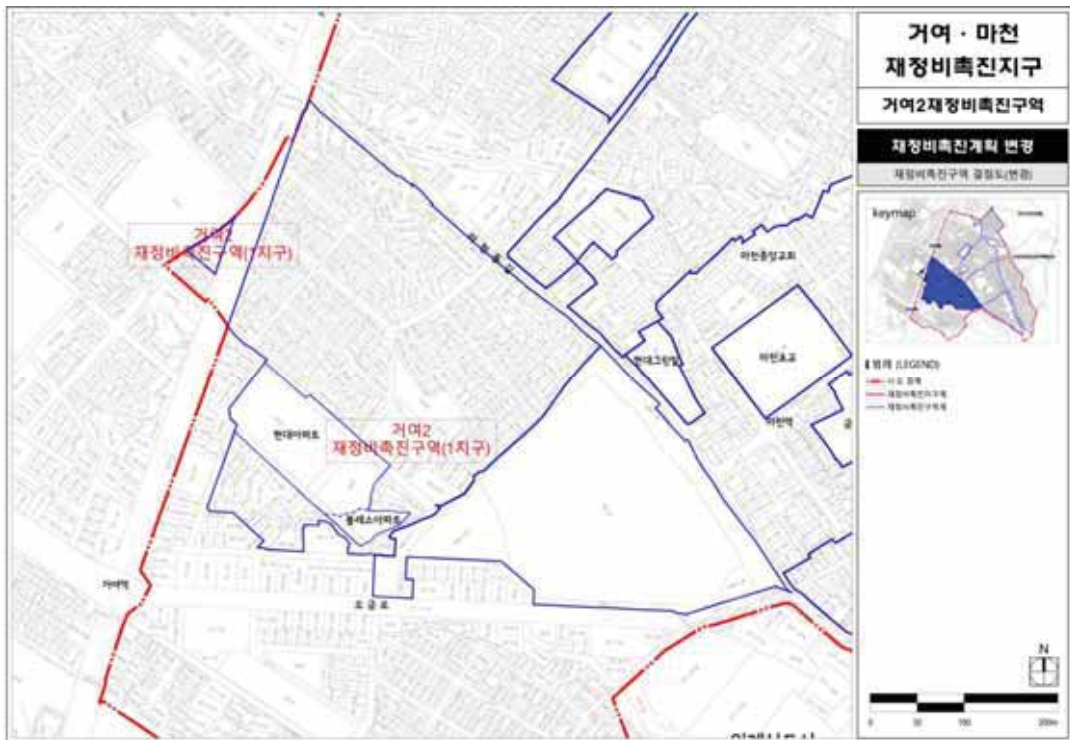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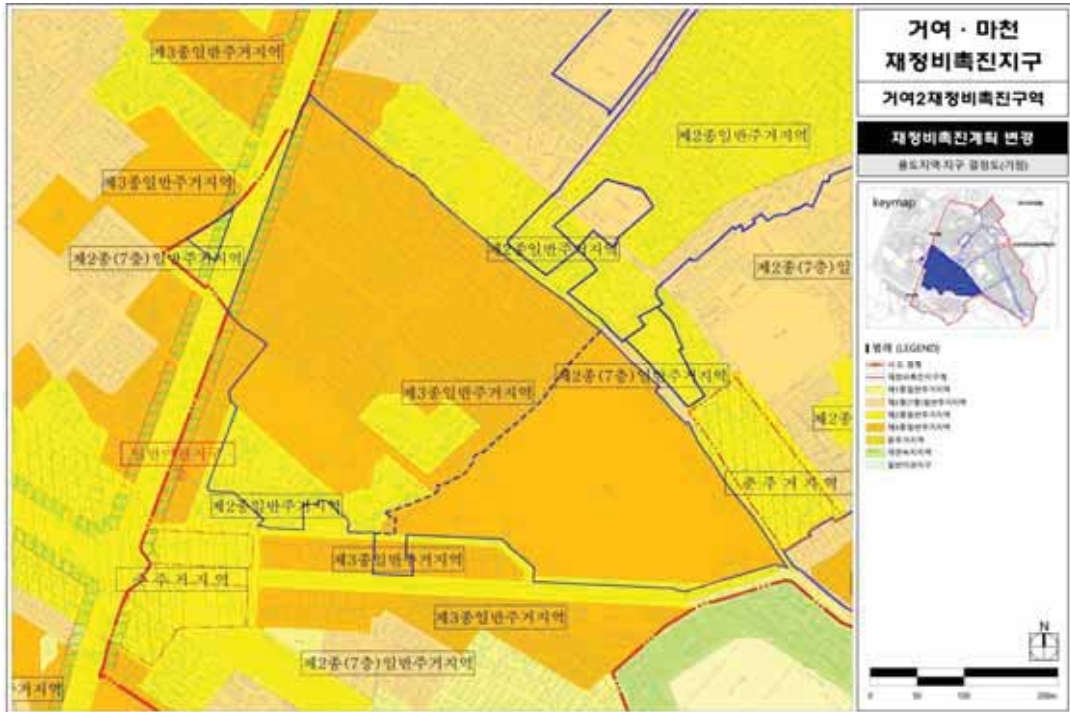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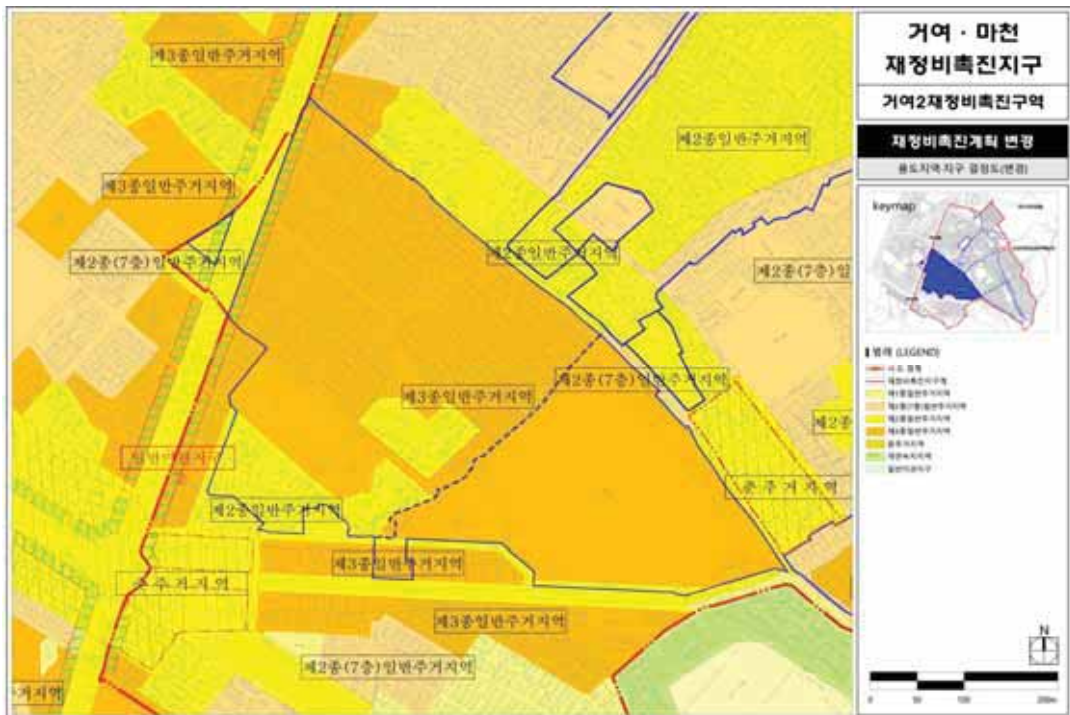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결정(변경)도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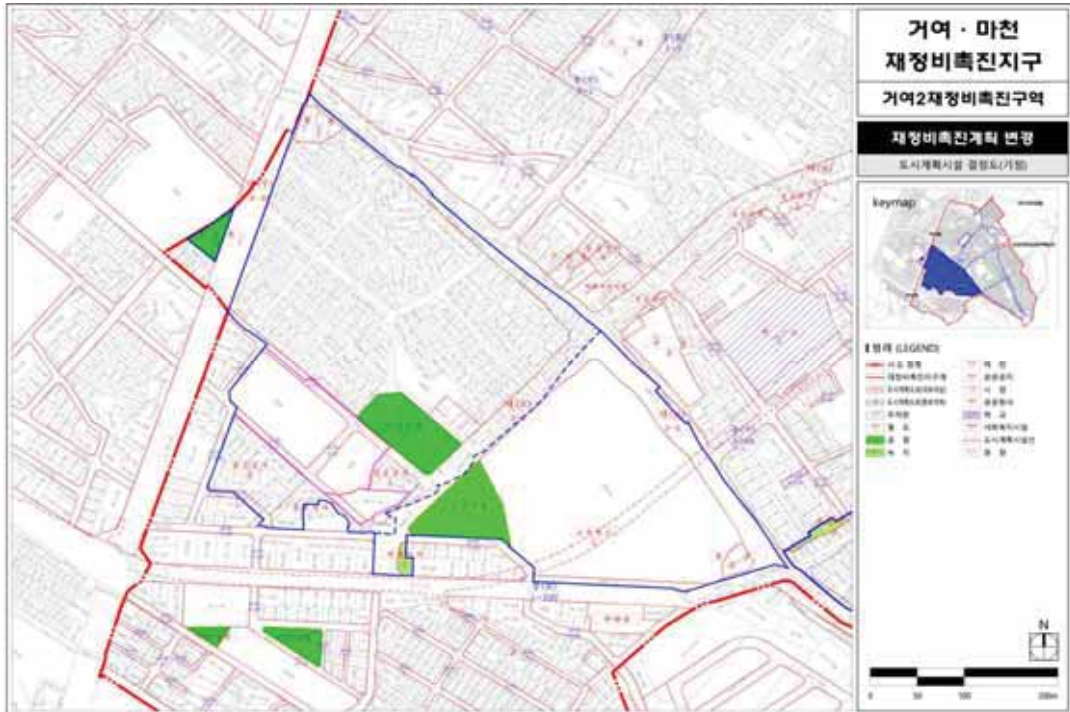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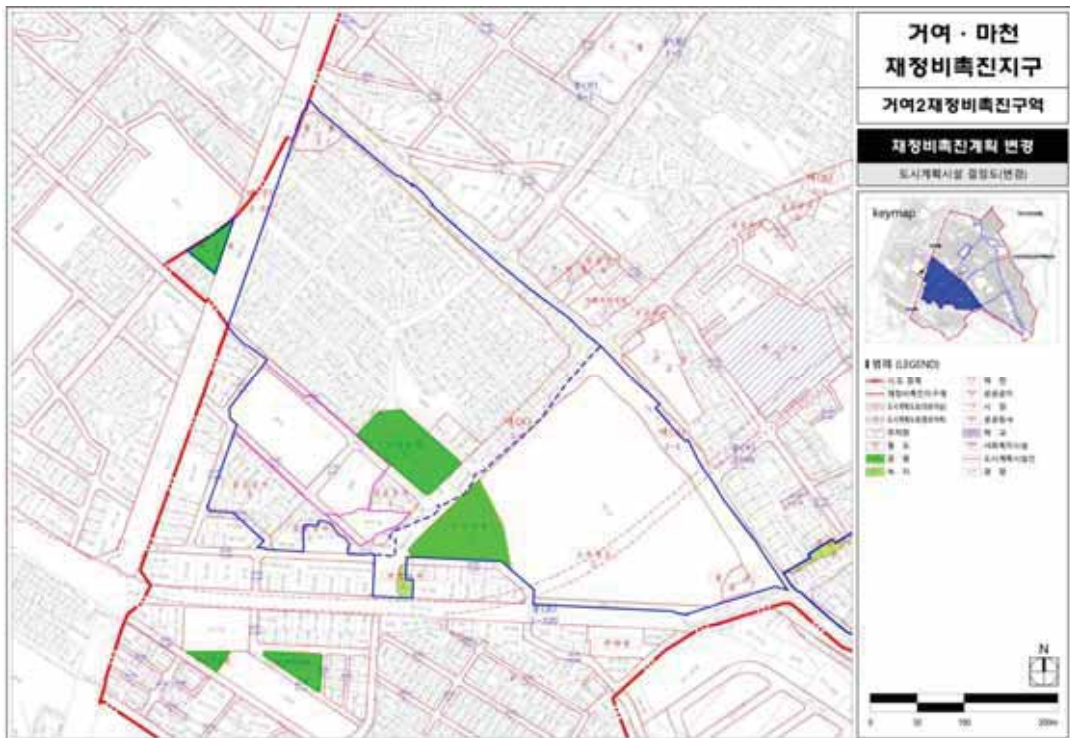


주)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2지구 구역계 조정 및 1지구 지적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단순면적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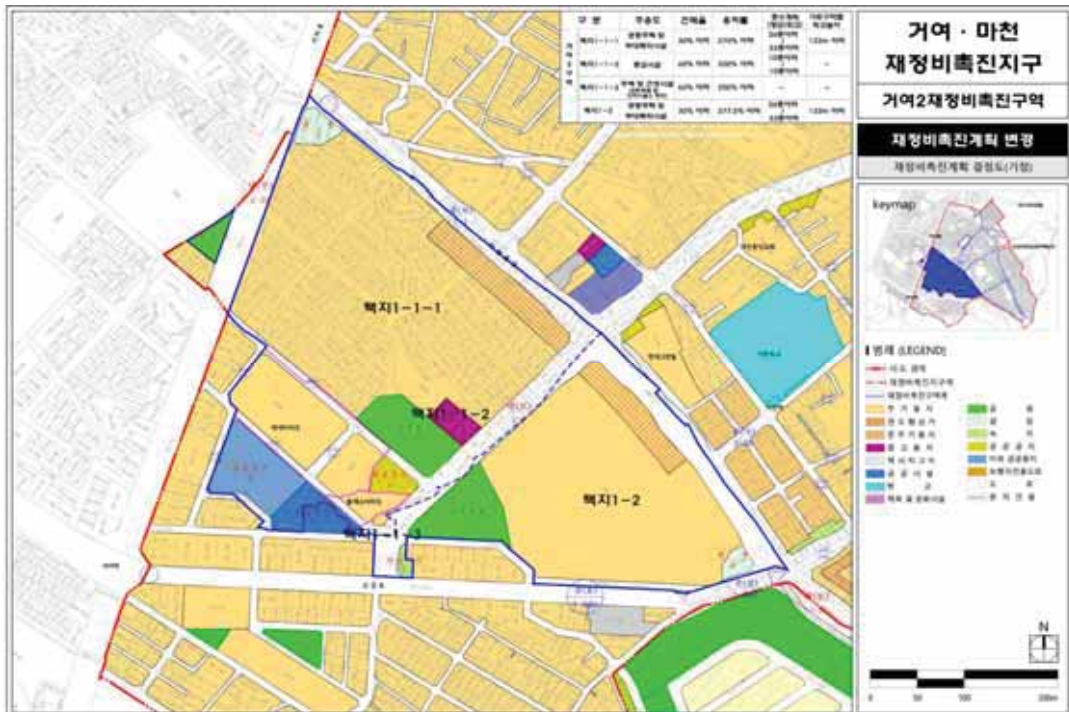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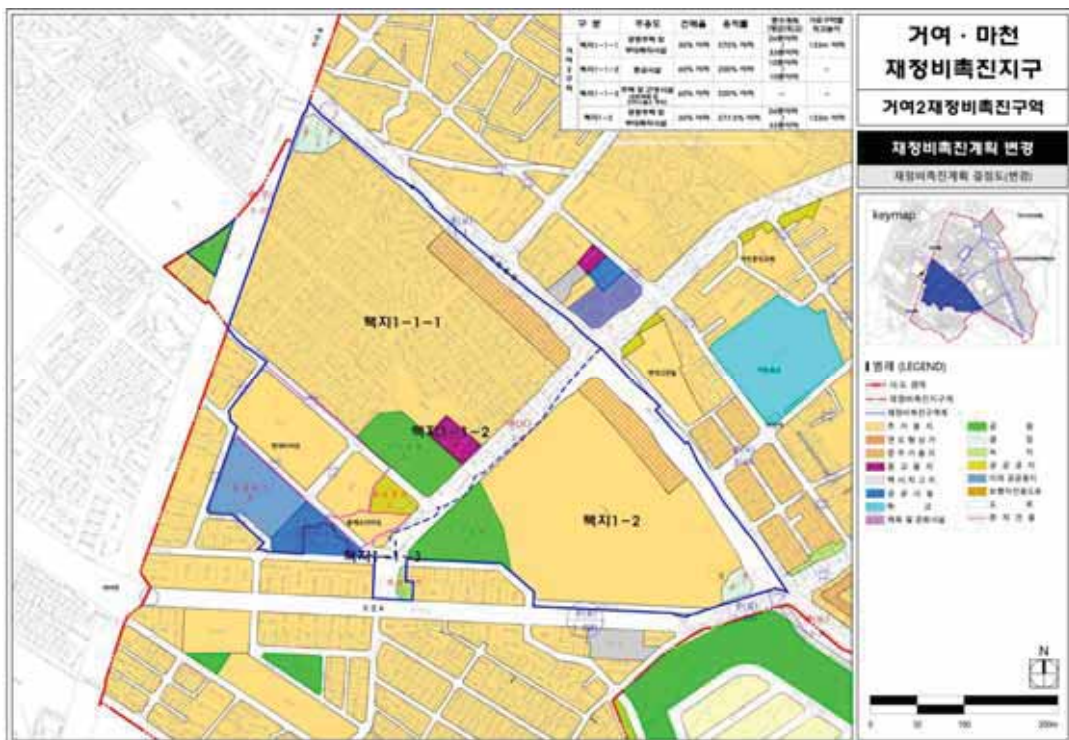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기정)도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6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구산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04호('94.03.30.)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87호) 시행한 「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외부(지하↔지상)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1-20 일대(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설치사업(도시철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 2) 명 칭 : 6호선 구산역 3번 출입구 외부(지하↔지상) 에스컬레이터 설치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160.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준공예정일 : 2025년 5월 2일 (인가일로부터 ~ 30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토지수용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7호
월드컵 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현장근로자 대기실 신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50호(2019.10.31.)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26호(2022.08.04.)로 결정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대기실 신축) 실시계획 사업을 작성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90-1 외 28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내 신축) 사업
- 2) 명 칭 : 평화의 공원 현장근로자 대기실 신축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 면 적 : 498.36㎡(연면적)
- 2) 규 모

구 분	사업내용	비 고
건축면적	250.38 ㎡	
연 면 적	498.36 ㎡	
층수/건물높이	지상2층 / 10.4m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주 용 도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및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의제처리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3.1. ~ 2023. 6.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300-5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실시계획 인가 고시(가산디지털단지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77호('93.3.18.)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판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88호) 시행한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71-9번지 일대(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설치사업(도시철도: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 2) 명 칭 :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18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준공예정일 : 2025년 5월 2일(인가일로부터 ~ 30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토지수용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3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새절역)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104호('94.03.30.)로 최초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해 승강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745호) 시행한 「지하철 6호선 새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352-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설치사업(도시철도: 지하철 6호선 새절역)
- 2) 명 칭 : 지하철 6호선 새절역 3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서울교통공사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라.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1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 준공예정일 : 2025년 5월 2일 (인가일로부터 ~ 30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별첨(토지수용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2133-4351)로 문의 바랍니다.

□ 위치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40호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및 제33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장

I.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 면 적 : 1,185.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11월 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명 칭 : 주식회사 엘와이디벨럽
- 대표자 성명 : 김영금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94, 1층 101-1호 (신길동, 삼익리베리움)
- 법인등록번호 : 131411-0468358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시흥동	103-3	대	23	23	㈜ 엘와이 디벨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94, 1층 101-1호	100%	광명동부 새마을 금고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79-1	근저당설정
2		112-1	대	440	433						
3		112-3	장	628	628				이푸른 새마을 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78-1	근저당설정
4		743-8	대	76	76				-	-	-
5		734-27	대	25	25				-	-	-
합계				1,192	1,185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리 지번
	행정동	지번					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시흥동	112-3	장	공장 근생	철근콘크리트 조	1996. 12.30	1,466.4	1	4	㈜ 엘와이 디벨롭	이푸른 새마을 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78-1	근저당설 정	
2		112-1	대	근생	철근콘크리트 조	1985. 02.28	969.13	1	4		광명동부 새마을 금고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79-1	근저당설 정	103-3
	계						2,435.53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747,097.5	-	747,097.5	100.0%	
주거 지역	소계		281,414.3	감) 1,137.0	280,277.3	37.5%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291.0	-	4,291.0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7.0	-	2,937.0	0.4%	

구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862.0	-	150,862.0	20.1%	
		준주거지역	123,324.3 (1,137.0)	감) 1,137.0	122,187.3 (-)	16.4%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67,778.0 (48.0)	증) 1,137.0	68,915.0 (1,185.0)	9.2%	
공업지 역		준공업지역	397,905.2	-	397,905.2	53.3%	

주) ()는 시흥동 103-3번지 일원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이며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137.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747,097.5 (1,185)	-	747,097.5 (1,185)	

주) ()는 시흥동 103-3번지 일원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이며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7.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전략주택공급과(02-2133-6297)와 금천구청 건축과 3층 건축과(02-2627-163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II.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명 칭 :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 면 적 : 1,185.0㎡
- 공급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지하철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역세권 지역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촉진지구 지정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명 칭 : 주식회사 엘와이디벨럽
- 대표자 성명 : 김영금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94, 1층 101-1호 (신길동, 삼익리베리움)
- 법인등록번호 : 131411-0468358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사업기간 : 지구지정일 ~ 2025년
- 재원조달계획 : 자기자본, 금융기관 조달 등

4.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85.0	100.0	-
주택건설용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용지)	1,185.0	100.0	-

주)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 1) 수용인구 : 239인
- 2) 주택건설계획 : 180세대

구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공공 임대 주택	공공 임대	A형	8	4.5	8	2.5	1인세대
		B형	4	2.2	11	3.2	2인이상 세대
		E형	6	3.3	6	1.8	1인세대
		F형	6	3.3	6	1.8	1인세대

구분			세대수(세대)	비 율(%)	수용인구(인)	비 율(%)	비 고
		소계	24	13.3	31	9.3	
	SH 선 매입	A형	28	15.6	28	8.5	1인세대
		B형	20	11.1	53	16.1	2인이상 세대
		E형	4	2.2	4	1.3	1인세대
		F형	6	3.3	6	1.8	1인세대
		소계	58	32.2	91	27.7	
공공 자원 민간 임대	B형	48	26.7	127	38.7	2인이상 세대	
	D형	18	10.0	48	14.5	2인이상 세대	
	E형	8	4.5	8	2.5	1인세대	
	F형	6	3.3	6	1.8	1인세대	
	G형	18	10.0	18	5.5	1인세대	
	소계	98	54.5	207	63.0		
총계			180	100.0	239	100.0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해당사항 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1) 환경보전계획

가) 생태면적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조성

- 도시공간의 생태적 기능(자연의 순환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 녹지(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조성 및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을 실시하여 생태환경 향상 도모
- 대상지내 건축물은 현재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조경녹지 조성을 통해 오픈스페이스 마련 및 녹지체계 구축

나) 환경오염 저감계획

- 공사 시 공정별 오염물질발생원을 분류하고, 부지내 지형을 고려하여 각종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계획 및 설치하여 각 공사단계별 환경오염 저감대책 이행

2) 탄소저감계획

가) 녹지계획

- 탄소저감을 위해 사업지구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등) 하고, 녹지공간 내 조경식재 시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하여 대기질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계획

나) 녹색교통 활성화 유도

- 대상지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통해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자전거 등을 통한 녹색교통

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

- 자전거 보관소, 나눔카 등을 설치하여 탄소배출량 저감 유도

다) 저탄소 친환경단지 조성

- 충분한 녹지조성, 투수성 포장재료의 사용 등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억제하고, 에너지 효율관리방안을 충분히 검토

- 서울어제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 (도면게재생략)

[붙임]

I.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747,097.5 (1,185)	-	747,097.5 (1,185)	

주) ()는 시흥동 103-3번지 일원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이며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747,097.5	-	747,097.5	100.0%	
주거 지역	소계		281,414.3	감) 1,137.0	280,277.3	37.5%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4,291.0	-	4,291.0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2,937.0	-	2,937.0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862.0	-	150,862.0	20.1%	
	준주거지역		123,324.3 (1,137.0)	감) 1,137.0	122,187.3 (-)	16.4%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67,778.0 (48.0)	증) 1,137.0	68,915.0 (1,185.0)	9.2%	
공업지 역	준공업지역		397,905.2	-	397,905.2	53.3%	

주) ()는 시흥동 103-3번지 일원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이며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금천구 시흥동 103-3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137.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바. 환경기초시설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획지 결정(변경) 조서

1) 단위대지의 최대 개발규모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획지간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4) 필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4	112-3장, 743-8대, 112-1대, 103-3대, 743-10대	1,185㎡	① 112-3장, 743-8대 공동개발지정 ② 112-1대, 103-3대, 743-10대 공동개발 지정	112-3장, 743-8대, 112-1대, 103-3대, 743-10대 공동개발 지정	동일소유, 토지이용합리화 위하여 공동개발 확대지정

※ 상기내용 이외에는 변경없음

■ 필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확대지정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1) 불허용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A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구.발소길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불허용도	비고
기정	A-1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단, 공공임대주택은 80%미만이 경우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흥동 992-19, 992-20, 992-46번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지역
	D	•단독주택 •공동주택(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 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 △10%)은 실무부서협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E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필승아파트 부지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군부대부지(공동주택 용지) •대한전선부지(공동주택 용지) •기아자동차부지(공동주택 용지)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H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
	I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홈플러스부지
	J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를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대한전선부지(산업시설) •기아자동차부지 (지식산업센터 용지)
	K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 영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은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 설치가능한 용도로 인정(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 하에 한정하여 설치가능 함)	•기아자동차부지(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용지)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 단독주택은 주거복합이 아닌 경우를 말함

※ A-1 주거복합건축물이 주거부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A기준을 적용함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불허용도	비고
변경	A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일반상업지역 •간선(폭25m이상) 도로변 •시흥대로 63길변(구.발소길변)
	A-1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면적비율이 용적률의 70% 미만인 주거복합건축물제외/단, 공공임대주택은 80%미만 이 경우 제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시흥동 992-19, 992-20, 992-46번지
	C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지역
	C-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발전시설 •장래시설 •그 밖에 유사한 시설로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아영장 시설	•시흥동 103-3번지 일원 -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D	•단독주택 •공동주택(군부대부지 중 상업업무복합용지(D1(가구단위), (D2-2))의 경우 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 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 군부대부지의 주거면적 비율 중 완화되는 비율(50%→60%, △10%)은 실무부서협의의를 통하여 근로자, 젊은이 등을 위한 기숙사, 장기전세주택 및 임대주택 등으로 계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군부대부지 - 시흥대로변 - 금천구청역부근
	E	•단독주택 •공동주택(지상층 연면적 중 주거면적 비율이 60%미만으로 계획시 공동주택 허용)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제외)	•필승아파트 부지
	F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 용도(대한전선부지, 기아자동차부지)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보다 산업부지 개발이 우선하거나 병행되어야함)	•군부대부지(공동주택 용지) •대한전선부지(공동주택 용지) •기아자동차부지(공동주택 용지)
	G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필지
	H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롯데알미늄부지 주변 개별필지
	I	•단독주택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홈플러스부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불허용도	비고
변경	J	•산업시설(도시계획조례 별표2. 3호)를 제외한 용도 ※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산업지원시설 설치가능 함	•대한전선부지(산업시설) •기아자동차부지 (지식산업센터 용지)
	K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을 제외한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동차 영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은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에 한해 설치가능한 용도로 인정(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30이하에 한정하여 설치가능 함)	•기아자동차부지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용지)

※ 상기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적용, 용도별 건축물 종류의 각호에 의한 분류임

※ 단독주택은 주거복합이 아닌 경우를 말함

※ A-1 주거복합건축물이 주거부분 전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A기준을 적용함

■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준용에 따른 불허용도 추가

2) 권장용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지정용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전층	비고
기정	a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면적 20,000㎡ 내외)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신설	b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 비주거용도 설치 가능	•시흥동 103-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b 공동주택(주거복합)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은 제외

■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에 따른 지정용도 결정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 조서

1) 건폐율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비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주거지역	60% 이하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60% 이하	

2)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가) 용적률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용도지역 기준		접도조건	지구단위계획 내용		
	종전 용도지역	종전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일반상업	일반상업	12m이상	600%이하	8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1+1.3α)이내 ※ α=(공공시설제공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준공업		12m이상	400%이하	660%이하	
			12m이상	250%이하	450%이하	
			12m이상	300%이하	630%이하	
	12m미만		250%이하	450%이하		
	준공업	준공업 ^{주4, 주5)}	-	300%이하	400%이하	500%이하
	준공업	준주거	8m이상	250%이하 (300%이하) ^{주1)}	400%이하	
			8m미만	250%이하	3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400%이하	
	준공업	제3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베르빌,무지개,건영A)	230%이하	-	2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300%이하 ^{주2)}	-
	제2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목련A)	200%이하	-	
			-	200%이하	230%이하	

주1) ()는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 적용

주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기준/허용 용적률 산정

주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주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 시 210%/230%/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 / - (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주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 변경

구분	용도지역 기준		접도조건	지구단위계획 내용			
	종전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접도조건 및 기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변경	일반상업	일반상업	12m이상	600%이하	800%이하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한 경우 허용용적률× (1+1.3α)이내 ※ α=(공공시설제공 면적)/(공공시설제공 후 대지면적)
	준공업		12m이상	400%이하	660%이하		
			12m이상	250%이하	450%이하		
	일반주거		12m이상	300%이하	630%이하		
			12m미만	250%이하	450%이하		
	준주거	일반상업	-	-	-	684.86%이하	800%이하 ^{주6)}
	준공업	준공업 ^{주4, 주5)}	-	300%이하	400%이하		
	준공업	준주거	8m이상	250%이하 (300%이하) ^{주1)}	400%이하		
			8m미만	250%이하	3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400%이하		500%이하
	준공업	제3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베르빌,무지개,건영A)	230%이하	-		250%이하
			군부대부지	250%이하	300%이하 ^{주2)}		-
	제2종 일반주거		아파트단지 (목련A)	200%이하	-		
			-	200%이하	230%이하		

주1) ()는 15m이상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한해 적용

주2) 군부대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적용하여 기준/허용 용적률 산정

주3) 구역계 면적 증가에 따라 증가된 부지의 용적률은 기정 용적률 체계를 따름

주4) 베르빌아파트 북측 113번지 일대 15개필지(준공업지역)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건립 시 210%/230%/ 그 외 공동주택건립시, 250% / - (기준/허용), 단 지구단위계획 지침내용을 수용하여야 함

주5)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중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정비유형을 적용하는 지역은 본 지침에서 마련하는 별도의 용적률 체계 적용

주6) 시흥동 103-3번지 일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의 용적률 기준을 준용

나) 준공업지역내 특별계획구역 (정비유형 : 산업재생형)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 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고	
높이 계획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 용지		110m 이하	
		산업 부지	종합의료시설	120m 이하	
			산업시설	60m 이하	
	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용지	80m 이하	
		산업 부지	지식산업센터용지	70m 이하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용지	50m 이하	
			공공시설용지	50m 이하	
	시흥대로변 준주거지역			80m 이하	
	공공청사(금천구청사) 부지				
	홈플러스부지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70m 이하	
	금천구청 전면 민간부지(A7-2부지)			50m 이하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및 금하로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준주거지역			40m 이하	금하로변주1) 남측(B2)
	기타 이면부			30m 이하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면부 공동주택지 (베르빌, 목련, 건영아파트)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	
	이면부 공동주택지 (무지개, 무지개연립)			110m 이하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롯데알미늄 주변 개별필지			60m 이하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대로변 상업업무복합용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금천구청역 인근 상업업무복합용지		사선제한 적용	
		공공청사 용지		60m 이하	
		공동주택 용지		사선제한 적용	
		학교용지		30m 이하	
		문화체육/사회복지용지		30m 이하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부지(15개필지)			40m 이하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80m 이하	

주1) 금하로 남측에 접한 B2구역은 필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이행 준수시에 높이 40m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이면부 기준인 30m 적용

■ 변경

구분	적용대상			높이계획	비고	
높이 계획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 용지		110m 이하		
		산업 부지	종합의료시설	120m 이하		
			산업시설	60m 이하		
	시흥대로변 일반상업지역			120m 이하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용지	80m 이하		
		산업 부지	지식산업센터용지	70m 이하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용지	50m 이하		
			공공시설용지	50m 이하		
	시흥대로변 준주거지역			80m 이하		
	공공청사(금천구청사) 부지					
	홈플러스부지					
	113-112번지일대 특별계획구역			70m 이하		
	103-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부지			69m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주2)}	
	금천구청 전면 민간부지(A7-2부지)			50m 이하		
	이면부 일반상업지역 및 금하로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준주거지역			40m 이하	금하로변 ^{주1)} 남측(B2)	
	기타 이면부			30m 이하		
	이면부 공동주택지 (베르빌, 목련, 건영아파트)			도로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		
	이면부 공동주택지 (무지개, 무지개연립)			110m 이하		
	롯데알미늄부지 특별계획구역			100m 이하		
	롯데알미늄 주변 개별필지			60m 이하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시흥대로변 상업업무복합용지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150m 이하	최고높이가 지정된 대지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항에 의한 도로 사선제한 (H=1.5D이하)을 적용하지 아니함		
		금천구청역 인근 상업업무복합용지	사선제한 적용			
		공공청사 용지	60m 이하			
		공동주택 용지	사선제한 적용			
		학교용지	30m 이하			
		문화체육/사회복지용지	30m 이하			
	베르빌아파트 북측 민간부지(15개필지)				40m 이하	
	필승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80m 이하	

주1) 금하로 남측에 접한 B2구역은 필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이행 준수시에 높이 40m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 이면부 기준인 30m 적용

주2) 시흥동 103-3번지 일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의 높이완화 적용

라.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A1	시흥대로변 등 3m, 기타 도로변 2m	좌동	-
A2	군부대측 5m, 시흥대로변 3~4m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2m, 기타 도로변 1~2m	좌동	-
A3	시흥대로변 3m, 보행자우선도로변 1~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A4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필승아파트부지측 도로변 5m 시흥대로73길(구.발소길)변 2~3m 기타 도로변 1m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5m 필승아파트부지측 도로변 5m 시흥대로73길(구.발소길)변 2~3m 기타 도로변 1m 역세권 청년주택부지 (동측 1m, 북측 3m→1m)	시흥동 103-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부지 - 동측 도로변 1m - 북측 대지경계선 1m
A5	대한전선측 도로변 5m(주1) 시흥대로63길(구.발소길)변 2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A6	대한전선측 도로변 5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A7	15m이상 도로변 5m	좌동	-
A8	광장변 5m, 금하로변 5m 목련아파트변 5~8m	좌동	-
B1	시흥대로변 3m, 금하로변 2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B2	대한전선측 도로변 5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B3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B4	12m이상 도로변 1~5m, 4m미만 도로변 1~2m	좌동	건영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2m, 5m 홈플러스부지 특별계획구역 3m, 5m 기타 도로변 1~2m
B5	중로 2-318호선변 5~8m, 12m이상 도로변 5m	좌동	-
B6	홈플러스부지변 3m, 기타 도로변 5m, 건영아파트변 9m		-
C1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2.5m	좌동	-
C2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C3	시흥대로변 3m, 기타 도로변 1m	좌동	-
C4	도로변 1m	좌동	-

가구 번호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D1	시흥대로변 5m, 남측도로변 5m, 기타도로변 5m	좌동	-
D2	벚꽃로변 5m, 기타 도로변 5m	좌동	-
D3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2m, 기타 도로변 5m	좌동	-
D6	시흥대로73길(구.시흥역길)변 2m, 기타 도로변 5m	좌동	-
D7	남측도로변 2m, 기타 도로변 5m	좌동	-
D8	북측도로변 3m, 기타 도로변 2m	좌동	-
E1	도로변 2m	좌동	-
E2	도로변 2m	좌동	-

주1) 대한전선측 도로(15m) 필지(가구A5)의 건축한계선은 도로폭 15m 기준으로 도로에서 5m로 설정함

■ 건축한계선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 역세권 청년주택건립에 따른 대지경계선 북측 건축한계선을 3m→1m로 변경하여 104-2번지의 보행통로 확보

- 2) 건축물 배치(연도형상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3) 통경축 배치구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마.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대지내 공지 및 통로

- 1) 전면공지(위치지정) : 변경없음
- 2) 공개공지(위치지정) : 변경없음
- 3) 차폐조경(위치지정) : 변경없음
- 4) 공공보행통로 : 변경없음
- 5) 보차혼용통로 : 변경없음

나.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1) 차량출입불허구간 : 변경없음
- 2) 보행자전용도로 : 변경없음
- 3) 보행자우선도로 : 변경없음

다.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5.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가. 용적률 인센티브

- 1) 용적률 인센티브 기본형 : 변경없음
- 2) 용적률 인센티브 혼합형 : 변경없음
- 3) 용적률 인센티브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 4) 용적률 인센티브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 5) 용적률 인센티브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없음
- 6) 용적률 적용(의무사항) : 신설

구 분		기 준				적용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기본 용적률 (부지면적) 684.86%	•공공기여율 : 대지면적의 19.6% 이상 - 1,185.0㎡× 19.6% = 232.2㎡				공공시설 (지상2층)	① 공공시설 제공면적 : 200.76㎡ (16.94%) - 건축물 토지지분 면적 : 43.71㎡ (3.69%) - 공공시설 환산부지면적 : 157.05㎡ (13.25%)	부속토지 기준 232.66㎡ (19.63%)	⑤ 총180 세대 중 공공임대 주택 82세대 (세대수 기준: 45.56%) •공공임대 : 24세대 •SH 선매입 : 58세대	
		구분	계	준주거	일반상업					
		대지면적(㎡)	1,185	1,137	48.0					
		기본용적률(%)	684.86	680	800					
	공공기여율(%)	19.59	20	10						
	공공기여면적(㎡)	232.2	227.4	4.8	공공임대 주택	② 공공기여 : 31.90㎡ (2.69%) → 7세대				
	상한 용적률 (연면적) 799.68%	•증가용적률(799.68%-684.86%=114.82%)의 50% 공공임대 주택 제공 - 증가용적률(114.82%)의 50% : 57.41%					③ 추가공공기여 : 85.49㎡(7.21%)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716.93㎡ (60.50%) → 17세대			
		•SH 선매입					④ 58세대 : 307.02㎡ (25.91%)			
비주거비율		•10% 이상 20% 이하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주거 : 비주거(89.98% : 10.02%)				기본 용적률 684.86% , 상한 용적률 799.68% 부여 모든 항목 충족 필요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주택 건설규모 : 전용면적 18㎡ ~ 60㎡ - 1인(세어형 포함) 세대 : 전용 18㎡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전용 36㎡ 이상				•계 : 180세대(전용면적 기준, ㎡) •공공임대주택: 24세대 - 20.38(8세대), 22.76(6세대), 23.12(6세대), 36.27(4세대) •SH 선매입 주택: 58세대 - 20.38(28세대), 22.76(4세대), 23.12(6세대), 36.27(2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98세대 - 18.11(18세대), 22.76(8세대), 23.12(6세대), 31.88(18세대), 36.27(48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을 설치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세대~ 300세대 미만 : 150㎡ 이상				•150.58㎡ 계획 (지상 1층)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나. 공공기여계획 결정조서 : 신설

구분		적용기준	적용내용	비고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시설주2)	기본용적률 684.86% 이하 부여	•부지면적의 19.6% 이상주1) - $1,185.0\text{m}^2 \times 19.6\% = 232.2\text{m}^2$	•기본공공기여 - 공공임대주택 : 31.90m^2 (2.69%) [7세대] - 공공시설 : 200.76m^2 (16.94%) ※ 환산부지면적 : 157.05m^2 , 부속토지면적 : 43.71m^2	
공공임대주택	상한용적률 799.68% 부여	•완화용적률(114.82%)의 50%이상 공공임대 주택 제공 - 용적률 57.41% 이상 - 용적률 산정 연면적 : 680.3m^2 이상	•추가공공기여 : 용적률 60.50% [17세대]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716.93m^2 (60.50%) [완화용적률 114.82%의 50% = 57.41%] ※ 환산부지면적 : 85.49m^2 (7.21%)	
SH선매입	-	•전체 주택 연면적의 30% ※단,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 비율(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사업 규모, 공공기여 등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 를 통해 비율 조정 가능	•전체 주택 연면적의 30.12% - SH선매입 임대주택 전용면적 : $1,525.80\text{m}^2$ (58세대) •부지면적 기준 : 307.02m^2 (25.91%)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주2) 금천구청에 기부채납

6.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III. 방재계획

1. 내수재해 : 우수계획시 “서울특별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을 고려하여 환경결정, 지하공간 등 침수예방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 기존 배수체계 유지하여 배수처리계획 수립
2. 토사재해 : 임시침사지 1개소 및 가배수로 등 설치하여 토사유출 저감
3. 바람재해 : 대상 건축 시설물 등의 내풍 설계 기준 적용

IV.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1. 토지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행정동	지번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종류 및 내용
1	금천구 시흥동	103-3	대	23	23	㈜ 엘와이 디벨롭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94, 1층 101-1호	100%	광명동부 새마을금 고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79-1	근저당설정
2		112-1	대	440	433						
3		112-3	장	628	628				이푸른새 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78-1	근저당설정
4		743-8	대	76	76				-	-	-
5		734-27	대	25	25				-	-	-
합계				1,192	1,185						

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물건의종류	구조	사용 승인 일자	규모			소유자	관계인			관리 지번
	행정동	지번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시흥동	112-3	장	공장 근생	철근콘크리트 조	1996. 12.30	1,466.4	1	4	㈜ 엘와이 디벨롭	이푸른새 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178-1	근저당설 정	
2		112-1	대	근생	철근콘크리트 조	1985. 02.28	969.13	1	4		광명동부 새마을금 고	경기도 광명시 도덕공원로 79-1	근저당설 정	103-3
	계						2,435.53							

3. 토지취득방법 : 사업시행자 100% 확보 후 신탁

4. 존치건축물 및 공작물 처리계획 : 사업부지내 건축물, 공작물 등은 전면 철거 후 신축

V.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구분	위치	규모	비고
청소년이용시설	청년주택 지상 2층	연면적 : 489.46㎡	금천구청에 기부채납

2. 계획기준 및 근거

구분	공공기여 내용	근거 및 기준	비고
청소년이용시설	기부채납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역을 인센티브 운영기준 적용	-

VI.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해당요건에 적합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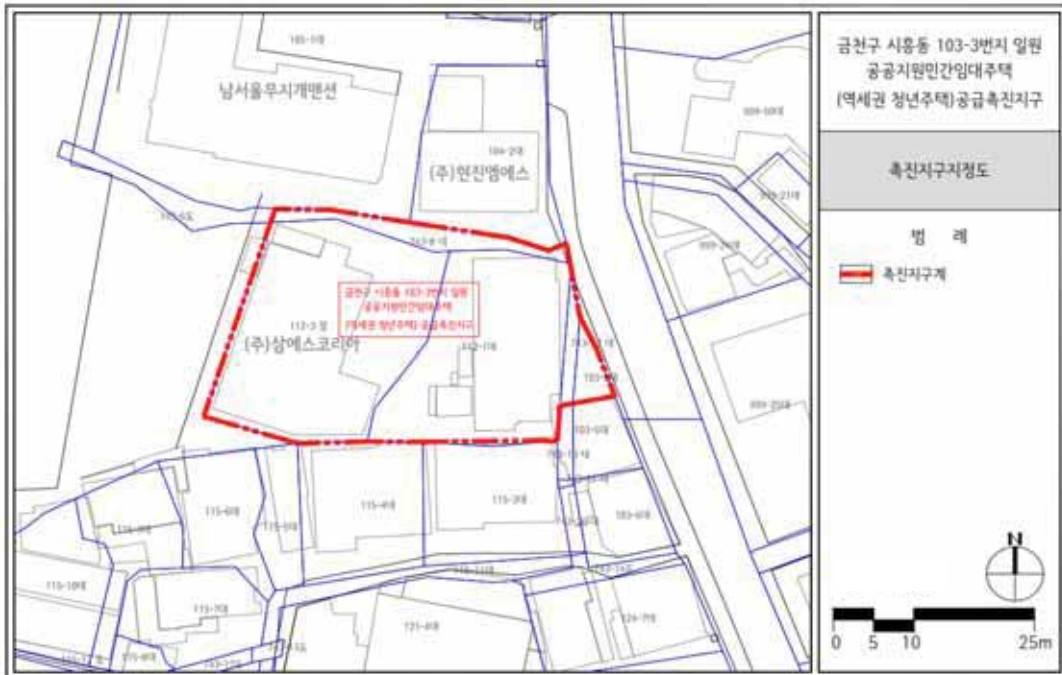
VII.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185.0	100.0	-
주택건설용지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주택용지)	1,185.0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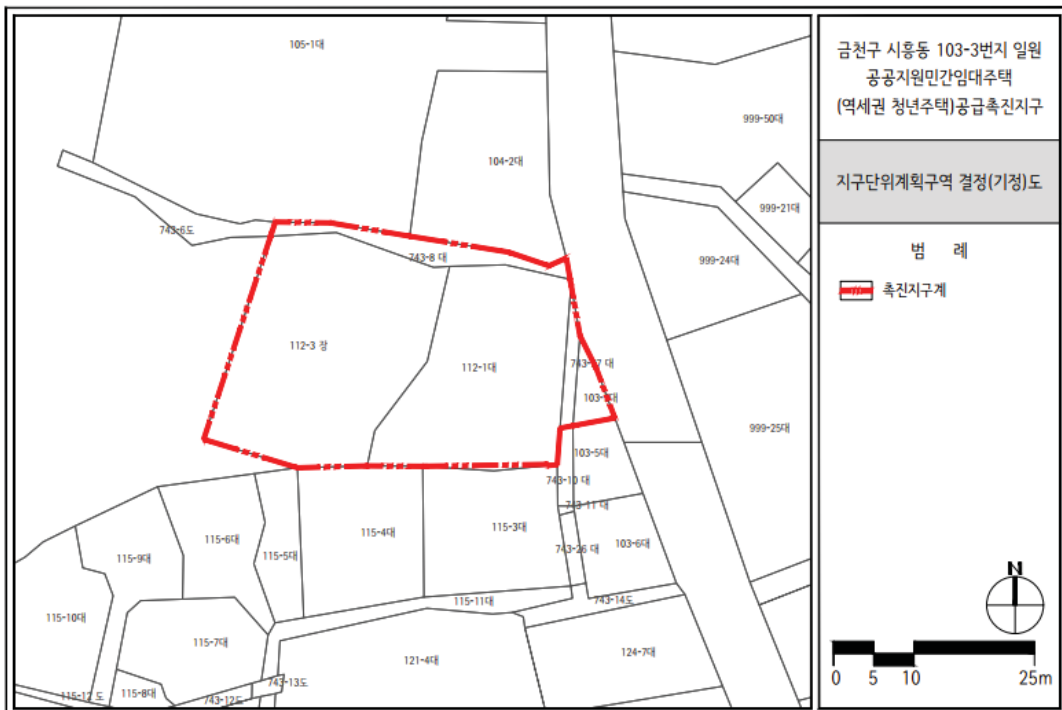
주)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VII.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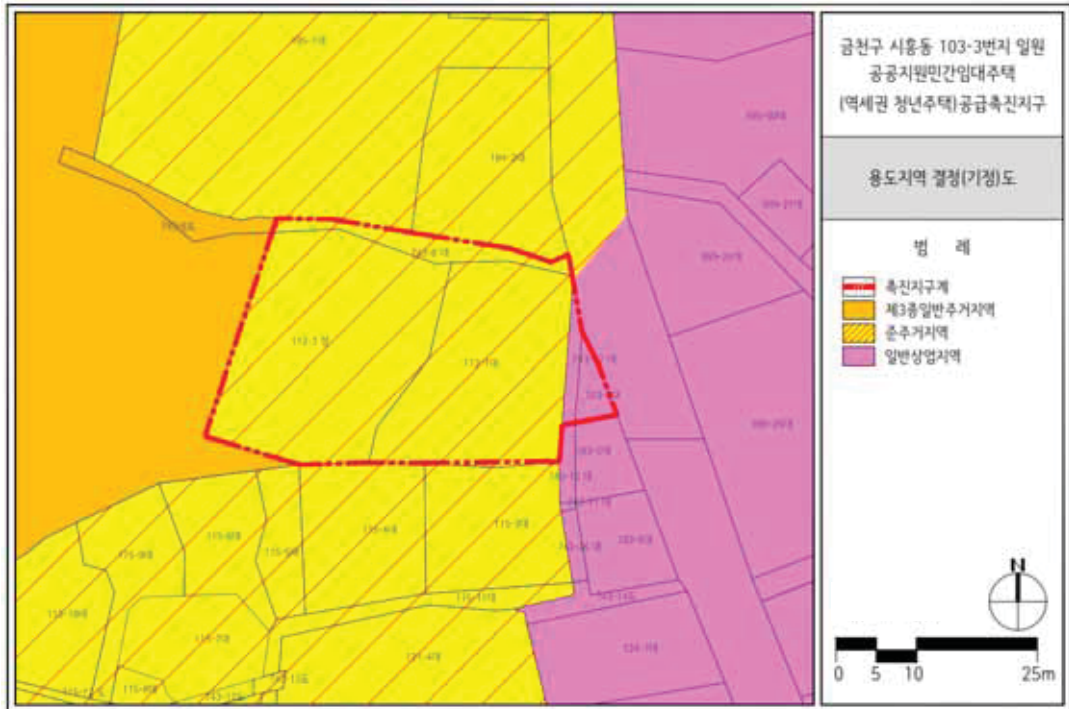
■ 공급촉진지구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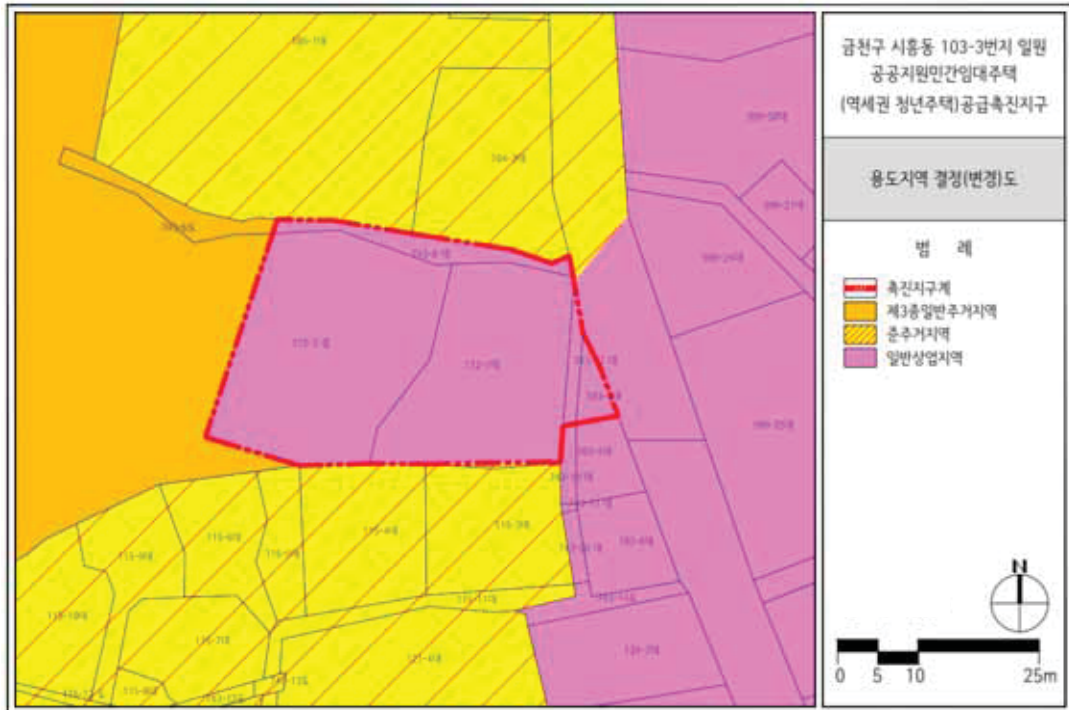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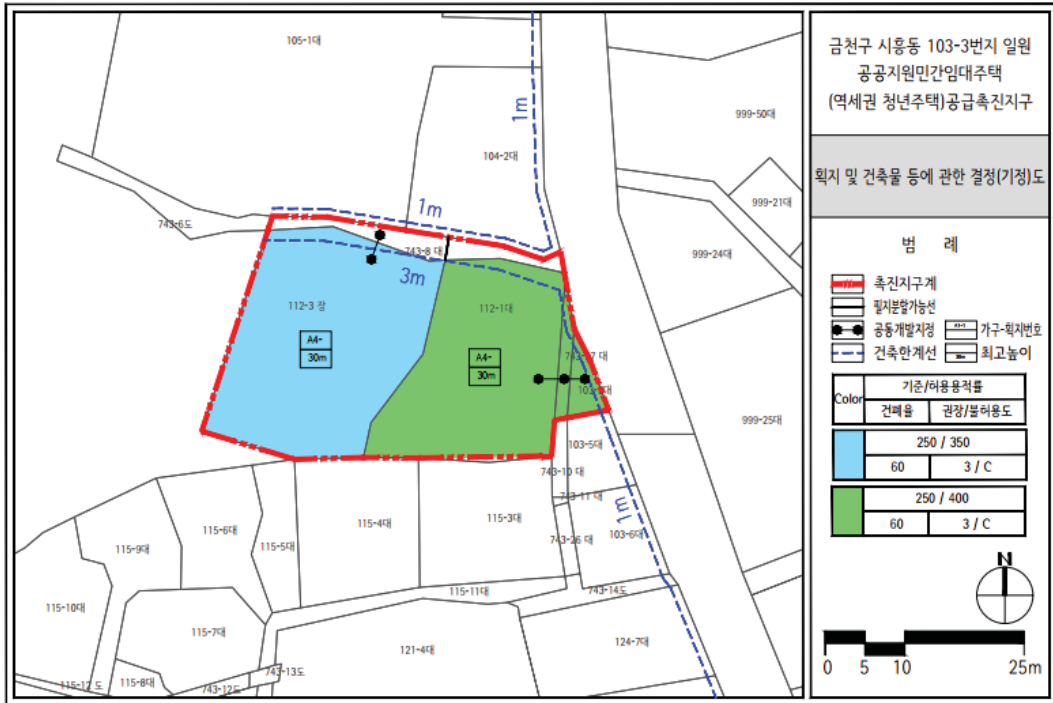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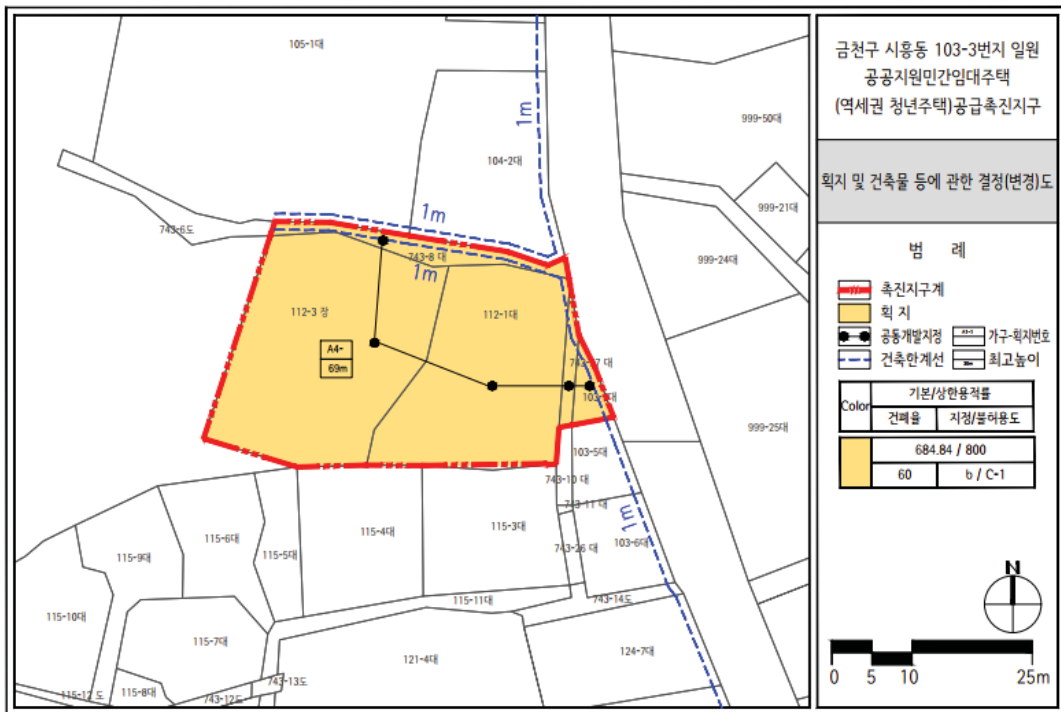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00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일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사업수행능력평가지 부실사항 확대 적용(안전사고→품질사고 포함)
- 품질사고 등 부실업체(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기술인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의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지 부실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추진
- 시행일 :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부과받은 부실벌점 또는 행정처분 요청 건부터 평가에 반영

3.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03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 후 미납차량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분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22. 11. 3.~2022. 11. 17.(14일간)
5. 이의신청 및 납부안내
 - 가. 공영주차장 사용자의 사용료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FAX 02-2290-6444번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이의신청 기간(최초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 다. 공영주차장 사용료 미납 확인 인터넷(<https://etax.seoul.go.kr>) 통하여 납부 가능
6.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에 미납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제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압류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서울시설공단 ☎02-2290-620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0건																
1	20215494	49부9139	BMW X4 xDrive20d	000047339214201 20220825002928	종묘	0006:52	2022-07-01	06:55	2022-07-01	13:47	33,200	33,200	0	김O복	경기도포천시군내 면전구자리2길	폐문부재	2022-11-12
2	20215500	40우8420	예쿠스(EQUUS)	000047339214201 20220825002812	구파발역	0000:24	2022-07-02	09:10	2022-07-02	09:34	800	800	0	세강하이 테크(주)	경기도파주시월송 면엘지로386번길	폐문부재	2022-11-12
3	20215867	21누2760	K7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20825002881	훈민공원	0002:08	2022-07-03	17:04	2022-07-03	19:12	7,100	7,100	0	임O홍	경기도이천시진상 미로1700-29	폐문부재	2022-11-12
4	20215889	34두1970	스파크 1.0 DOHC	000047339214201 20220825002674	신대방역	0005:00	2022-07-04	14:48	2022-07-04	19:48	7,800	7,800	0	이O혜	서울특별시관악구 서림0길10	수취인 불명	2022-11-12
5	20215868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2651	세종로	0009:46	2022-07-04	08:01	2022-07-04	17:47	50,700	50,7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6	20215869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2569	세종로	0003:59	2022-07-05	08:01	2022-07-06	18:00	175,400	175,4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7	20215939	49949843	아이오닉 하이브리드(IONIQ HYBRID)	000047339214201 20220825002552	종묘	0000:39	2022-07-05	15:18	2022-07-05	15:57	1,600	1,600	0	이O환	서울특별시관악구 인현23길	폐문부재	2022-11-12
8	20215656	157나9597	쏘나타(SONATA)	000047339214201 20220825002409	한강진역	0000:59	2022-07-07	14:34	2022-07-07	15:33	4,800	4,800	0	김O영	인천광역시서구청 라커내로163	폐문부재	2022-11-12
9	20215870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2384	세종로	0012:37	2022-07-07	08:03	2022-07-07	20:40	65,300	65,3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10	20215830	69942631	아반떼 (AVANTE)	000047339214201 20220825002300	북정역	0006:57	2022-07-08	11:42	2022-07-08	18:39	7,100	7,100	0	안O열	경기도성남시수정 구성내대로1416번 길	폐문부재	2022-11-12
11	20215897	28스5227	K7 하이브리드	000047339214201 20220825002186	천호역	0006:40	2022-07-10	09:33	2022-07-10	16:13	10,400	10,400	0	박O석	서울특별시강동구 양재대로124길89 -5	폐문부재	2022-11-12
12	20215871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2119	세종로	0009:56	2022-07-11	07:56	2022-07-11	17:52	51,600	51,6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0건																
13	20215872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2010	세종로	0009:48	2022-07-12	08:02	2022-07-12	17:50	50,700	50,7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14	20215873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1919	세종로	0030:53	2022-07-13	08:15	2022-07-14	15:08	159,500	159,5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15	20215904	3652438	스파크 1.0	000047339214201 20220825001864	천호역	0004:56	2022-07-13	19:11	2022-07-14	00:07	7,800	7,800	0	김O례	인천광역시은평구 계림로104	수취인 불명	2022-11-12
16	20215930	4556693	K3	000047339214201 20220825001834	개화역	0012:44	2022-07-13	07:41	2022-07-13	20:25	13,000	13,000	0	엄O정	경기도김포시공무 로41-41	수취인 불명	2022-11-12
17	20215874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1642	세종로	0009:44	2022-07-15	08:07	2022-07-15	17:51	50,300	50,3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18	20215982	319부1028	Mercedes-Benz CLA250 4MATIC	000047339214201 20220825001498	한강진역	0002:48	2022-07-16	13:07	2022-07-16	15:55	13,600	13,600	0	길O진	경기도과천시부림 로	수취인 부재	2022-11-12
19	20216057	0250467	트랜스 1.4	000047339214201 20220825001451	구로디지털 단지역	0008:02	2022-07-16	14:23	2022-07-16	22:25	25,200	25,200	0	김O례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로50길140	폐문부재	2022-11-12
20	20215785	3859021	모닝	000047339214201 20220825001414	신대방역	0007:11	2022-07-18	10:55	2022-07-18	18:06	11,300	11,300	0	박O국	충청남도당진시송 아읍돌모시로738	폐문부재	2022-11-12
21	20215875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1375	세종로	0009:54	2022-07-18	07:54	2022-07-18	17:48	51,100	51,1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22	20215761	154호1355	캐스퍼(CASPER)	000047339214201 20220825001308	사당노외	0001:43	2022-07-19	04:27	2022-07-19	06:10	4,200	4,200	0	(주)그린 카	경기도평택시서정 역로58번길	수취인 불명	2022-11-12
23	20215876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1276	세종로	0000:59	2022-07-19	07:53	2022-07-19	08:52	5,100	5,1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24	20215877	6394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1260	세종로	0028:13	2022-07-19	13:43	2022-07-20	17:56	145,700	145,7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0건																
25	20215831	69다2631	아반떼 (AVANTE)	000047339214201 20220825001223	북정역	0000:06	2022-07-20	20:33	2022-07-20	20:39	100	100	0	안O영	경기도성남시수정 구성남대로1416번 길	폐문부재	2022-11-12
26	20215769	24무1841	싼타페 (SANTAFE)	000047339214201 20220825001124	잠실역	0000:11	2022-07-21	18:26	2022-07-21	18:37	1,200	1,200	0	이O자	인천광역시연수구 함박로67번길4	수차인 불명	2022-11-12
27	20215878	639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1062	세종로	0009:41	2022-07-21	08:06	2022-07-21	17:47	50,300	50,3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28	20215886	26보2962	GL220 CDI 4Matic	000047339214201 20220825001032	하강전역	0001:12	2022-07-21	12:12	2022-07-21	13:24	6,000	6,000	0	박O태	서울특별시마포구 연희로1길	폐문부재	2022-11-12
29	20215774	67주7981	싼타페 (SANTAFE)	000047339214201 20220825000916	종로	0001:25	2022-07-23	11:56	2022-07-23	13:21	6,800	6,800	0	이O미	경기도양주시만인 구안양로332번길	이사불명	2022-11-12
30	20215833	37기4551	레이	000047339214201 20220825000817	북정역	0006:46	2022-07-24	11:08	2022-07-24	17:54	1,500	1,500	0	장O영	서울특별시송파구 위례송파로89	폐문부재	2022-11-12
31	20215864	397무5439	트레일블레이저 1.5S TURBO AWD	000047339214201 20220825000792	동대문	0001:42	2022-07-24	11:04	2022-07-24	12:46	3,700	3,700	0	황O석	경기도남양주시화 도읍간곡로19번길 4-2	폐문부재	2022-11-12
32	20215784	11기1149	SM6	000047339214201 20220825000748	세종로	0011:05	2022-07-25	19:57	2022-07-26	07:02	57,100	57,100	0	박O빈	서울특별시송파구 위례성대로10길31 -1	폐문부재	2022-11-12
33	20215879	639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0725	세종로	0012:01	2022-07-25	08:03	2022-07-25	20:04	62,300	62,3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34	20215880	6394349	익스플로러	000047339214201 20220825000633	세종로	0028:40	2022-07-26	07:55	2022-07-27	10:35	137,600	137,600	0	안O화	서울특별시은평구 동일로660	폐문부재	2022-11-12
35	20215817	277로8349	렉서스 ES300h	000047339214201 20220825000465	수서역	0001:02	2022-07-28	17:24	2022-07-28	18:26	2,000	2,000	0	이O정	서울특별시노원구 마들로127	폐문부재	2022-11-12
36	20215798	16고7900	모하비	000047339214201 20220825000342	종로	0001:38	2022-07-30	13:31	2022-07-30	15:09	8,000	8,000	0	김O호	경기도수원시권선 구금곡로46	폐문부재	2022-11-12

연번	고지번호	차량번호	차종	납세번호	주차장	주차시간	입차일자	입차시각	출차일자	출차시각	부과금액	주차요금	가산금	납부자	주소	반송사유	납부기한
	40건																
37	20216041	23토4235	K3	000047339214201 20220825000237	도봉선역	0005:30	2022-07-30	15:34	2022-07-30	21:04	11,200	11,200	0	정O국	경기도의정부시진 등로10번길19-13	폐문부재	2022-11-12
38	20215799	398보4354	BMW 320d xDrive Gran Turismo RDE2	000047339214201 20220825000220	세종로	0000:17	2022-07-31	11:49	2022-07-31	12:06	1,700	1,700	0	김O우	서울특별시영등포 구국회대로36길13	폐문부재	2022-11-12
39	20215800	51토574	그랜저(GRANDEU R)	000047339214201 20220825000213	훈민원공원	0017:02	2022-07-31	03:46	2022-07-31	20:48	112,700	112,700	0	유O호	서울특별시상봉구 보문로29다길25- 9	폐문부재	2022-11-12
40	20215919	12토9976	벨로스터(VELOST ER)	000047339214201 20220825000151	천호역	0002:10	2022-07-31	16:04	2022-07-31	18:14	6,700	6,700	0	이O성	서울특별시강동구 천호역12길	폐문부재	2022-11-1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08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 건 명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법적근거

가. 변 상 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나. 공시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대상자	공시송달 내용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반송사유
김○호 (61년생)	시유재산 변상금 (2017~2021년) 독촉공문	- 무단점유재산 :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17.02.04.~2021.10.27. - 점유면적 : 26㎡ - 독촉 내역 : 총액 32,559,870원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4-*** **호	폐문부재

※ 공시송달기간 : 2022.11.3.~ 2022.11.17.

※ 공시송달자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09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처분대상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4개 업체(명단 별첨)
2. 예정된 행정처분 내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등록기준 미달
 -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4. 처분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7일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3층 물류정책과
 - 담 당 자 : 김형남(02-2133-4096)
6. 유의사항
 - 서면(별지 제11호 서식),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서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 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건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 .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산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업체

－ 행정처분 : 국제물류주산업 등록취소 －

연번	등록번호	업체명	법인주소	예정처분
1	5063	㈜대송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51, 3층	등록취소
2	4630	㈜블루파이로지스틱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14길 11-1, 3층	등록취소
3	3618	주식회사 위스코앤지비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 803호	등록취소
4	2404	티제이엘로지스틱(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17길 8 (신월동) 1층	등록취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1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

연번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1	203713	22.10.26.	주식회사 대건일렉트릭 최미령 110111-391752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505호(가산동, 대림테크노타운8차)
2	203714	22.10.27.	주식회사 에스피엔텍 오경균 110111-610949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1가길 9, 1층(원효로3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19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기부금품 모집등록

연번 모집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대표자					사용기간
2022-123	사단법인 유나인체인지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71, 707	○ 국내의 저소득 아동 의료 및 교육 지원 사업	8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10.28. ~ 2023.10.27.
	이정환					2022.10.28. ~ 2024.10.27.
2022-124	재단법인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5길 9-14	○ 소아암 및 이에 준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지원	960 (현금)	전국	2022.11.1. ~ 2023.10.31.
	오연천					2022.11.1. ~ 2024.10.31.
2022-125	사단법인 동물구조119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149 2층	○ 동물구조 및 입양, 동물 보호 및 치료 관리, 동물 보호 캠페인	90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10.27. ~ 2023.10.26.
	임영기					2022.10.27. ~ 2024.10.26.
2022-126	아시아 태평양음악 창작자연맹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32, 4층	○ 국내외 음악 창작자 및 단체 지원	990 (현금 및 물품)	전국	2022.10.27. ~ 2023.10.23.
	윤명선					2022.10.27. ~ 2024.10.23.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협력과(☎02-2133-63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0호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제도개요

○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아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상

○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원업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 인정공표 대상 : 총 27개소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	휴게음식점	한솔 종로관철동점	허준	종로구 종로12길 10	종로
2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대한상공회의소R점	송 데이비드 호섭	중구 세종대로39	중부
3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이촌점	송 데이비드 호섭	용산구 이촌로 276	용산
4	가성체육시설업	충호스크린골프장	김춘식	동대문구 양산로9길 8	동대문
5	휴게음식점	이디야 도림사거리	박춘미	영등포구 도림로 326	영등포
6	일반음식점	매드포갈릭 현대미아점	윤나라	성북구 동소문로 315	성북
7	가성체육시설업	베로니스 골프존	박소원	은평구 증산로 315	은평
8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연신내역 사거리점	송 데이비드 호섭	은평구 통일로 842	은평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9	휴게음식점	이디야커피 랩	문창기	강남구 논현로 636	강남
10	목욕장업	오라카이 청계산호텔사우나	금보개발(주)	서초구 청계산로9길 1-7	서초
11	일반음식점	어여쁜 한우	김혜정	서초구 사평대로20길 29	서초
12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마곡사이언스타워점	송 데이비드 호섭	강서구 마곡동로 62	강서
13	일반음식점	신익주 순대와 찰국미	박일찬	강동구 천호대로 1089	강동
14	일반음식점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천호점	(유)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강동구 올림픽로 660	강동
15	일반음식점	배꼽집	류나영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7	마포
16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창동이마트점	송 데이비드 호섭	도봉구 노해로65길 4	도봉
17	고시원	대학교시텔	최봉은	구로구 인양천로537가길 42	구로
18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노원수락산역	김진환	노원구 동일로 1660	노원
19	일반음식점	스카이 가든	박진형	송파구 석촌호수로 216	송파
20	고시원	드림하우스	김숙희	송파구 오금로15길 9	송파
21	고시원	목동골드빌	박치권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33	양천
22	일반음식점	삿뽕로 목동점(주)엔타스	김미애	양천구 목동동로 189	양천
23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감자PC방	송혜경	중랑구 중랑역로 62	중랑
24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남성역점	송 데이비드 호섭	동작구 사당로 219	동작
25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강북구청사거리점	송 데이비드 호섭	강북구 도봉로 365	강북
26	일반음식점	천미향	성태석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	성동
27	휴게음식점	이디야커피 가산오거리점	김민선	금천구 가산로 155	금천

3. 공표일 : 2022. 11. 9.(수)

4. 인정기간 : 2022. 11. 9. ~ 2024. 11. 8.(2년 간)

5. 문의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22)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25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지정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8조(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지정문화재의 지정절차) 제4항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계획
가. 문화재 지정 개요

지정 예정 종별	지정 예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 연대	소재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국사봉 사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國師峰 獅子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1구	상 높이 104, 무릎 높이 77.5	17세기 전반	동작구 (대한불교조계종 사자암)
	마포 석불사 신중도 (麻浦 石佛寺 神衆圖)	1점	전체: 세로130.6×가로143.2 화면: 세로123.4×가로134.7	1900년	마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 (麻浦 石佛寺 阿彌陀佛會圖)	1점	전체: 113×188 화면: 106.5×180.5	1900년	마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 (麻浦 石佛寺 熾盛光如來會圖)	1점	전체: 121.6×181.4	1914년	마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마포 석불사 독성도 (麻浦 石佛寺 獨聖圖)	1점	전체: 96.5×83.7	1919년	마포구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나. 예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예고함.

■ 유형문화재

【국사봉 사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國師峰 獅子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지정 신청 대상은 동작구 삼성산의 국사봉 사자암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다. 불상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성기를 비롯한 복장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상 높이가 104cm 크기에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목조여래좌상이다. 사자암 목조여래좌상은 현진과 조각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현진은 자신과 그 제자를 포함하여 서로 연관을 가진 조각승들이 50여명에 달한다. 17세기 초반부터 중엽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이다. 17세기 초반부터 법주사, 관룡사, 무량사, 동화사, 화엄사, 쌍계사, 송광사 등의 사찰에 그의 작품이 남아있으며, 넓적하고 평평한 얼굴과 독특한 옷주름이 특징이다.

사자암 목조여래좌상의 언제, 어디서 조성되었으며, 어디서 이곳 사자암으로 옮겨왔는지 그 내력을 알려주는 복장 발원문이나 관련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사자암의 목조여래좌상은 관련 문자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7세기 전반 현진파의 조각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포 석불사 신중도(麻浦 石佛寺 神衆圖)】

<마포 석불사 신중도>는 액자형 불화로 설법전 측면에 봉안되어 있다. 가로로 넓은 화면에 전체 크기 세로 130.5, 가로 143.2cm, 화면 세로 123.4, 가로 134.7cm 크기로 1900년 제작한 면 바탕 채색불화이다. 화면 중앙에 과장된 날개장식을 한 위태천과 상단에 앞을 바라보는 보관을 쓴 제석·범천이 모란꽃과 연꽃을 들고 상반신만 표현된 형식으로 삼존이 역삼각형으로 배치한 구도이다.

<마포 석불사 신중도>(1900년)는 위태천과 제석·범천이 역삼각형을 이루면서 간략화되는 구도와 위태천의 협시로 조왕신·산신이 등장하는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의 신중도의 발전 양상이 잘 드러난 불화이다. 제작화승 보암 공법(普菴肯法)과 범화 윤익(梵華潤益)은 서울·경기지역의 근대기 불화 제작에 많은 영향을 준 화승으로 그들의 초기 화풍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화기를 통해서 제작 시기와 장소, 봉안처, 화승들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며 근대기로 전환기의 신중도의 간략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麻浦 石佛寺 阿彌陀佛會圖)】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는 현재 석불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중앙에는 아미타불상과 좌우 협시로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하고 본존상의 좌우측 상단에는 미륵보살상과 지장보살상, 가섭존자상과 아난존자상을 포함한 4위의 제자상, 화면 좌우측 상·하단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있어 권속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본존상을 감싸고 있는 구성이다.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900년(大韓光武四年)의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수화승인 ‘공법’은 19세기 후반기~20세기 전반기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화승으로 그의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뛰어난 불화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포 석불사 칠성광여래회도(麻浦 石佛寺 熾盛光如來會圖)】

<마포 석불사 칠성광여래회도>는 20세기 전반 활동했던 춘담 범천이 그린 불화이다. 범천은 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화승으로 1901년 수화승 보암당공법과 <남양주 불암사 독성도>, 1907년 <남양주 불암사 신중도>를 제작하는 등 공법의 문하에서 활동하였다.

이 불화는 공법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미타사 칠성각 칠성광여래도’를 모본으로 하여 보성과 필성을 제외하고, 수성과 자미대제를 좌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칠여래의 좌우 배치 바꾸고, 남두육성을 표현하는 등 미타사본 칠성도를 계승, 변형시킨 것이다.

석불사 칠성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진관사 칠성각 칠성도’와 유사한 수준의 작품성을 지니고 있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 문화재자료
【마포 석불사 독성도(麻浦 石佛寺 獨聖圖)】

<마포 석불사 독성도>는 석불사 삼성각에 칠성도·산신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 불화는 조선 말기 계룡산화파를 주도하였던 금호당 약효와 그의 제자인 성협이 작품이다. 약효의 말년 작으로 솜이 풀어 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보존이 양호하다. 애초에 독성의 붉은 도포 외에는 진채를 쓰지 않아 담채풍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며, 독성의 인물표현은 전통적인 독성의 형상이라는 보다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보이는 모습에서 현실적인 노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비록 1919년 근대기에 제작된 불화이지만 마포 석불사가 한강을 진호(鎭護)하고 상인과 선원들의 무사 항해와 상업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되었던 옛 미타암을 중창한 절임을 알려주는 역사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 ① 전화 : (02) 2133-2632
 -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지정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국사봉 사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國師峰 獅子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국사봉 사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國師峰 獅子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수 량	1구	규 격	상 높이 104cm, 무릎 너비 77.5cm
재 료	나무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국사봉 사자암
시 대	17세기 전반	소재지	

조사 내용**1. 문화재 현황**

- 동작구 삼성산의 국사봉 사자암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여래좌상이다. 국사봉 사자암은 관악산 줄기인 삼성산 국사봉 아래에 있는 사찰로, 1396년(태조 5) 무학대사 자초(自超, 1327-1405)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자암이 있는 삼성산과 인근의 호암산(虎岩山)은 산이 호랑이 모양새라 풍수상 조선의 수도 한성에 좋지 않다고 여겨 그 기세를 막기 위해 무학대사가 사자 형상을 띤 국사봉 아래에 사자암(獅子庵)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사찰이다.
- 바로 이곳 사자암에 봉안되어 있는 목조여래좌상은 아쉽게도 불상의 조성 시기를 알 수 있는 조성기를 비롯한 복장물이 남아있지 않지만, 상 높이 104cm 크기에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한 목조여래좌상이다.

2. 내용과 특징

- 동작구 국사봉 사자암에 봉안되어 있는 이 목조여래좌상은 17세기 전반에 활약하였던 현진(玄眞, 17세기 전-중반 활동) 혹은 그 계파의 작품이라고 추정된다. 현진파 작품은 턱이 넓고 각진 넓적한 얼굴에 순박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육계는 매우 커서 머리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눈의 표현이 특징적인데, 수평으로 조각된 눈이 가늘고 길며, 눈두덩이 부분이 굴곡이 없이 편편하다. 두터운 대의(大衣)의 옷 주름에는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오른쪽 어깨와 가슴을 가린 가사 자락이 아래로 늘어져 배 중앙의 대의 안으로 넣은 모양, 둘째, 양쪽 목깃이 반전되었고, 가슴의 승각기가 꽃 모양을 이뤘으며 위아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점, 셋째, 대의를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를 걸쳐 오른팔 아래로 흘러내리듯 표현한 점 등은 현진파 조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

	라 어깨가 넓고 당당하며, 얼굴은 약간 긴 직사각형이고, 폭이 넓고 각진 턱을 갖고 있으며,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 표현, 양 귀는 폭이 좁고 길며, 삼각와(三角窩)가 짧은 음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역시 현진 혹은 현진파가 제작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현진의 작품은 1612년 함양 상륜대 관음보살상과 1614년 구례 천은사 관음·세지보살상, 1622년 서울 지장암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서울 칠보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역시 1622년에 제작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26년 보은 법주사 삼신불상 등 많은 작품이 남아있다.
조사 결과	3.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신청 가능 여부 : 가 - 사자암 목조여래좌상은 현진파 조각의 특징을 잘 갖추었다. 현진은 자신과 그 제자를 포함하여 서로 연관을 가진 조각승들이 50여명에 달한다. 17세기 초반부터 중엽까지 활발한 활동을 했던 조각승이다. 17세기 초반부터 법주사, 관룡사, 무량사, 동화사, 화엄사, 쌍계사, 송광사 등의 사찰에 그의 작품이 남아있으며, 넓적하고 평평한 얼굴과 독특한 옷주름이 특징이다. - 사자암 목조여래좌상의 언제, 어디서 조성되었으며, 어디서 이곳 사자암으로 옮겨왔는지 그 내력을 알려주는 복장 발원문이나 관련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사자암의 목조여래좌상은 관련 문자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17세기 전반 현진파의 조각적 특징을 잘 갖추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도1)



(도2)



(도3)



(도4)



(도5)



(도6)



(도7)



(도8)

【마포 석불사 신중도(麻浦 石佛寺 神衆圖)】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마포 석불사 신중도 (麻浦 石佛寺 神衆圖)
수 량	1점	규 격	전체; 세로 130.6cm×가로 143.2cm 화면; 세로 123.4cm×가로 134.7cm
재 료	면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시 대	1900년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석불사 신중도>는 액자형 불화로 설법전 측면에 봉안되어 있다. 가로로 넓은 화면에 전체 크기 세로 130.5×가로 143.2cm, 화면 세로 123.4×가로 134.7cm 크기로 1900년 제작한 면 바탕 채색불화이다. 화면 중앙에 과장된 날개장식을 한 위태천과 상단에 앞을 바라보는 보관을 쓴 제석·범천이 모란꽃과 연꽃을 들고 상반신만 표현된 형식으로 삼존이 역삼각형으로 배치한 구도이다. 그 좌우로 각각 대칭으로 팔부신중 및 천부 권속이 구름을 배경으로 배치되었다. 제작화승은 금어 보암 공법, 편수 범화 윤익, 재검, 계은이 동참하였다. 붉은색을 중심 색으로 녹색과 군청색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금박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그림 뒤 배접면의 정중앙에 가로 22.8cm, 세로 35cm크기의 복장이 배접 안으로 부착된 상태이며, 배접지에 붉은색으로 적은 음자진언을 표기하였다. 2. 원형유지정도 지하 공간인 설법전에 봉안되어 습도에 취약하여 화면 전체에 곰팡이가 피었다. 하단 화기부분을 비롯하여 변색 및 찢는 얼룩이 있으며, 뒷면 배접지에 찢어진 부분이 있다. 화면 앞면의 찢어짐이나 박락이 심하지는 않지만, 습해로 인해 화기가 일부 파락되지 않는 등 피해가 있다. 뒷부분의 배접상태는 훼손이 심하다. 그러나 제작 당시의 봉안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3. 내용 및 특징 화면 중앙에 투구를 쓴 위태천(韋駄天)이 오른쪽을 향해 몸을 약간 비튼 채 삼지창을 잡고 서 있으며, 그 위로 범천·제석천(梵天·帝釋天)이 녹색 두광과 주홍색 신광을 배경으로 붉은색 옷을 입고 손에 각각 연꽃과 모란꽃을 잡고 정면을 바라보며 서 있다. 이 신중도는 위태천을 중심으로 범천과 제석천의 삼존을 중심		

으로 화면 중앙에서 역삼각형으로 배치하고 배경없이 권속을 가득 채운 구도이다. 위태천의 양 옆으로 두건을 쓰고 손에 경책을 든 조왕신과 상투를 틀어 관을 쓴 산신이 오른손에 백우선을 들고 왼손에 불로초가 든 바구니를 든 채 각각 위태천을 향해 서 있다. 제석·범천 양옆으로 일궁·월궁천자(日宮月宮天子)가 각각 홀을 들고 있고, 선과를 든 동자 2위가 화면 상단에 협시한 모습이다. 화면 하단 위아래로 팔부중 가운데 4위만을 표현하여 19세기 간략한 근대기 신중도 형식을 보여 준다. 제작 화승인 보암 공법과 범화 윤익은 함께 많은 불화를 작업한 화승으로 강원도 월정사 사자암에서 <월정사 중대 석가여래회도>(1894년)와 <향각 신중도>를 처음 수화승으로 각각 제작한 이후 서울지역에서 종남산 미타사 칠성각 <아미타여래회도>(1897년)을 수화승으로 제작하였다. 그들은 19세기 후반 이후 서울·경기지역에서 근대기 불화 제작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작품은 그들의 초기 화풍 파악에 중요한 불화이다.

화기 : 大韓光武四年庚子五月二十「八日新供六月日點眼奉」安于終南山彌寺藥師殿「緣化秩」證明舍影法曇「雲坡道念」大雲龍澤「誦呪比丘富庚」金魚普庵巨法「片手梵化允益」比丘在謙「比丘啓恩」茶角沙彌法能「供司比丘尼戒憲」別供沙彌尼善花「沙彌尼昌仁」沙彌尼興南「化主比丘尼應合」淸信女己酉生文氏「淸信女癸丑生朴氏」施主」

산신과 조왕신이 위태천의 좌우 협시로 등장하는 형식은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유행한 신중도 도상의 한 유형이다. 이 도상은 조선 후기 화보의 영향으로 경선 응석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서울 보문사 신중도>(1867년, 그림 1)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이러한 도상을 보음 공법은 적극 도입하여 시대 양식에 충실한 화풍을 보여 준다.



그림1. 보문사 신중도, 1867년, 비단 채색, 139.1cm×191.2cm, 서울 성북구 보문사.

<석불사 신중도>는 석불사 창건 시기에 조성되어 사찰 안에서 전해져 온 불화라고 전하지만, 화기에는 대한광무 4년에 종남산 미사(彌寺) 약사전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해 조성된 <석불사 아미타회상도> 역시 화기에서 봉안처가 종남산 미타사(終南山 彌陀寺) 약사전이고, 금어와 편수가 같은 인물인 것이 확인되므로, 신중도 역시 ‘종남산 미타사’로 추정할 수 있다. 즉, 두 불화의 증명비구를 비롯하여 화기 표기방법 등이 모두 같으므로 같이 조성되어 종남산 미타사에 봉안되었던 불화임을 알 수 있는데, 종남산 미타사는 오늘날 같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미타사로 미타사의 중창불사를 기록한 「양주종남산미타사중건점단확기」에도 종남산 미타사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같은 사찰이다. 현재 성동구 미타사에는 1887년에 제작된 감로도, 칠성도와 1899년에 미타사 칠성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신중도와 현왕도 등이 있는데 같은 화승이 제작하였다. 특히,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1900년, 그림 2)는 보암 공법과 범화 윤익이 제작한 불화로 위태천 옆에 조왕신과 산신을 배치한 구도로 <석불사 신중도>와 같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같은 화승에 의해 제작되었어도 산신과 조왕신이 들고 있는 지물이나 위치가 다르며, 위태천의 투구 형태, 제석·범천의 모습, 권속의 수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동일한 사찰인 미타사의 무량수전과 약사전에 봉안하기 위해서 제작하면서 도상에서 약간씩 구성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 1900년, 면 채색, 164cm×156cm, 성동구 미타사 금수암.

	불화의 중심 색은 붉은색을 주조 색으로 녹색과 군청색, 금박을 사용했지만, 현재 색의 탈색이 심하다. 지물과 복식 장식에 금박을 사용하여 꾸몄고, 비록 보관이 잘못되어 색바래미 심하지만, 전체적인 구도와 필선 등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채색은 산신·조왕신, 그리고 팔부중의 얼굴 묘사에서 음영을 강하게 넣어 입체효과를 주었는데 이것은 같은 시기에 그려진 <미타사 금수암 신중도>(1900년)의 평평한 채색에 비해서 훨씬 입체감이 강하다. <참고문헌> 신광희, 「조선 말기 화승 경선당 응석 연구」, 『불교미술사학』 4, 2006. 김현중, 「19세기 경기지역 신중도 연구」, 『동악미술사학』 17, 2015.
조사 결과	4. 지정 여부 : 가 <석불사 신중도>(1900년)는 위태천과 제석·범천이 역삼각형을 이루면서 간략화되는 구도와 위태천의 협시로 조왕신·산신이 등장하는 19세기 서울·경기지역의 신중도의 발전 양상이 잘 드러난 불화이다. 제작화승 보암 공법(普菴肯法)과 범화 윤익(梵華潤益)은 서울·경기지역의 근대기 불화 제작에 많은 영향을 준 화승으로 그들의 초기 화풍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화기를 통해서 제작 시기와 장소, 봉안처, 화승들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며 근대기로 전환기의 신중도의 간략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동구 옥수동 미타사 약사전에 봉안되었던 <석불사 신중도>가 이전된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같은 비구니 사찰이라는 점과 1900년경에 새롭게 창건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미타사에 있던 비구니 스님이 석불사로 옮겨오면서 불화 역시 이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정 이전에 소유권에 관한 협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마포 석불사 신중도, 1900년, 면 채색. 석불사 설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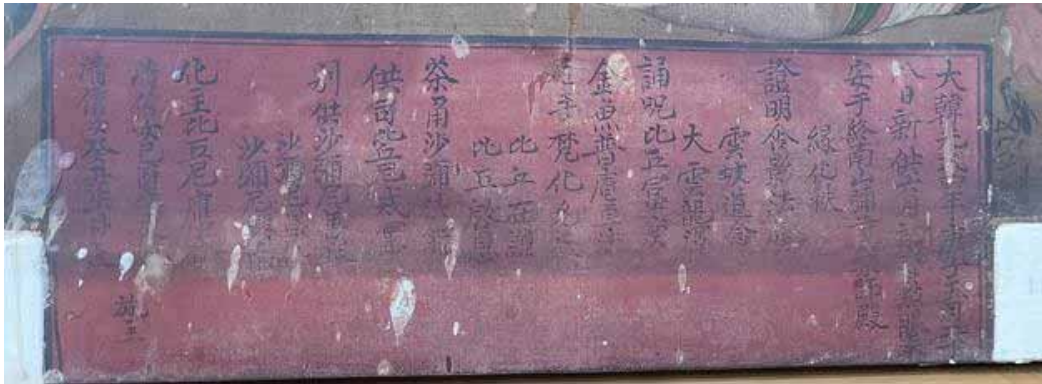


산신 · 위태천 · 조왕신 부분

화면 뒷부분 배접지 현황



화기 부분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麻浦 石佛寺 阿彌陀佛會圖)】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 (麻浦 石佛寺 阿彌陀佛會圖)
수 량	1점	규 격	전체: 113.0×188.0cm 화면: 106.5×180.5cm
재 료	면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시 대	1900년(大韓光武四年)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도1)는 현재 석불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면바탕에 조성된 불화의 전체 크기는 세로 113.0×가로 188.0cm, 화면크기는 세로 106.5×가로 180.5cm로 패널 형식으로 되어있다. 35.5cm(향 좌측)+103.5cm(중앙)+41.5cm(향 우측)폭의 면사 3폭을 가로로 잇대어 만들어 가로 폭이 넓어진 장방형의 화면이다. 중앙에는 아미타불상과 좌우 협시로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을 배치하고 본존상의 좌우측 상단에는 미륵보살상과 지장보살상, 가섭존자상과 아난존자상을 포함한 4위의 제자상, 화면 좌우측 상·하단에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어 권속들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본존상을 감싸고 있는 구성이다.
	2. 원형유지정도 화면 전반에 걸쳐 채색층에서 부분적으로 균열과 박락이 관찰되며 무엇인가에 긁힌 자국으로 물리적인 손상이 있다. 그리고 오염으로 인해 특히 피부색이 흙갈색 빛으로 변색이 보이지만 찢어지거나 도상을 크게 손실시킨 훼손은 없어 비교적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내용 및 특징 화면 중앙부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아미타불상은 둥근 머리광배와 몸 광배를 구비한 채 蓮花座 위에 結跏趺坐하고 앉아, 왼손은 복부부분에 두고 오른손은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어 阿彌陀九品印 중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턱이 둥글어진 얼굴에는 눈·코·입의 표현이 뚜렷하고 단정하나 눈 꼬리를 위로 치켜 올리고 입을 작게 표현하여 약간 근엄한 느낌이다. 머리와 육계 사이의 반원형 중앙계주는 큼지막하며 높이 솟은 육계 위에는 구형의 정상계주를 표현하였다. (도4) 붉은색 大衣의 경우 끝단에는 채색의 연화당초무늬를 장식하였으며, 몸통에는

금직한 원형을 구획하고 그 안에 연화문과 파도문을 함께 금니로 표현하여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도9)

본존상 좌우에 있는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은 마치 의자에 편안히 앉아 있듯이 두 다리를 연화대좌 위에 두고 본존상을 향해 앉아 있다. (도5, 도6)

이렇게 협시보살상이 의자좌의 자세로 앉아있는 경우는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에 서울·경기지역의 불화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양식특징으로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하고 있다. (도2, 도3)

노비구 형태의 가섭존자상과 청년 비구 형태의 아난존자상은 본존상을 향해 좌우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옆에 표현된 2위의 제자상은 나선형으로 그려 마치 불상의 나발을 묘사하듯이 곱슬거리는 머리카락과 계주를 그리듯이 두상 부분을 표현하여 무척 독특해 보인다. (도7, 도8)

지장보살상은 왼손에 보주를 들고 오른손은 육환장을 잡고 있는데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상호의 표현으로 귀여운 모습의 동자상을 연상케 한다. 지장보살상과 대칭되어 표현된 보살상은 미륵보살상으로 볼 수 있는데 본존상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고 있다. (도7, 도8)

화면 좌우 측면으로 배치된 사천왕상들은 매우 생동감이 느껴진다. 하단부분의 지국천왕상(동)과 증장천왕상(남)은 나무 탁자에 걸터앉아서 화면 바깥으로 시선을 두고 있으며 상단의 광목천왕상(서)과 다문천왕상(북)은 화면 안쪽으로 본존상을 향해 시선을 두고 있어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도7, 도8, 도10)

전체적인 화면의 색조는 다홍빛의 붉은색과 짙은 녹색과 밝은 청색 등으로 19세기 후반 ~ 20세기 초반에 많이 쓰인 일반적인 색상이다. 지물과 보관 장식 등에 부분적으로 표현된 금니기법과 고분을 만들어 금박을 올린 고분기법은 과도하지 않아 화려하면서 기품이 느껴진다.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의 畵記는 화면 하단 좌측, 우측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墨書되어 있다. 화기 내용 중의 “大韓光武四年庚子五月二十八日 神供六月初八日 點眼奉安終南山彌陀寺藥師殿… 金魚普庵肯法 片手梵華潤益 比丘在謙 比丘啓恩…” 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광무 4년인 1900년 5월 28일에 조성하고 6월 초8일에 점안의식을 하여 종남산 미타사 약사전에 봉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11, 도12) 미타사 약사전에 모셨던 불화가 어떠한 이유로 석불사로 이안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수화승은 보암당 ‘금법’ 이며 편수는 범화당 ‘윤익’ 이고 비구 재검과 계은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보암금법’ 과 ‘범화윤익’ 은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들 가운데 매우 왕성하게 활약상을 보인 대표적 화승이다. ‘보암금법’ 은 인천 전등사 약사전 <현왕도>(1884년), 남양주 홍국사 <약사불도>와 <석가불도>(1892년), 남양주 불암사 대웅전 <아미타불도>(1897년), 서울 봉원사 대웅전 <구락구품도>(1905년), 서울 호국지장사(화장사) <약사불도>(1906년), 서울 수국사 <아미타불도>(1907년) 등의 불화를 조성한 승려로 정확한 생몰년 및 생애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에 남양주 홍국사에 거주하면서 서울·경기 지역 사찰의 많은 불화를 조성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평창 월정사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157호, 1894년) 불상의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 기록을 통해 공법, 축연(竺衍), 윤익, 창조(昌照), 성민(性敏), 운조(雲照) 등 6명의 승장(僧匠)이 사자암에 봉안하기 위해 개금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불화뿐만 아니라 불상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방면으로 솜씨를 발휘한 뛰어난 화승임을 확인할 수 있다.

〔書記〕

〔좌측 ; 向右〕

大韓光武四年庚」

子五月二十八日神」

供六月初八日點」

眼奉安終南山」

彌陀寺藥師殿」

緣化所」

證明舍影法曇」

雲坡道念」

誦呪比丘富庚」

金魚普庵肯法」

片手梵華潤益」

比丘在謙」

比丘啓恩」

奉茶沙彌法能」

供司比丘尼戒憲」

化主比丘尼應合」

〔우측 ; 向左〕

施主秩」

清信女己酉生文氏」

清信女癸丑生朴氏清淨花」

比丘尼奉積」

比丘尼戒憲」

清信女己巳生趙氏」

清信士丙申生景氏」

清信女丁酉生李氏」

乾命壬寅生張健植」

	坤命癸酉生李氏」 童子戊戌生張壽」 清信女己巳生崔氏信城花」
조사 결과	4. 지정 여부 : 가 이상에서 살펴 본 마포 석불사 <아미타불회도>는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만 아니라 화기가 잘 남아 있어 1900년(大韓光武四年)의 조성시기와 동참 화승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수화승인 ‘금법’은 19세기 후반기 ~ 20세기 전반기까지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한 화승으로 그의 예술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뛰어난 불화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이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도1, 석불사 아미타불회도, 1900년, 면본채색,
113.0×188.0cm (화승: 肯法, 潤益 등)



도2, 남양주 흥국사 치성광여래도, 1868년,
견본채색, 191.3×225.3cm (화승: 永煥, 允鑑 등)



도3, 안성 운수암 아미타후불도, 1873년, 견본채색,
158×229.5cm (화승: 等森, 永煥 등)



도4, 본존불상 부분도



도5, 관세음보살상 부분도



도6, 대세지보살상 부분도



도7, 화면 향 좌측 부분도



도8, 화면 향 우측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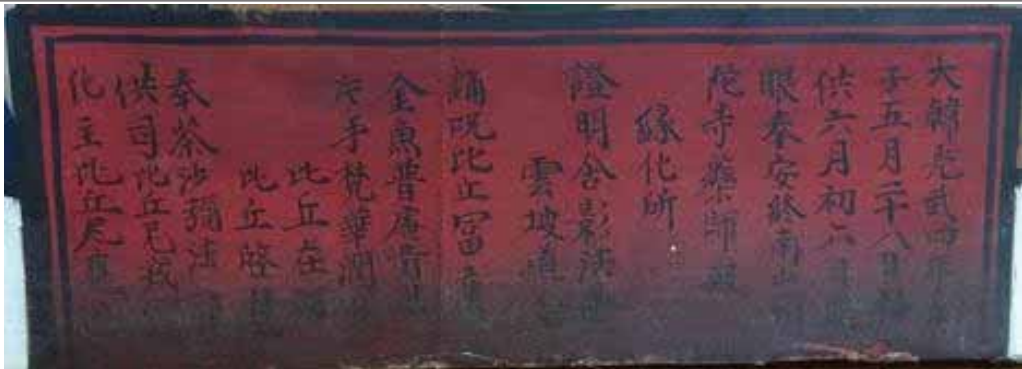
도9. 본존불상 대의 문양



도10. 지국천왕(동) 부분도



도11. 향 우측 화기



도12. 향 좌측 화기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麻浦 石佛寺 熾盛光如來會圖)】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 (麻浦 石佛寺 熾盛光如來會圖)
수 량	1점	규 격	전체; 121.6cm×181.4cm
재 료	면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시 대	1914년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는 액자형 불화로 삼성각의 중앙 불단에 모셔져 있다. 가로로 긴 장방형의 화폭은 상단 기준으로 105cm, 76.4cm의 면을 가로로 이어 만들었다. 중앙에는 치성광여래와 일광과 월광이 놓인 연꽃가지를 들고 있는 일광·월광보살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왼편에 4위의 칠성과 3위의 칠원성군과 면류관을 쓴 자미대제, 오른 편에 칠여래 가운데 3위와 4위의 칠원성군, 그리고 정수리가 높이 솟아있는 수성노인이 자리하고 있다. 천공에는 각각 3명씩, 남두육성(南斗六星)이 구름을 타고 하강하고 있다. 모든 인물들은 여유 공간을 남기지 않고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하단에 시커멓게 때가 타서 화기의 맨 아래 부분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제작 시기와 제작장소와 봉안처, 그리고 불화를 그린 화승들의 명칭은 알아볼 수 있어 불화 제작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한다.

전체적으로 화면에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생긴 오염과 변색, 칠원성군의 얼굴 등에 안료의 탈락 등이 보이며, 촛불로 인한 촛농 등이 화면 상단까지 분포하고 있다. 불화의 하단 부분, 6분의 1과 2 사이 지점에는 가로로 검고 길게 때가 묻은 흔적이 있으며, 희게 퇴색된 부분도 있다. 검은 때의 위치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전에 앞에 괘불함을 보관하면서 변색한 것이다. 화면 좌측 하단에 찢어져 흰색 천으로 메움을 한 흔적이 보이며, 화면 곳곳에 좁이 쓸어 생긴 작은 구멍이 있다.

2. 원형유지정도

화면에 오염과 변색, 안료의 탈락, 그리고 화면이 찢어져 수리한 부분과 좁이 쓸어 생긴 작은 구멍 등이 있으나 화면 전체를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 원래 화면의 도상에는 손상이 거의 없다. 불화를 채색한 붉은 색, 청색, 녹색, 백색 등의 안료가 안정적으로 잘 고정되어 있어 비교적 원형이 잘 유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내용 및 특징

연화좌 위에 붉은 색 법의를 입은 채 앉아 있는 치성광여래의 왼손 바닥에는 법륜이 놓여 있으며, 오른 손은 어깨 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다. 법의의 테두리 단에는 화려한 꽃문양이 표현되어 있으며, 신광에는 금박을 붙였던 흔적이 보여 치성광여래에게로 시선이 집중된다.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는 치성광여래의 육계는 유난히 높이 솟아 있다. 이러한 육계의 표현은 양 옆에 자리한 칠여래에서도 보인다. 이 불화에 표현된 여래와 보살들의 육색은 어두운 석간주 색 계통의 색으로 원색인지 변색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

화기에 의하면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는 대정3년(大正三年), 즉 1914년에 양주군 와부면 종사(鍾寺, 수종사로 추정)에서 불사를 하면서 칠성탱 1축을 그려 걸었고, 한성부 고양군 한지면 중남산 미타사로 이안하였다고 적혀 있다. 불화를 그린 화승은 금어 춘담범천이다.

畫記：大正三年「甲寅〇〇」至月廿〇「楊州郡」瓦阜面「鍾寺神」兩点眼〇〇「晦月新〇」繪掛佛幀「佛事時七」星幀一軸「移安于漢」城外高陽「郡漢芝」面終南山「彌陀寺」緣化所「證明」東果〇〇「困難〇〇」誦呪「比丘智〇」碧霽「玠洙」金魚春「潭梵天」¹⁾化主「比丘尼」應合「清信女」己酉生「文氏」普花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와 같은 유형의 불화는 <미타사 칠성각 칠성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는 거의 장방형에 가까운 화폭에 치성광여래삼존을 중심으로 좌우에 칠여래와 칠원성군과 보성(輔星)과 필성(弼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신광의 광배를 처리한 금박이라든지 치성광여래를 비롯한 칠여래, 칠원성군의 관과 문양 등도 금박으로 처리하여 매우 화려한 느낌을 준다. 이 불화는 보암궁법(普菴肯法)과 범화윤익(梵華潤益), 운조(運照), 재겸(在謙)이 그린 불화이다.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는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를 모본으로 하여 보성과 필성을 제외하고, 수성과 자미대체를 좌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칠여래의 좌우 배치를 바꾸고, 남두육성을 표현하는 등 미타사본 칠성도를 계승, 변형시킨 것이다.

1) 天자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화승 춘담당은 범천이다.



그림 1. <미타사 칠성각 칠성광여래도>, 1897년, 면본채색, 전체화폭 139×161.6cm, 서울 미타사 칠성각 요사(화승 : 궁법, 윤익, 운조, 재겸),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519호

범천은 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화승으로 1901년 수화승 보암당 궁법과 <남양주 불암사 독성도>, 1907년 <남양주 불암사 신중도>를 제작하는 등 궁법의 문하에서 활동하였다. 범천은 1910년 <진관사 칠성각 칠성도>를 단독으로 제작하였다. 이 불화의 마포 석불사본은 진관사 본 도상에 수성노인과 남두육성과 같은 도상을 추가로 하여 약간의 변형을 가해 제작되었다.



그림 2. <진관사 칠성도>, 1910년, 춘담 범천,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47호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는 궁법이 주도한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를 계승한 불화로, 19세기 후반까지 조성되었던 칠성도에서 주로 보이던 28수가 생략되고, 좌우대칭의 안정된 구도를 취하며 좀더 화면구성을 간략하게 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3. <치성광여래회도>, 1868년, 견본채색, 191×225.3cm, 경기도 남양주 흥국사 대웅보전.

한편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가 이안되었던 미타사에서 이듬 해인 1915년에 범천은 아미타여래불도 조성에 참여하여 이 불화가 미타사 불화 불사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조사 결과

4. 지정 여부 : 가

<마포 석불사 치성광여래회도>는 20세기 전반 활동했던 춘담 범천이 그린 불화이다. 궁법의 문하에서 서울,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 불화는 궁법이 수화승으로 참여하여 그린 <미타사 칠성각 치성광여래도>를 계승 변형한 것이다. 석불사 칠성도는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진관사 칠성각 칠성도>와 유사한 수준의 작품성을 지니고 있고,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석불사 측에서는 석불사 창건 후 1900년 조성되어 대대로 전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화기에 근거하여 볼 때 원 소유처는 서울 옥수동 미타사에 있었던 것이므로, 지정 이전에 소유권에 관해 미타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석불사 삼성각 치성광여래회도 전도



치성광여래와 칠여래의 상반신



치성광여래 삼존



일광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수성노인, 남태육성, 칠여래, 자미대제	
	
칠원성군	
	
문양	보수한 부분
	

화기



【마포 석불사 독성도(麻浦 石佛寺 獨聖圖)】

참고 자료 1	조사보고서

검토종별	서울시 유형문화재	문화재명	마포 석불사 독성도 (麻浦 石佛寺 獨聖圖)
수 량	1점	규 격	전체 96.5cm×83.7cm
재 료	면바탕에 채색	소유자	대한불교조계종 석불사
시 대	1919년	소재지	
조사 내용	1. 문화재 현황 <마포 석불사 독성도>는 석불사 삼성각에 칠성도·산신도와 함께 봉안되어 있다. 삼성각 주불도인 칠성도 우측에 봉안된 불화 앞에는 독성상이 놓여 있다. 전체적으로 손상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화면 전체적으로 습기로 인해 생긴 듯한 얼룩이 보이며 색도 상당히 퇴색한 느낌이다. 소나무 잎을 그릴 때 쓰는 녹색 안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그린 것 같으며, 배경을 수목담채로 표현하였다. 화면의 여기 저기 좁이 쓸어 생긴 작은 구멍이 보이며, 하단 곳곳에 찢음이 떨어진 흔적들이 다수 보인다. 화면 우측의 소나무 표현부분과 독성의 도포자락에는 6·25 때 생긴 총탄을 때운 흔적이 보인다.		
	2. 원형유지정도 안료의 퇴색과 좁이 쓴 작은 구멍, 찢음 자국과 총상의 흔적이 있기는 하지만 도상 부분의 손상은 전혀 없어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내용 및 특징 독성은 깊은 산 속임을 암시하는 공간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왼손으로 긴 석장을 쥐고 있다. 배경에는 도안화된 듯한 소나무가 아치를 이루고 있으며 독성의 왼편에는 바위에서 피어 오른 흰 꽃나무와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지저귀고 있다. 오른편에는 잎이 풍성한 모란꽃 위로 날아드는 2마리의 검정나비가 표현되어 있다. 배경에 표현된 이들 꽃과 새, 나비 등에서 전통적인 민화풍 화조화의 영향이 간취된다. 한편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독성이 머무는 공간이 깊은 산 속을 암시하듯 2개의 봉우리가 엮게 그려져 있으며, 구름 사이로 붉은 해가 살짝 보인다. 그 아래에는 쏟아지는 폭포와 거칠게 일렁이는 물결이 표현되어 있다. 우측 하단 모서리에는 길지 않은 화기가 붉은 바탕의 화기란에 기록되어 있다.		

畫記：大正八年己未四月二」十八日京城府」麻浦洞彌陀菴獨」聖幀一軸奉安于」證明比丘 慈菴堂」誦呪比丘 持殿比丘 普賢」金魚所」片手比丘若效錦湖堂」比丘性曄香菴堂」化主清信女金明星」願以此切德」皆共成佛道」

대정팔년(大正八年) 즉 1919년 4월 20일에 경성부 마포동 미타암에 독성탱 한 축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는 내용이다. 금어소에 적힌 편수는 비구 금호당 약효(錦湖堂若效)와 향암당 성엽(香菴堂性曄)이며, 화주는 청신녀 김명성으로 이 독성도를 조성봉안하는 공덕으로 모두 함께 성불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 독성도를 그린 금호당 약효(1846~1928)는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이다. 이른바 ‘계룡산화파’를 형성하여 충청도 지역의 불화계를 활성화시켰고, 그가 거주했던 마곡사에서는 한국 근대 불화 제작의 산실이라고 할 만큼 많은 화승을 배출하였다. 함께 이 불화를 그린 성엽도 마곡사 출신 화승으로 약효의 제자로 1940년대까지 활동하였다. 약효는 1860년대 화승으로 입문하여 1928년 83세의 세수로 입적할 때까지 60여년 동안 많은 불화를 제작하였으며, 현재 100점 이상의 불화가 남아 있다.

이 불화는 74세에 그린 불화로서 그의 만년작품이다. 독성이 입은 붉은 색 도포만이 채색이 비교적 선명할 뿐 그 외에 경물의 색감을 최대한 약화시킨 것이 불화의 특징이며, 독성의 담담한 얼굴표정과 듬성듬성 난 흰 머리카락과 수염은 화승 자신의 노화한 모습을 투영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기에 봉안처로 기록되어 있는 미타암은 현재 석불사터에 창건되었던 암자이다. 미타암은 숙종(1674~1720) 때 환성지안(喚醒志安, 1664~1729) 대사가 창건한 사찰로서 한강을 진호(鎭護)하고 상인과 선원들의 무사 항해와 상업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수륙재를 올리는 호국사찰이었다. 1725년(영조2)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화엄대법회에 1400여 대중이 몰릴 정도로 백성들의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대사는 결국 그 인기 때문에 역모를 꾀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제주로 귀향을 가서 일주일 만에 병을 얻어 입적하였다. 그 사건을 계기로 미타암은 퇴락하게 되고 구한말 흥선대원군(1820~1898)은 미타암을 부수고 음풍농월하는 풍월정(風月亭)을 세웠다. 이후 김해김씨 무진거사(無盡居士)를 통해 미타암이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낸다. 무진거사는 청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 후 한강변에서 석불을 발견하고, 이곳이 절터임을 알고 중창불사를 하였다고 한다. 사찰에서는 그 중창시기를 1900년 경으로 보고 있다. 무진거사의 사후 일광화(日光華), 월광화(月光華) 자매가 절을 지켰으며, 법등은 월광화의 딸로 동진출가한 천일(天日, 1912~1977) 스님에게 이어졌다. 스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서울에서 제법 규모가 큰 비구니 사찰로 면모를 갖추게 되었지만 6·25전쟁으로 삼성각을 빼고 모두 전소하여 사찰을 다시 일으켰다.

이제까지 살펴본 사찰의 연혁과 1919년 독성도가 미타암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무진거사가 미타암을 중창하고 독성도를 봉안할 때까지도 ‘미타암’이라는 옛 암자의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불사라는 명칭으

	로 바뀐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32년 조성한 <마포 석불사 괘불도>에서 경성부 마포동 석불각(京城府麻浦洞石佛閣)에 불화를 걸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1920~1932년경에 사찰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 결과	4. 지정 여부 : 문화재자료로 지정 가능 <마포 석불사 독성도>는 조선 말기 계룡산화파를 주도하였던 금호당 약효와 그의 제자인 성협의 작품이다. 약효의 말년 작으로 종이 쥔어 구멍이 있기는 하지만 보존이 양호하다. 애초에 독성의 붉은 도포 외에는 진채를 쓰지 않아 담채 풍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이며, 독성의 인물표현은 전통적인 독성의 형상이라는 보다는 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보이는 모습에서 현실적인 노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비록 1919년 근대기에 제작된 불화이지만 마포 석불사가 한강을 진호(鎭護)하고 상인과 선원들의 무사 항해와 상업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건립되었던 옛 미타암을 증창한 절임을 알려주는 역사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에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2	문화재 이미지
독성도 봉안 상태 	독성도 전도 
화기 	독성의 얼굴 

독성도 우측 배경



독성도 좌측 배경



총알 자국



총알 자국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4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주소)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2.11.03 ~ 2022.11.17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5487661	은평구 진흥로 113 (대조동)	수도요금	20.12~22.10	9회	343,760원	
005487670	은평구 진흥로 113 (대조동)	수도요금	20.06~22.04	12회	1,660,750원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사업자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13 (대조동)	주식회사태양에이엠씨	110111-5***** (등기번호11050-0241-9972 폐문부재)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10, 2635호(진관동)	2,004,510원	2022.11.18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전호철(☎02-3146-359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938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공구) 공사완료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17호(2010.05.26.)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06호(2010.11.15.)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03호(2014.04.21.), 제2016-849호(2016.12.12.), 제2017-862(2017.12.22.), 제2018-763호(2018.12.12.), 제2019-952호(2019.12.31.), 제2020-589호(2020.08.31.), 제2020-1169호(2021.01.04.), 제2021-918호(2021.06.30), 제2021-1196호(2021.11.03), 제2022-232(2022.05.03), 제2022-364호(2022.06.29)로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1공구가 공사완료 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1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단지조성사업자의 명칭 ·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서울주택도시공사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표자의 성명 : 사장 김 현 동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4. 사업시행지역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전체 면적 : 662,438.3㎡
(1공구 : 366,869.2㎡, 2공구 : 184,844.2㎡, 3공구 : 62,794.2㎡, 4공구 : 2,623.8㎡, 5공구 : 45,306.9㎡)
 - ※ 금회 준공지역 : 1공구 (366,869.2㎡)
 -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전체	
총계		662,438.3	366,869.2	184,844.2	62,794.2	2,623.8	45,306.9	100.0	
공공주택 용지	계	581,938.3	366,869.2	107,750.0	62,012.2	-	45,306.9	87.8	100.0
	소계	251,054.8	220,833.9	-	-	-	30,220.9	37.8	43.2
	단독주택용지	8,045.4	8,045.4	-	-	-	-	1.2	1.4
	공동주택건 설용지	도시형 생활주택	23,311.4	7,013.7	-	-	16,297.7	3.5	4.0
		아파트	206,980.5	193,057.3	-	-	13,923.2	31.2	35.6
	근생시설용지	12,717.5	12,717.5	-	-	-	-	1.9	2.2
	소계	330,883.5	146,035.3	107,750.0	62,012.2	-	15,086.0	50.0	56.8
	업무시설용지	27,956.3	27,956.3	-	-	-	-	4.2	4.8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전체	구분별	
시설 용지	도시지원 시설용지	소계		6,172.9	5,512.5	-	-	-	660.4	1.0	1.1	
		주거편익시설및사 회복지시설		3,865.5	3,205.1	-	-	-	660.4	0.6	0.7	• 4개소
		커뮤니티센터		2,307.4	2,307.4	-	-	-	-	0.4	0.4	• 1개소
	공원녹지	소계		145,728.4	48,473.8	52,261.0	30,568.0	-	14,425.6	22.0	25.1	
		근린공원		66,692.5	26,633.9	25,633.0	-	-	14,425.6	10.1	11.5	• 4개소
		체육공원		12,813.0	-	-	12,813.0	-	-	1.9	2.2	• 1개소 • 중복면적(유수지2,512㎡ 포 함)
		완충녹지		11,840.6	1,246.2	738.0	9,856.4	-	-	1.8	2.1	• 5개소
		경관녹지		15,110.8	8,600.2	1,353.0	5,157.6	-	-	2.3	2.6	• 8개소
		연결녹지		8,775.1	7,975.1	-	800.0	-	-	1.3	1.5	• 4개소
		공공공지		11,031.4	4,018.4	5,072.0	1,941.0	-	-	1.7	1.9	• 12개소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1,054㎡, 하수도954㎡ 포함)
		하천		18,090.0	-	18,090.0	-	-	-	2.7	3.1	• 역곡천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 하수도1,835㎡ 포함)
		광장		1,375.0	-	1,375.0	-	-	-	0.2	0.2	• 1개소
	교육시설	소계		22,146.7	22,146.7	-	-	-	-	3.3	3.8	
		초등학교		9,994.3	9,994.3	-	-	-	-	1.5	1.7	• 1개소
		중학교		10,552.1	10,552.1	-	-	-	-	1.6	1.8	• 1개소
		유치원		1,600.3	1,600.3	-	-	-	-	0.2	0.3	• 1개소
	도로	소계		119,923.6	38,168.4	51,855.0	29,900.2	-	-	18.1	20.5	
		일반도로		118,959.2	37,324.0	51,855.0	29,780.2	-	-	18.0	20.4	• 가각포함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25㎡, 하수도241㎡, 하천2,156㎡)
		보행자전용도로		964.4	844.4	-	120.0	-	-	0.1	0.1	• 중복면적(도로100㎡ 포함)
		주유소		1,308.3	1,308.3	-	-	-	-	0.2	0.2	• 1개소
		주차장		4,013.3	2,469.3	-	1,544.0	-	-	0.6	0.7	• 3개소
		철도		3,634.0	-	3,634.0	-	-	-	0.6	0.6	• 중복면적(하천174㎡, 도로482㎡, 하수도17㎡ 포함)
		계		80,500.0	-	77,094.2	782.0	2,623.8	-	12.2	100.0	
훼손지 복구 용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70,570.0	-	68,006.2	-	2,563.8	-	10.7	87.7	
		근린공원		67,055.0	-	64,491.2	-	2,563.8	-	10.1	83.3	• 1개소 • 중복면적(폐기물처리시설 13,447㎡ 유수지6,911㎡, 도로124㎡, 광명~서울 고속도 로 503㎡ 포함)
		공공공지		1,112.0	-	1,112.0	-	-	-	0.2	1.4	• 3개소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798㎡, 하수도21㎡ 포함)
		하천		2,403.0	-	2,403.0	-	-	-	0.4	3.0	• 역곡천 • 중복면적(하수도210㎡ 포함)
		도로		4,440.0	-	3,598.0	782.0	60.0	-	0.7	5.5	• 중복면적(하수도5㎡ 포함)
	공원 녹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전체		구분별
		철도	5,490.0	-	5,490.0	-	-	-	0.8	6.8	• 중복면적(수도공급시설28㎡, 하천36㎡, 하수도4㎡, 도로144㎡ 포함.)

5. 준공일 : 2022년 11월 03일 (1공구)

※ 사업시행기간 : 1공구 : 2010년 5월 26일 ~ 2022년 09월 30일

2공구 : 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3공구 : 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4공구 : 2010년 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5공구 : 2010년 5월 26일 ~ 2023년 09월 30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관리처분 계획

구분		면적(㎡)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총계		366,869.2	-	-
주택건설용지		220,833.9	-	-
단독주택용지		8,045.4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공동주택 건설용지	도시형 생활주택	7,013.7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공급
	아파트	193,057.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시행자가 주택을 건설공급(2BL, 3BL, 8BL)
근생시설용지		12,717.5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공공시설용지		146,035.3	-	-
업무시설용지		27,956.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도시지원 시설용지	주거편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3,205.1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커뮤니티센터	2,307.4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공원 녹지	근린공원	26,633.9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원충녹지	1,246.2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경관녹지	8,600.2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연결녹지	7,975.1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공지	4,018.4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교육시설	초등학교	9,994.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중학교	10,552.1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구분		면적(㎡)	소유자	관리처분사항
	유치원	1,600.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도로	일반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보행자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유소	1,308.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주차장	2,469.3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 특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에 해당하는 용지는 금회 관리처분에서 제외

○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시설의 종류	규격	수량		관리처분사항	비고
		연장(m)	면적(㎡)		
도 로	· 폭6~28.5m, 22개 노선 (상·하수도시설 포함)	2,458	38,168.4	· 시설물 관리기관으로 무상귀속 1. 도로(교통안전시설물 포함), 하수도시설, 공원, 녹지, 공공공지 → 구로구청 2. 상수도시설 → 강서수도사업소 3. 교통신호등 시설 → 강서도로사업소 4. 소화전 → 구로소방서	-
녹 지	· 완충녹지 1개소	-	1,246.2		-
	· 경관녹지 4개소		8,600.2		
	· 연결녹지 3개소		7,975.1		
공 원	· 근린공원 2개소	-	26,633.9		-
공공공지	· 공공공지 6개소	-	4,018.4		-

※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에 해당하는 용지는 금회 관리처분에서 제외

7.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기획부(전화 : 02-3410-758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2-317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일반직공무원 정·현원 불일치를 해소하고, 학교 시설관리인력 운용 효율화를 위해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 나. 2023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를 조기 반영하고,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개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며, 그 밖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위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단위기관별 정원 조정

○ 본청(직속기관 포함)

: 5급 (중)9명, 6급 (중)25명, 7급 (중)16명, 8급 (중)4명, 계 (중)54명

○ 교육지원청

: 5급 (중)2명, 7급 (중)26명, 8급 (중)1명, 9급 (감)24명, 계 (중)5명

○ 각급학교

: 6급 (중)29명, 7급 (중)37명, 8급 (감)105명, 9급 (감)20명, 계 (감)59명

나. 일반직공무원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

- 5급: 교육행정5급 (중)7명, 행정5급 (중)2명, 교육행정 또는 행정 5급 (중)1명, 공업 또는 시설 5급 (중)1명, 계 (중)11명

- 6급: 교육행정6급 (중)24명, 전산6급 (중)5명, 공업6급 (중)1명, 시설6급 (중)1명, 시설관리6급 (중)17명, 보건6급 (중)1명, 방호 또는 시설관리 6급 (중)1명,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6급 (중)3명, 열관리운영 (중)1명, 계 (중)54명

- 7급: 교육행정7급 (중)5명, 전산7급 (감)1명, 운전7급 (중)2명, 공업7급 (중)2명, 시설7급 (중)1명, 시설관리7급 (중)14명, 방호 또는 시설관리 7급 (감)5명, 보건7급 (중)1명, 사무운영7급 (중)60명,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7급 (감)2명, 전기운영7급 (중)3명,

열관리운영7급 (감)1명, 계 (증)79명

- 8급: 교육행정8급 (감)10명, 전산8급 (증)4명, 운전8급 (증)4명, 공업8급 (증)1명, 시설8급 (증)1명, 시설관리8급 (감)56명, 방호 또는 시설관리 8급 (감)2명, 사무운영8급 (감)42명, 보건8급 (증)1명,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8급 (감)1명, 계 (감)100명
- 9급: 운전9급 (감)6명, 시설관리9급 (감)16명, 사무운영9급 (감)18명, 방호 또는 시설관리 9급(감)1명, 전기운영9급 (감)3명, 계 (감)44명

3. 의견 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참조: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전화 02-3999-357, FAX 02-6973-9921)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797	1,298	4,621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계		7,125	6	1,508	990	4,621	
일 반 직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0	-	29	11	-
		서기관	35	-	25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9	-	7	2	-
	5급	소계	339	1	150	55	133
		교육행정	249	1	88	41	119
		행정	6	-	6	-	-
		사서	30	-	30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1,887	5	490	284	1,108
		교육행정	1,210	5	210	160	835
		전산	48	-	26	22	-
		사서	131	-	120	11	-
		공업	11	-	9	-	2
		녹지	1	-	1	-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 반 직		시설	40	-	17	23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6급	열관리운영	10	-	8	-	2
		사무운영	55	-	20	12	23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 · 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675	-	569	427	1,679
		교육행정	1,604	-	239	295	1,070
		전산	57	-	46	11	-
		사서	173	-	173	-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시설	48	-	20	28	-
		시설관리	524	-	19	4	501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9	-	2	-	7
		열관리운영	14	-	4	-	10
		사무운영	143	-	22	33	8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 · 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141	-	240	200	1,701
		교육행정	1,322	-	70	98	1,154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공업	14	-	2	12	-
		보건	19	-	4	15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588	-	44	6	538
		운전	14	-	3	5	6
		전기운영	4	-	1	-	3
	8급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4	-	4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일 반 직	9급	소계	-	-	-	-	-
		시설관리	-	-	-	-	-
		운전	-	-	-	-	-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전문 경력관	소계	7	-	7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연구사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일반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4급 상당(비서)		1	-	1	-	-
	5급 상당(비서)		4	-	4	-	-
	6급 상당(비서)		3	-	3	-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0	308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소계	120	-	65	55	-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69	-	36	33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8	-	215	253	-

신 · 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7,722	6	1,743	1,293	4,680	총계		7,722	6	1,797	1,298	4,621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정무직	정무직 계	1	-	1	-	-
	교육감	1	-	1	-	-		교육감	1	-	1	-	-
일반직 계		7,125	6	1,454	985	4,680	일반직 계		7,125	6	1,508	990	4,621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2·3급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	1	-	-
	3급 부이사관	9	-	9	-	-		3급 부이사관	9	-	9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3·4급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	3	-	-
4급	소계	40	-	29	11	-	4급	소계	40	-	29	11	-
	서기관	35	-	25	10	-		서기관	35	-	25	10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	-	4	1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9	-	7	2	-	4·5급	서기관 또는 교육행정사무관	9	-	7	2	-
일반직	소계	328	1	141	53	133	일반직	소계	339	1	150	55	133
	교육행정	242	1	83	39	119		교육행정	249	1	88	41	119
	행정	4	-	4	-	-		행정	6	-	6	-	-
	사서	30	-	30	-	-		사서	30	-	30	-	-
	보건	1	-	1	-	-		보건	1	-	1	-	-
	교육행정 또는 행정	9	-	3	-	6		교육행정 또는 행정	10	-	4	-	6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사서	6	-	6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보건	8	-	3	3	2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2	-	2	-	-
	공업 또는 시설	19	-	8	11	-		공업 또는 시설	20	-	9	11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6	-	-	-	6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	-	1	-	-
6급	소계	1,833	5	465	284	1,079	6급	소계	1,887	5	490	284	1,108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 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교육행정	1,186	5	204	160	817	일반직	교육행정	1,210	5	210	160	835
	전산	43	-	21	22	-		전산	48	-	26	22	-
	사서	131	-	120	11	-		사서	131	-	120	11	-
	공업	10	-	8	-	2		공업	11	-	9	-	2
	녹지	1	-	1	-	-		녹지	1	-	1	-	-
	보건	18	-	8	10	-		보건	19	-	9	10	-
	식품위생	6	-	4	-	2		식품위생	6	-	4	-	2
	간호	5	-	5	-	-		간호	5	-	5	-	-
	시설	39	-	16	23	-		시설	40	-	17	23	-
	방송통신	1	-	1	-	-		방송통신	1	-	1	-	-
	시설관리	271	-	36	11	224		시설관리	288	-	42	11	235
	운전	5	-	2	-	3		운전	5	-	2	-	3
	통신운영	1	-	1	-	-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3	-	1	-	2		전기운영	3	-	1	-	2
	열관리운영	9	-	7	-	2		열관리운영	10	-	8	-	2
	사무운영	55	-	20	12	23		사무운영	55	-	20	12	23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	-	-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전산	-	-	-	-	-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교육행정 또는 보건	1	-	-	-	1
	방호 또는 시설관리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3	-	3	-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공업 또는 시설	30	-	4	26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보건 또는 식품위생	3	-	3	-	-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공업 또는 시설	3	-	-	-	3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10	-	1	9	-
7급	소계	2,596	-	553	401	1,642	7급	소계	2,675	-	569	427	1,679
	교육행정	1,599	-	226	292	1,081		교육행정	1,604	-	239	295	1,070
	전산	58	-	47	11	-		전산	57	-	46	11	-
	사서	173	-	173	-	-		사서	173	-	173	-	-
	공업	18	-	6	12	-		공업	20	-	8	12	-
	녹지	1	-	1	-	-		녹지	1	-	1	-	-

현행							개정안						
구분							구분						
총계							총계						
시의회 사무처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공립의 각급학교						
일반직	8급	보건	29	-	15	14	-	보건	30	-	16	14	-
		간호	5	-	5	-	-	간호	5	-	5	-	-
		시설	47	-	19	28	-	시설	48	-	20	28	-
		시설관리	510	-	13	-	497	시설관리	524	-	19	4	501
		운전	10	-	3	4	3	운전	12	-	3	6	3
		통신운영	1	-	1	-	-	통신운영	1	-	1	-	-
		전기운영	6	-	2	-	4	전기운영	9	-	2	-	7
		열관리운영	15	-	5	-	10	열관리운영	14	-	4	-	10
		사무운영	83	-	22	14	47	사무운영	143	-	22	33	88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시설	1	-	1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3	-	3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1	-	1	-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공업 또는 시설	18	-	3	15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보건 또는 식품위생	2	-	2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9	-	5	4	-	방호 또는 시설관리	4	-	2	2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교육행정·보건 또는 식품위생	8	-	1	7	-
	8급	소계	2,241	-	236	199	1,806	소계	2,141	-	240	200	1,701
		교육행정	1,332	-	64	98	1,170	교육행정	1,322	-	70	98	1,154
		전산	20	-	9	11	-	전산	24	-	13	11	-
		사서	85	-	85	-	-	사서	85	-	85	-	-
		공업	13	-	1	12	-	공업	14	-	2	12	-
		보건	18	-	3	15	-	보건	19	-	4	15	-
		시설	49	-	7	42	-	시설	50	-	8	42	-
		시설관리	644	-	51	6	587	시설관리	588	-	44	6	538
		운전	10	-	3	2	5	운전	14	-	3	5	6
		전기운영	4	-	1	-	3	전기운영	4	-	1	-	3
		열관리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46	-	4	1	41	사무운영	4	-	4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6	-	6	-	-	교육행정 또는 사무운영	5	-	5	-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공업 또는 시설	11	-	-	11	-

현행							개정안						
구분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전문 경력관	보건 또는 간호	1	-	1	-	-	전문 경력관	보건 또는 간호	1	-	1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2	-	1	1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소계	44	-	-	24	20		소계	-	-	-	-	-
	시설관리	16	-	-	-	16		시설관리	-	-	-	-	-
	운전	6	-	-	5	1		운전	-	-	-	-	-
	전기운영	3	-	-	-	3		전기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열관리운영	-	-	-	-	-
	사무운영	18	-	-	18	-		사무운영	-	-	-	-	-
	방호 또는 시설관리	1	-	-	1	-		방호 또는 시설관리	-	-	-	-	-
	소계	7	-	7	-	-		소계	7	-	7	-	-
	가군	1	-	1	-	-		가군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비상계획관	1	-	1	-	-
	나군	2	-	2	-	-		나군	2	-	2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교육영상물 제작PD	1	-	1	-	-
	평생교육사	-	-	-	-	-		평생교육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학생수련지도사	1	-	1	-	-
	다군	4	-	4	-	-		다군	4	-	4	-	-
	속기사	-	-	-	-	-		속기사	-	-	-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학생수련지도사	4	-	4	-	-
	소계	14	-	3	11	-		소계	14	-	3	11	-
	학예연구	1	-	1	-	-		학예연구	1	-	1	-	-
	기록연구	13	-	2	11	-		기록연구	13	-	2	11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별 정 직	별정직 계	8	-	8	-	-
	4급상당(비서)	1	-	1	-	-		4급상당(비서)	1	-	1	-	-
	5급상당(비서)	4	-	4	-	-		5급상당(비서)	4	-	4	-	-
	6급상당(비서)	3	-	3	-	-		6급상당(비서)	3	-	3	-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0	308	-	특 정 직	특정직 계	588	-	280	308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120	-	65	55	-		장학관 · 교육 연구관	120	-	65	55	-

현행								개정안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구분				총계	시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 기관 포함)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3급 상당		17	-	6	11	-	연구관		3급 상당		17	-	6	11	-
		4급 상당		34	-	23	11	-			4급 상당		34	-	23	11	-
		5급 상당		69	-	36	33	-			5급 상당		69	-	36	33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8	-	215	253	-	장학사 · 교육 연구사		468	-	215	253	-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2-131호

도시관리계획(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시계획시설(광장 : 종묘앞 광장) 결정(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02.25.)로 결정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종로1-175)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2020.06.25.)호로 실효고시됨에 따라 실효된 도로에 중복 결정 되었던 도시계획시설(광장:종묘앞 광장)을 제척하는 사항에 대하여 2022년 제6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2.09.0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종로구청장

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나. 공간시설
 - (1) 녹지 : 변경없음
 - (2) 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광장	종로구 훈정동 2번지 일대	36,000 (580)	감)80.1	35,919.9 (499.9)	1963.7.1. (건고431호)	종묘앞광장

※()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면적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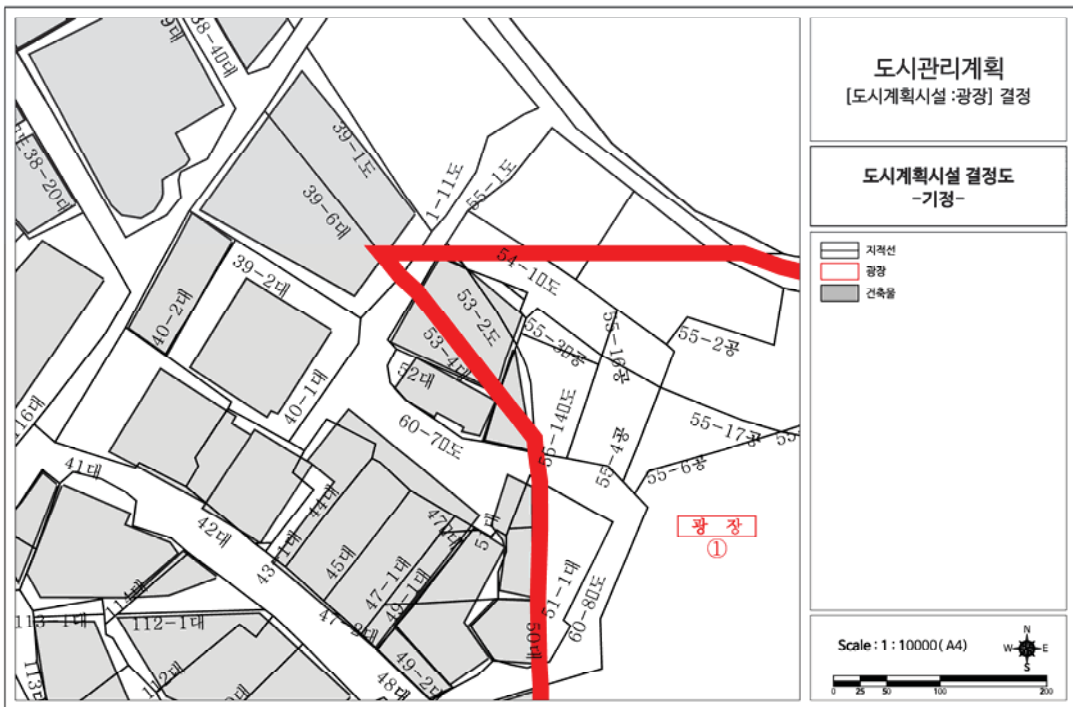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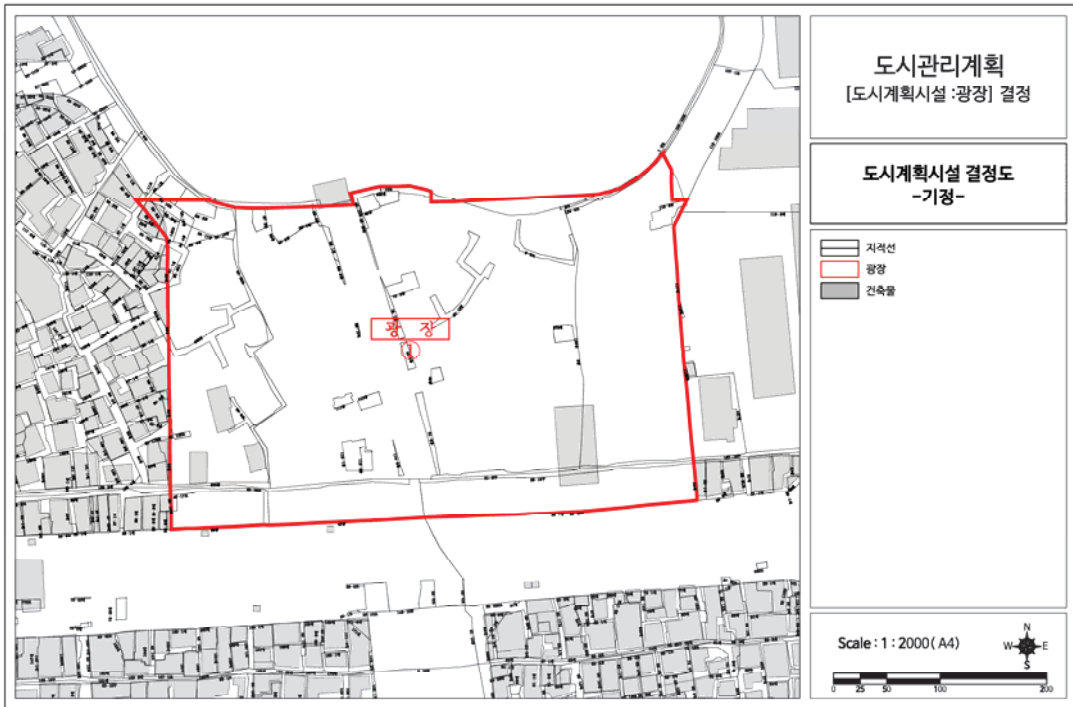
구분	변경내용	변경 사유서
광장	종묘앞 광장 일부 제척	광장부지 중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도로(중복결정) 부분 제척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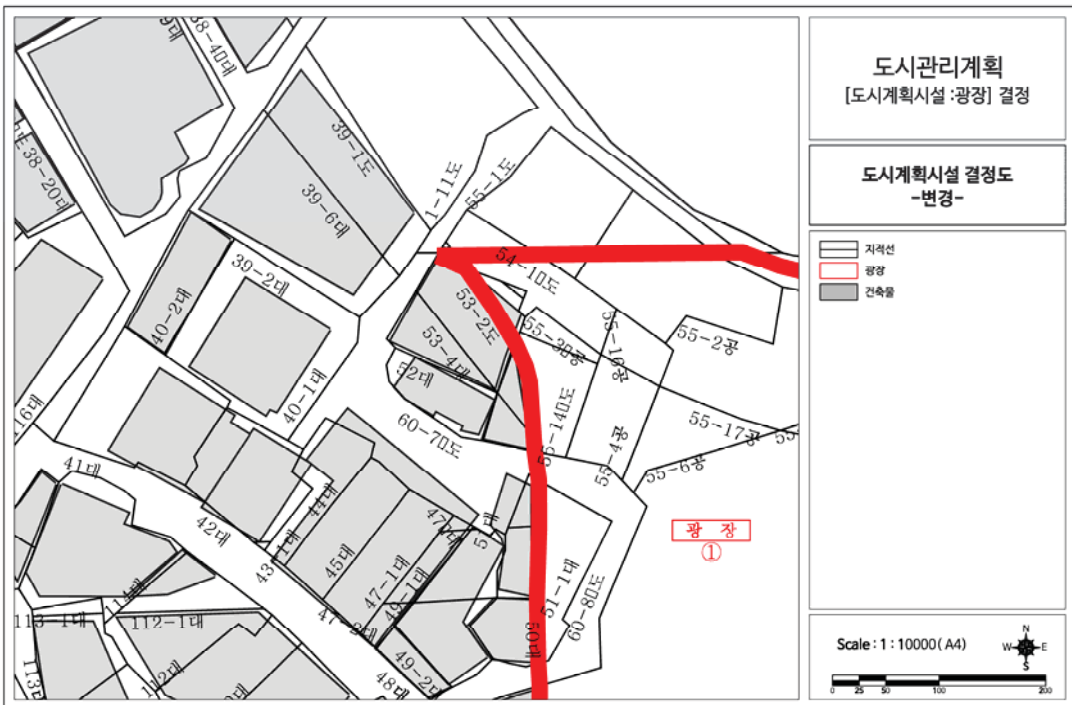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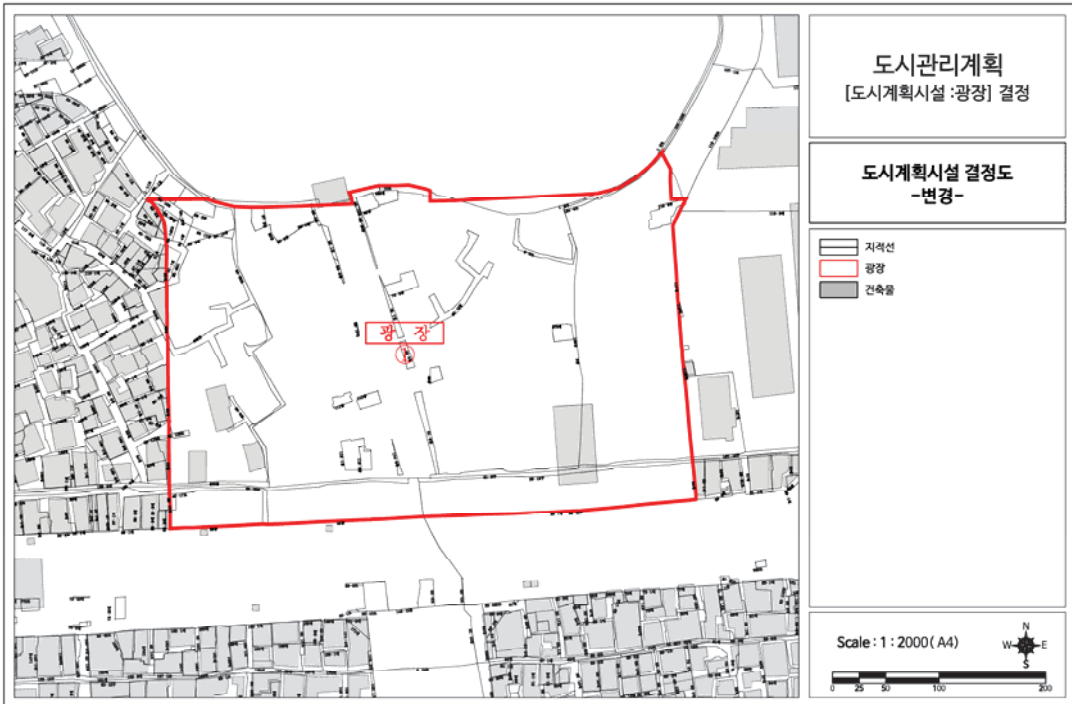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II.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도시기반시설(광장:종묘앞 광장)에 관한 결정도(기정)



- 도시기반시설(광장: 종묘앞 광장)에 관한 결정도(변경)



Ⅲ. 관련도서는 종로구청 건축과(☎02-2148-281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고시 제2022-13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1.10.1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고시 제2022-96호(2022.6.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 되고, 종로구공고 제2022-904호(2022.7.28.)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평창동 433 ~ 평창동 42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33 ~ 평창동 425-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평창동 433 ~ 평창동 42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규모 : 폭 6m, 연장 76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로과(☎02-2148-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평창동 433 ~ 평창동 42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평창동	425-16	임	887.0	887.0	현OO	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지상권	
									(주)00디앤 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0코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변길 **	근저당권	
2	평창동	425-19	임	249.0	249.0	이OO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주)00디앤 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0코 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 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변길 **	근저당권	
									㈜000000 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근저당권	
									김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가압류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평창동	425-22	임	79.0	79.0	이00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주)00디앤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근저당권	
									주000000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근저당권	
4	평창동	425-25	임	69.0	69.0	이00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주)00디앤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근저당권	
									주000000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근저당권	
									이00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	가압류	

◆ 종로구고시 제2022-1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1.10.1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고시 제2022-96호(2022.6.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되고, 종로구공고 제2022-905호(2022.7.28.)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평창동 417-5 ~ 평창동 425-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5 ~ 평창동 425-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평창동 417-5 ~ 평창동 425-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규모 : 폭 5m, 연장 31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로과(☎02-2148-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평창동 417-5 ~ 평창동 425-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평창동	425-15	임	489.0	489.0	현00	1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지상권	
									(주)00디앤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0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근저당권	
2	평창동	425-21	임	258.0	258.0	이00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주)00디앤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0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근저당권	
									주000000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근저당권	
									김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길 **	가압류	
3	평창동	425-27	임	39.0	39.0	박00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				
4	평창동	425-28	임	9.0	9.0	박00	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				

◆ 종로구고시 제2022-13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1.10.1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고시 제2022-96호(2022.6.1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으로 고시 되고, 종로구공고 제2022-1109호(2022.9.22.)로 실시계획 열람공고한 「평창동 424 ~ 평창동 42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합니다.
2. 토지(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24 ~ 평창동 425-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평창동 424 ~ 평창동 42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규모 : 폭 8m, 연장 32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도로과(☎02-2148-31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사 업 명 : 평창동 424 ~ 평창동 425-3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평창동	425-24	임	151.0	151.0	이00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주)00디엔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근저당권	
									㈜00000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근저당권	
2	평창동	425-26	임	277.0	277.0	이00	1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길**	(주)00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	근저당권, 지상권	
									(주)00디엔씨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	근저당권	
									(주)00코리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	근저당권	
									0000협동조합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번길 **	근저당권	
									㈜00000컴퍼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근저당권	
									0000업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로 ***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관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	평창동	432-28	임	524.0	524.0	우00	10분의4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길 **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O 000	100분의 6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로 **				
4	평창동	432-30	임	458.0	458.0	우00	100분의 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길 **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O 000	10분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로 **				
5	평창동	432-32	임	152.0	152.0	우00	100분의 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길 **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O 000	10분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로 **				
6	평창동	432-23	임	193.0	193.0	이00	100분의 16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김00	100분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이00	100분의 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				
						서00	100분의 2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황00	100분의 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번길 **				
						강00	100분의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가길 **				
						김00	100분의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번길 **				
						이00	100분의 14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평창동	432-24	임	167.0	167.0	이00	100분의 16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				
						김00	100분의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				
						이00	100분의 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무로 **				
						서00	100분의 2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황00	100분의 1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번길 **				
						강00	100분의 8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가길 **				
						김00	100분의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번길 **				
8	평창동	432-27	대	16.0	16.0	이00	547분의 176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				
						송00	547분의 217	충청남도 보령시 죽정동 ***~*				
						송00	547분의 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				

◆ 중랑구고시 제2022-12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467호(1978.09.12.)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 2020-51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면목동 210 ~ 209간 도로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210~209 - 변동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동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면목동 210~209간 도로사업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8m, 연장 70m) - 변동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 변동없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당 초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2) 변 경 : 실시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변경-소유자 변경)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변동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로과(☎ 2094-26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업명 : 면목동 210~209간 도로사업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관리	
1	면목동	1206-1	대	61	61	중랑구	중랑구 봉화신로 179				
2	면목동	1320-4	도	3,914	22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3	면목동	211-7	대	5	5	중랑구	중랑구 봉화신로 179				
4	면목동	210-1	대	75	75	중랑구	중랑구 봉화신로 179				
5	면목동	209-59	대	33	33	중랑구	중랑구 봉화신로 179				
6	면목동	209-52	도	31	31	중랑구	중랑구 봉화신로 179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7	면목동	1297-2	도	80	80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로 179				
8	면목동	209-57	도	21	21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로 179				
9	면목동	209-61	대	43	43	중앙구	중앙구 봉화산로 179				

◆ 중랑구고시 제2022-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433호(1998.12.31.)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변경)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6-39 ~ 103-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중화동 286-39 ~ 103-2간 도로확장사업

다. 사업의규모 : 도로확장 B=3→6m, L=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중랑구청장(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24.12.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중랑구청 도로과(☎02-2094-2695)

□ 위 치 도



□ 현황사진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중랑구청장
사 업 명 : 중화동 286-39~103-2간 도로확장공사

연번	소재지(위치)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중화동	103-6	대지	41.0	41.0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로 179				
2	중화동	103-7	대지	35.0	35.0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로 179				
3	중화동	103-8	대지	50.0	50.0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로 179				
4	중화동	103-9	대지	31.0	31.0	중랑구	중랑구 봉화산로 179				

◆ 성북구고시 제2022-176호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호(2007.2.15)로 변경(재정비)결정된 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공동개발(지정)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2241-26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변경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제안에 의거 공동개발(지정)을 변경하는 사항임

나.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변경 사항)

- 공동개발(지정) 변경

가구번호	위치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NR-13	동소문동6가 156	공동개발(지정)	단독개발	
	동소문동6가 157			
	동소문동6가 158			

다.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 강북구고시 제2022-144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3호(2022.4.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외 8필지에 대하여
2.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2-912호(2022.7.14.)로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작성,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96조, 제10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를 갈음하며,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901-69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3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 2) 사업명칭 : 우이령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규모 : 6,134㎡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3.12.31.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붙임 파일 참조

- 붙임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물건조서 각 1부.
2. 보상용지도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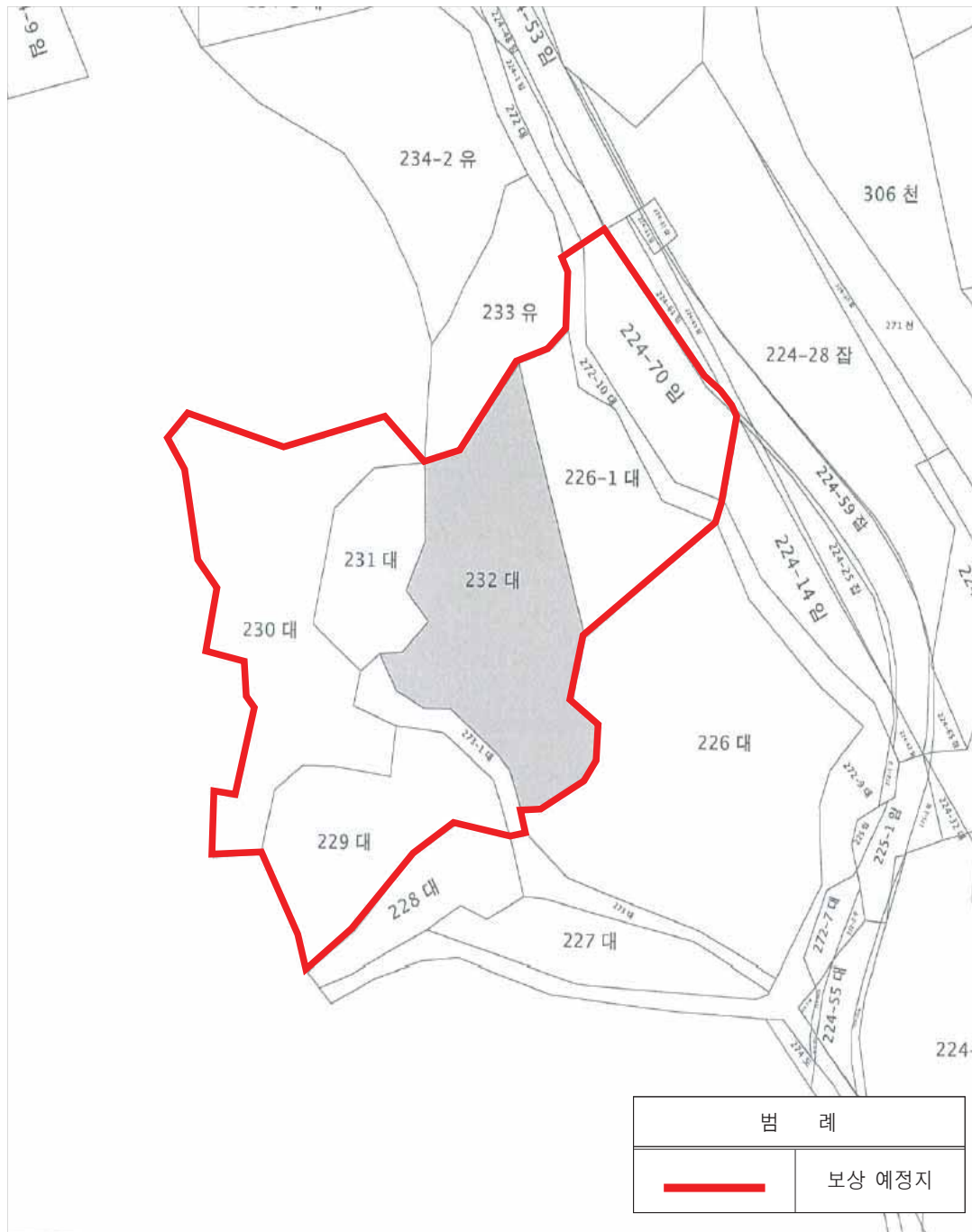
[붙임 1-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계										
1	우이동 226-1	대	727	727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2	우이동 229	대	902	902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3	우이동 230	대	1,511	1,511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4	우이동 231	대	512	512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5	우이동 232	대	1,554	1,554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6	우이동 272-10	대	190	190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7	우이동 273-1	대	175	175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8	우이동 224-70	임	547	547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9	우이동 224-26	임	16	16	김ㅇ기	종로구 지봉로*나길 **	-			

[붙임 1-2]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면적(㎡) 및 규격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성명	주소	관리종류 및 내용	
1	우이동 229번지 일대	헬스	철제	출입문 및 철기둥, 2개소	미상	-	-	-			

[붙임 2] 보상용지도



◆ 양천구고시 제2022-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81호(2011.03.24.) 신월4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공고 제2022-1628호(2022.09.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신월동 489-3 일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처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489-3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신월동 489-3 일대 도로개설 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

구분	규 모				연장(m)	면적(㎡)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결정	소로	2	-	8	210	887.1	신월동 885	신월동 445-9	
결정	소로	3	-	6~10 (10)	132 (86)	319.6	신월동 885	신월동 490-10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춘옥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55 (신월동, 가인빌딩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2023. 12. 31.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소(집)2- 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신월동	445-9	대	246.7	195.7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2	신월동	445-10	대	292.2	2.3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3	신월동	445-14	대	213.5	95.9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4	신월동	445-17	대	170.2	116.2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5	신월동	489-1	대	989.3	190.9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6	신월동	489-2	대	1,251.3	2.1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7	신월동	489-3	대	1,156.5	50.7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8	신월동	489-4	대	1,288.1	147.9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9	신월동	884	도	2,547.1	85.4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계 (총9필지)					887.1						

◎ 소(집)3- 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 적 면 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신월동	489-4	대	1,288.1	51.8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2	신월동	489-8	대	239.4	69.0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3	신월동	490-9	대	179.3	61.0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4	신월동	490-10	대	453.3	101.2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5	신월동	885	도	2,446.7	36.6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월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천구 신월로 255.2층				
계 (총5필지)					319.6						

◆ 동작구고시 제2022-160호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수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48호(2012.9.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동작구 고시 제2015-14호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동작구 고시 제2019-75호 및 동작구 고시 제2021-3호로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된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경미한 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동 작 구 청 장

1. 결정취지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내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소공원 경미한 변경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하기 위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1번지 일대**3. 면 적 : 소공원1 - 1,048.3㎡ / 소공원2 - 440.8㎡****4.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02-820-9844)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소공원1)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사당동 41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137.00	215.50				30	1,048.30	209.43				31	감 88.70㎡ (소원 면적) 감 6.07㎡ (시설 면적)
기반 시설	소 계	123.38					114.76	114.76					감 8.62㎡
	도로	98.49					83.08	83.08					감 15.41㎡
	광 장	24.89					31.68	31.68					증 6.79㎡
조 경 시 설	17.64	17.64				1	17.64	17.64				1	증감없음
휴 양 시 설	-	-				10	-	-				10	증감없음
유 희 시 설	49.08	49.08				2	51.63	51.63				2	증 2.55㎡
운 동 시 설	25.40	25.40				5	25.40	25.40				5	증감없음
편 익 시 설	-	-					-	-					
관 리 시 설	-	-				12	-	-				13	증 1개소
녹 지 및 기타	921.50						838.87						감 82.63㎡
시 설 율 (법정 20%)	$(215.50㎡ / 1,137.00㎡) \times 100\% = 18.95\%$						$(209.43㎡ / 1,048.30㎡) \times 100\% = 19.98\%$						
건 폐 율 (법정 5%)	$(0 / 1,137.00㎡) \times 100\% = 0.00\%$						$(0 / 1,137.00㎡) \times 100\% = 0.0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계		시당동 41번지	1,137.00	215.50				30	시당동 41번지	1,048.30	209.43			31	감 88.70㎡ (소공원 면적)
	소 계		시당동 41번지	123.38	123.38					시당동 41번지	114.76	114.76				감 7.78㎡ (시설 면적)
	산책로	1	"	57.45	57.45					"	54.80	54.80				감 2.65㎡
	산책로	2	"	28.28	28.28					"	28.28	28.28				증감없음
		3	"	12.76	12.76											감 12.76㎡ (폐지)
광 장		가	"	24.89	24.89					"	31.68	31.68				증 6.79㎡
조 경 경 시 설	소 계		시당동 41번지	17.64	17.64				1	시당동 41번지	17.64	17.64			1	증감없음
	그늘시설	①	"	17.64	17.64				1	①	17.64	17.64			1	증감없음
휴 양 상 시 설	소 계		시당동 41번지						10	시당동 41번지					10	증감없음
	평의자	②	"						10	②					10	증감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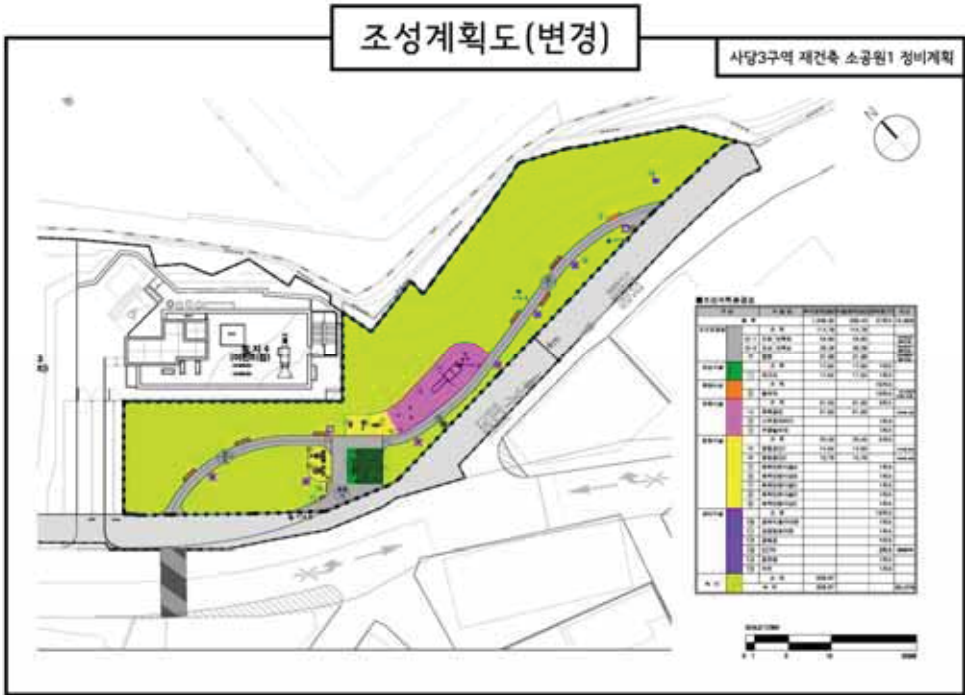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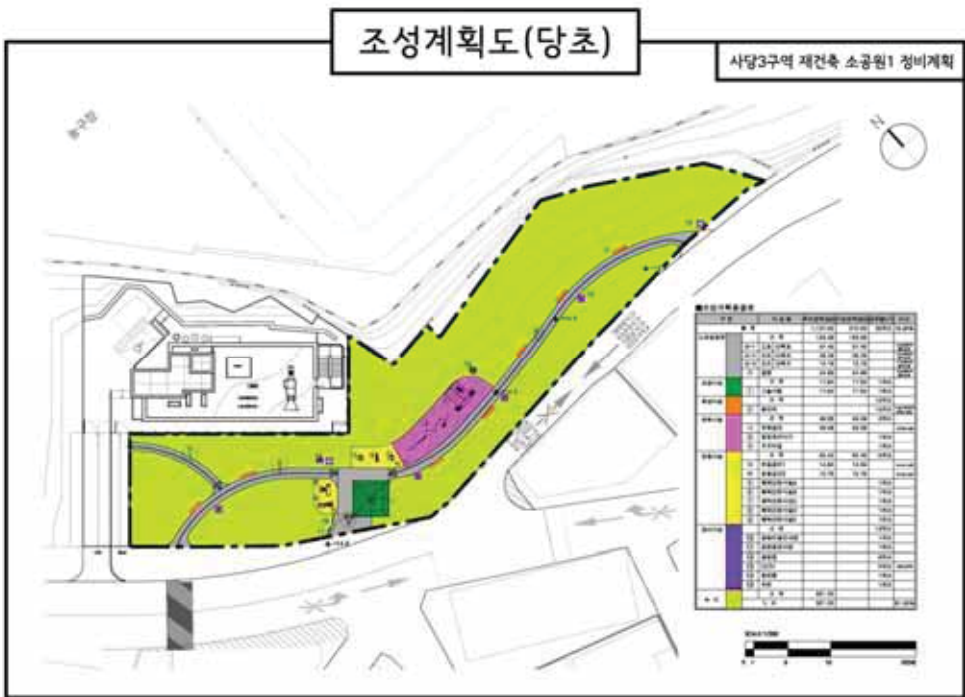
구 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 회 시 설	소 계		서당동 41번지	49.08	49.08				2		서당동 41번지	51.63	51.63				2	
	유회공간	나	"	49.08	49.08					나	"	51.63	51.63					증 2.55㎡
	정검목 건너기	③	"						1	③	"						1	정검을 증감없음
	폐포마집	④	"						1	④	"						1	정검을 증감없음
안 보 시 설	소계		서당동 41번지	25.40	25.40				5		서당동 41번지	25.40	25.40				5	
	운동공간1	다	"	14.64	14.64					다	"	14.64	14.64					증감없음
	운동공간2	라	"	10.76	10.76					라	"	10.76	10.76					증감없음
	체력단련 시설A	⑤	"						1	⑤	"						1	증감없음
	체력단련 시설B	⑥	"						1	⑥	"						1	증감없음
	체력단련 시설C	⑦	"						1	⑦	"						1	증감없음
	체력단련 시설D	⑧	"						1	⑧	"						1	증감없음
	체력단련 시설E	⑨	"						1	⑨	"						1	증감없음

구 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 리 시 설	소개		시당동 41번지							12		시당동 41번지						13	
	공원이용 안내판	⑩	"							1	⑩	"						1	공간없음 증감없음
	공원명 표지판	⑪	"							1	⑪	"						1	공간없음 증감없음
	공원등	⑫	"							6	⑫	"						7	증 1개소
	CCTV	⑬	"							2	⑬	"						2	공간없음 증감없음
	분전함	⑭	"							1	⑭	"						1	공간없음 증감없음
	수전	⑮	"							1	⑮	"						1	공간없음 증감없음
누 계			시당동 41번지	921.50								시당동 41번지	838.87						감 82.63㎡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중 점	비 고
당초	합 계				80.60	98.49	산책로			
변경					66.00	83.08	산책로			감 15.41㎡
당초	산책로	3	1	1.2	46.20	57.45	산책로	동측진입부	가.광장	
변경				1.2	43.70	54.80	산책로	동측진입부	가.광장	감 2.65㎡
당초			2	1.2	22.30	28.28	산책로	서측진입부	가.광장	
변경				1.2	22.30	28.28	산책로	서측진입부	가.광장	증감없음
당초			3	1.0	12.10	12.76	산책로	어린이집 출입구	산책로2	
변경				-	-	-	-	-	-	폐지



도시계획시설(소공원2)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동작구 동작동 58-107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동수 (봉)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봉)	바닥면적 (㎡)
계	469.80	82.43			14	440.80	82.43			15	감 29.00㎡ (소공원 면적)
	소 계	80.10				80.10	80.10				
	산책로1	44.26				44.26	44.26				
	광장-가	35.84				35.84	35.84				
조 경 시 설											
휴 양 시 설	2.33	2.33			2	2.33	2.33			2	
유 희 시 설											
온 동 시 설											
편 의 시 설											
관 리 시 설	-	-			12	-	-			12	
누 지 및 기타	387.37					357.37					감 29.00㎡
시 설 율 (법정 20%)	(82.43㎡ / 469.80㎡) × 100% = 17.55%					(82.43㎡ / 440.80㎡) × 100% = 18.70%					
건 폐 율 (법정 5%)	(0 / 469.80㎡) × 100% = 0.00%					(0 / 469.80㎡) × 100% = 0.00%					

2. 시설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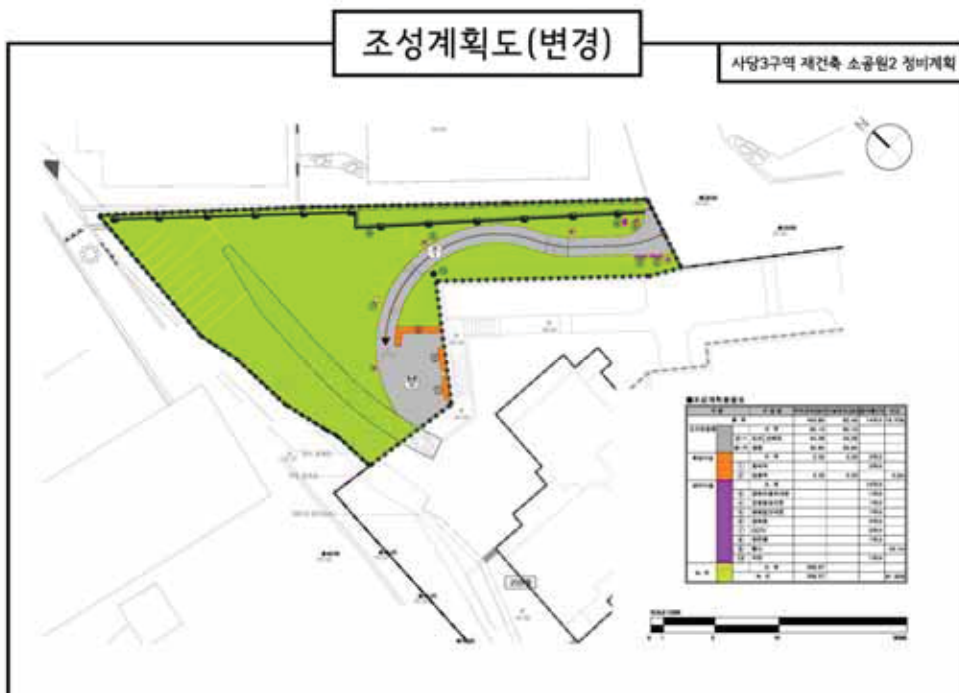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기 반 시 설	계		시당동 41번지	469.80	82.43				14		시당동 41번지	440.80	82.43				14	
	소 계		시당동 41번지	80.10	80.10						시당동 41번지	80.10	80.10					
	산책로	1	"	44.26	44.26					1	"	44.26	44.26					증감없음
	광 장	가	"	35.84	35.84					가	"	35.84	35.84					증감없음
후 앙 시 설	소 계		시당동 41번지	2.33	2.33				2		시당동 41번지	2.33	2.33				2	
	등의자	①	"						2	①	"						2	증감없음
	앉음벽	②	"	2.33	2.33				(5.0m)	②	"	2.33	2.33				(5.0m)	증감없음
관 리 시 설	소 계		시당동 41번지						12		시당동 41번지						12	
	공원이용 안내판	③	"						1	③	"						1	증감없음
	공원명표지 판	④	"						1	④	"						1	증감없음
	공원길안내 판	⑤	"						1	⑤	"						1	증감없음
	공원등	⑥	"						5	⑥	"						5	증감없음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 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원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원면적 (㎡)	구 조 규 모	건 축 물	공작물 (기)		
	CCTV	①	"						⑦	"						2	증감없음
	보전함	⑧	"						⑧	"						1	증감없음
	헬스	⑨	"						⑨	"						(43.1㎡)	증감없음
	수전	⑩	"						⑩	"						1	증감없음
부 지			사당동 41번지	387.37						사당동 41번지	358.37						합 29.0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27.00	44.26	산책로 진입로			
변경					27.00	44.26	산책로 진입로			
당초	산책로	3	1	1.5	27.00	44.26	진입로	동측진입구	가.광장	
변경			1	1.5	27.00	44.26	진입로	동측진입구	가.광장	증감없음



◆ 관악구고시 제2022-124호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1호(2015.04.30.), 제2017-353호(2017.09.28.), 제2019-285호(2019.08.29.)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획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서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취지

○ 획지계획[공동개발(지정)] 변경에 따른 토지 조서 변경

2. 도시관리계획(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번호	기 정			변 경			비고
	지번	면적 (㎡)	획지계획	지번	면적 (㎡)	획지계획	
12 (신림동) (도곽C)	1425-28	398.6	공동개발 (지정)	1425-28	160.6	단독개발	
	1425-29			1425-29	238.0	단독개발	

※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 없음

※ 공동개발 변경 후 1425-28, 30, 31호 공동개발

3. 관계도면 : 붙임 지형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

4.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6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용

[신림동 1425-28 외 1필지(1425-29)]

< 획지에 관한 결정(기정)도 >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지적선	벽면한계선
대지분할가능선	주차출입방향
획지계획선	공동주차출입구
공동개발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공동개발권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개공지	주차장설치의무
침상형공개공지	면제지역
섬지형공지	건폐율완화구역
공공보행통로	(70% 이내)
보차혼용통로	건폐율완화구역
가구번호	(60% 이내)

60%	40m
450/660%	U2

<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도 >



범 례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지적선	벽면한계선
대지분할가능선	주차출입방향
획지계획선	공동주차출입구
공동개발지정	차량출입불허구간
공동개발권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개공지	주차장설치의무
침상형공개공지	면제지역
섬지형공지	건폐율완화구역
공공보행통로	(70% 이내)
보차혼용통로	건폐율완화구역
가구번호	(60% 이내)

60%	40m
450/660%	U2

◆ 관악구고시 제2022-125호
도시관리계획(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경미한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2호(2009.08.27.)로 결정 고시된 우리구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의결된 획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경미한 변경) 취지

○ 획지계획[단독개발(기정), 자율적 공동개발(변경)] 변경에 따른 토지 조서 변경

2. 도시관리계획(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기 정			변 경			비 고
지번	면적 (㎡)	획지계획	지번	면적 (㎡)	획지계획	
봉천동 1687-13	336.8	단독개발	봉천동 1687-13	471.8	자율적 공동개발	○자율적공동개발: 기준용적률 × α - 3필지이하 α=0.04
봉천동 1687-14	135.0	단독개발	봉천동 1687-14			

※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 : 변경 없음

※ 용적률 완화항목 중 권장용도(업무시설) 이행 사항(면적 등) 유지해야 함

3.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6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고시 제2022-19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00-62호(2000.10.2.)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1-218호(2021.10.2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주차장) 부지에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사업의 실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01-6, 298, 298-1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사업
- 명 칭 : 구룡공원주차장 신축

다. 면적 및 규모

- 사업시행지 면적 : 2,575.9㎡
- 건축면적 : 900.11㎡
- 연 면 적 : 9,792.62㎡
- 층 수 : 지하4층/지상4층
- 건축물 용도

주 시설		부대 및 편익시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주차장 (지하~4층, 163면)	7,317.66	4층	인공지능육성센터	557.79
		3층	느티나무쉼터	620.69
		2층	서리풀노리학교	784.54
		1층	늘봄카페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511.94
		소계		2,474.96
총 계		9,792.62㎡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초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23.03.

－ 준공예정일 : 2025.07.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서초구 양재동 301-6	주차장	998.5	-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
2	서초구 양재동 298	공원	1487.4	-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주차장 중복결정
3	서초구 양재동 298-11	도로	90	-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	주차장 중복결정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주차관리과(02-2155-7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고시 제2022-18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82호(2008. 12. 2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400호(2015. 12.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1호(2021. 11. 4.)로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2-176호(2022. 10. 20.)로 실시계획 고시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외 남측 소로2-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토지분할 내용 등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강동구 성내동 43-18호(일부), 48-37호, 48-69호

※ 강동구 성내동 48-69호(263㎡)는 당초 성내동 48-50호(310㎡)가 48-69호(263㎡), 48-50호(47㎡)로 각각 토지분할 완료되어 등기 정리(2022. 10. 24.)된 사항임

※ 금번 실시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의 명칭: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외 남측 소로2-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라. 사업의 규모: 폭원 8m(3.8m~4.5m), 연장 91m, 면적 723㎡(384㎡)

※ ()는 금번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는 폭원과 면적임

마.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2024. 3월 말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있음): 따로 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강동구 성내동 48-37호 [소유자: 국(기획재정부), 면적: 76㎡]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의하여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자. 관계서류(게재 생략)는 강동구 도시계획과(☎02-3425-6053)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조서

□ 사업명: 성내3재정비촉진구역 외 남측 소로2-8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가.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공부	편입	주 소	성 명	지 분	권리의 종류	관계인	
										주 소	성 명
1	강동구 성내동	43-18	도	1,068	45		강동구				
2	강동구 성내동	48-37	대	76	76		국(기획재정부)				
3	강동구 성내동	48-69	도	263	26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 신탁자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10층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수탁자) ※ 신탁자: 주식회사코블스톤	79.52/503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14길 47-3(상봉동)	김**	2/1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62가길 36-8(시흥동)	김**	2/19			
						경기도 군포시 용호1로21번길 15, 101동 701호 (당동, 용호마을이-편한세상)	김**	2/19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52길 7, 501호(다림동)	김**	2/19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성수동2가)	김**	4/19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길 7-6(성수동2가)	김**	4/19			
계				1,407	384						

※ 강동구 성내동 48-69호(263㎡)는 당초 성내동 48-50호(310㎡)가 48-69호(263㎡), 48-50호(47㎡)로 각각 토지분할 완료되어 등기 정리(2022. 10. 24.)된 사항이며, 강동구 성내동 48-37호(76㎡)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강동구에 무상귀속됨

나. 수용되거나 사용할 물건의 세목조서: 해당없음

구 공 고

◆ 광진구공고 제2022-120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89호(1972.7.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광진구 고시 제2020-9호(2020.02.06.)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내용 중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합니다.
3.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2)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광진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397-2~420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도로 폭 6m, 연장 13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정) 2020.02.06. ~ 2022.12.31.

-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첨

사.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로과(☎02-450-7852)

토 지 조 서

- ☐ 사업시행자 : 광진구청장
☐ 사업명 : 능동 397-2~420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지번 (원래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		
1	능동 396-5 (능동 396-3)	대	81	81	최○성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0, 101동 1001호 (광정동, 위계할포르지오)							
					손○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28길 23-3 (능동)							

◆ 광진구공고 제2022-1213호
**위커힐 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2-1번지 위커힐 호텔 부지 일대에 위치한 위커힐 온천의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온천법」 제10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광진구청장

1. 온천구역 개요

가. 위치(면적)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2-1번지 일대(149,800㎡)

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서울시고시 제1996-211호('96.8.6.)

※ 지형도면 고시 제2008-459호('08.12.18.)

다. 온천우선이용권자 : SK네트웍스

라. 온천현황(총 4공)

구 분	위 치	수 위(m)	굴착심도(m)	적정양수량(㎡/d)	용출온도(℃)
1 공	광장동 5-90임	47.94	817	180	29.5
2 공	광장동 5-15대	58.31	512	379	27.6
3 공	광장동 22-1대	39.45	713	399	28.0
4 공	광장동 5-98임	67.20	670	361	26.5

2. 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사유

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3. 관계서류 열람

가. 열람기간: 2022. 11. 3. ~ 2022. 11. 17.(14일간)

나.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다. 의견제출: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Fax: 02-411-1753, E-mail: kimboye@gwangjin.go.kr

라.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90)로 문의 바랍니다.

◆ 성북구공고 제2022-1457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 열람공고

1.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70호(2021.6.17.)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개운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개운산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산2-89 일대

다. 면 적 : 210,502㎡

라. 주요 변경내용

- 1) 기반시설 : 22,320㎡ → 24,166.5㎡ (증 1846.5㎡)
- 2) 조경시설 : 35㎡ → 135㎡ (증 100㎡)
- 3) 휴양시설 : 1,479㎡ → 3,840㎡ (증 2,361㎡)
- 4) 유희시설 : 1,362㎡ → 1,508㎡ (증 146㎡)
- 5) 운동시설 : 25,349㎡ → 6,346㎡ (감 19,033㎡)
- 6) 교양시설 : 827㎡ → 6,227㎡ (증 5,400㎡)
- 7) 편익시설 : 987㎡ → 1,047㎡ (증 60㎡)
- 8) 녹지 및 기타 : 156,073㎡ → 167,046.5㎡ (증 10,973.5㎡)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서류)

바.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사. 열람장소 : 성북구청 9층 공원녹지과 ☎ 02-2241-3663)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운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산2-89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수정안함)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 물 (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동)	건축면적(㎡)	연면적(㎡)		
계		208,618.0	40,893	6	2,255.72	7,993.56	32	210,502.0	31,803.5	6	2,255.72	7,993.56	34	감) 9,089.5㎡
기반 시설	소 계	22,320	10,668					24,166.5	12,514.5					증) 1,846.5㎡
	도 로	18,450	6,798 (11,652)					22,104.5	10,452.5 (11,652)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광 장	3,870	3,870					2,062	2,062					감) 1,808.0㎡
조 경 시 설		35	35	1	34.35	34.35	23	135	135	1	34.35	34.35	15	증) 100㎡
휴 양 시 설		1,479	1,479				1	3,840	3,840				1	증) 2,361㎡
유 휴 시 설		1,362	1,362				3	1,508	1,508				3	증) 146㎡
운 동 시 설		25,349	25,349	1	1,975.43	7,713.26		6,346	6,346	1	1,975.43	7,713.26	10	감) 19,003.0㎡
교 양 시 설		827	827					6,227	6,227					증) 5,400㎡
편 익 시 설		987	987	3	174.74	174.74	5	1,047	1,047	3	174.74	174.74	5	증) 60㎡
관 리 시 설		186	186	1	71.2	71.2		186	186	1	71.2	71.2		-
녹지, 기타		156,073						167,046.5						증) 10,973.5㎡
공원시설율(법정40%)		(40,893 / 208,618.0) x 100% = 19.60%						(31,803.5 / 210,502.0) x 100% = 15.11%						
공원건폐율(법정10%)		(2,255.72 / 208,618.0) x 100% = 1.08%						(2,255.72 / 210,502.0) x 100% = 1.07%						

2.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208,618.0	40,893		6동	2,255.72	7,993.55	32			210,502.0	31,803.5		6동	2,255.72	7,993.55	34	감) 9,089.5㎡	
소계			22,320	10,668								24,166.5	12,514.5						증) 1,846.5㎡	
도로			18,450	6,798 (11,652)								22,104.5 (11,652)	10,452.5 (11,652)						증) 3,654.5㎡	
진입광장	가	2개소	1,701	1,701						가		1,728.0	1,728.0						증) 27㎡	
	가-1	돈암동 74-28 공	1,117	1,117						가-1		1,117.0	1,117.0							
	가-2	돈암동 82-211 공	584	584						가-2		584.0	584.0							
	가-3									가-3		27.0	27.0						증) 27㎡ 신설	
휴게광장	나	3개소	2,169	2,169						나		334.0	334.0						감) 1,835.0㎡	
	나-1	종암동 54-207 입	1,419	1,419						나-1									폐지	
	나-2	종암동 산 2-62 입	334	334						나-2		334.0	334.0							
	나-3	인암동5가 산 1-95 입	416	416						나-3									폐지	
소계			35	35		1	34.35	34.35	23			135.0	135.0		1	34.35	34.35	15	증) 100㎡	
조경 시설	①	12개소							23	①	11개소								15	
	①-1	돈암동 82-206 공							2	①-1	돈암동 산3-15 입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①-2	돈암동 산 6-1 공							1	①-2	돈암동 82-206 공							2	
	①-3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3	인암동5가 산 16-1							2	
	①-4	인암동5가 산 1-95 임							6	①-4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5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5	인암동5가 산 1-95 임							2	
	①-6	인암동5가 산 1-95 임							2	①-6	돈암동 산 6-22							1	
	①-7	중암동 산 2-18 임							2	①-7	돈암동 산 6-22							1	
	①-8	죽암동 54-202 임							1	①-8	돈암동 산 6-21 임							1	
	①-9	돈암동 74-28 공							2	①-9	돈암동 산 2-119 임							1	
	①-10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10	돈암동 산 2-119 임							1	
	①-11	돈암동 산 3-3 임							3	①-11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12	인암동5가 산 1-95 임							1	①-12									
	정자	1	중암동 산 2-65 임	35	35		1	34.35	34.35	1	1	중암동 산 2-65 임	35	35		1	34.35	34.35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후방 시설	전망데크										너		100	100					신설
	소계			1,479	1,479				1			3,840.0	3,840.0				1	증) 2,361.0㎡	
	다	2개소	1,479	1,479					다	3개소	3,840.0	3,840.0						증) 2,361.0㎡	
	다-1	증암동 산 2-65 임	551	551					다-1	증암동 산 2-65 임	551.0	551.0							
	다-2	돈암동 산 3-3 임 외	928	928					다-2	돈암동 산 3-3 임 외	928.0	928.0							
										다-3	증암동 산 2-141 외	2,361.0	2,361.0					신설	
소계			1,362	1,362				3				1,508.2	1,508.2				3	증) 146.2㎡	
어린이 놀이 터	라	1개소	1,362	1,362				3	라	2개소	2개소	1,508.2	1,508.2				3		
	라-1	돈암동 82-211 공	1,362	1,362				3	라-1	돈암동 82-211 공	1,362.0	1,362.0					3		
									라-2	돈암동 626-26	146.2	146.2						신설	
	SPACE NET	돈암동 82-211 공						1	③-1	③-1	돈암동 82-211 공					1			
	넉글 넘기	돈암동 82-211 공						1	③-2	③-2	돈암동 82-211 공					1			
조합 놀이대	③-3	돈암동 82-211 공						1	③-3	③-3	돈암동 82-211 공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소계			25,349	25,349		1	1,975.43	7,713.26				6,346.0	6,346.0		1	1,975.43	7,713.26	10	합) 19,003.0㎡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마	도암동 산 6-1 공	1,134						마		1,114.0	1,114.0						합) 20.0㎡
		바	16개소	8,661						바	1개소	1,426.0	1,426.0						합) 7,235.0㎡
		바-1	도암동 산 6-1 공	1,008						바-1									
		바-2	중암동 산 2-62 임	936						바-2									
		바-3	도암동 산 6-1 공	510						바-3									
		바-4	중암동 산 2-42 공	397						바-4									
		바-5	도암동 74-28 공	383						바-5									
		바-6	도암동 74-28 공	299						바-6									
		바-7	도암동 74-28 공	329						바-7									
		바-8	도암동 74-28 공	266						바-8									
		바-10	인암동5가 산 1-95 임	499						바-10									
	바-11	인암동5가 산 1-95 임	642						바-11										

안녕하세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바-12	인암동5가 산 1-95 임	589	589					바-12								
	바-13	인암동5가 산 1-95 임	643	643					바-13								
	바-14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4								
	바-15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5								
	바-16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6								
	바-17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7								
	바-17	돈암동 산 6-1 공	540	540					바-17								
농구장	사	돈암동 산 3-3 임	57	757													감) 757.0㎡
테니스장	아	인암동5가 산 1-95 임	2,099	2,099					아	인암동5가 산 1-95 임	1,111.0	1,111.0					감) 988.0㎡
체력단련장	자	3개소	794	794					자								감) 794.0㎡
	자-1	돈암동 74-28 공	454	454					자-1								
	자-2	돈암동 산 6-1 공	106	106					자-2								
	자-3	돈암동 산 6-1 공	234	234					자-3								
다목적 운동장	차	중암동 산 2-119 임 외	3,995	3,995		1	1,975.43	7,713.26	차	중암동 산 2-119 임 외	2,695	2,695		1	1,975.43	7,713.26	감) 1,300.0㎡

안민배시설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스포르 센터 및 골프 아카데미	3	인입동5가 산 1-93 입	7,99	7,909				3								폐지	
	소계			827	827						6,227.0	6,227.0					증 5,400㎡	
	아외무대	카	돈암동 74-28 공	827	827				카	돈암동 74-28 공	827.0	827.0						
	유아숲 체험장								너	돈암동 산 6-1 공	5,400.0	5,400.0					신설	
편익 시설	소계			987	987		3	174.74	174.74	5		1,047.0	1,047.0	3	174.74	174.74	5	증 60㎡
	주차장	타	인입동5가 산 1-95 입	652	652				타-1	인입동5가 산 1-95 입	712	712					증 60㎡	
	화장실	4	2개소	299	299		2	139.4	139.4	4		299	299		2	139.4	139.4	
		4-1	돈암동 산 6-1 공	144	144		1	69.7	69.7	4-1	돈암동 산 6-1 공	144	144		1	69.7	69.7	
음수장	4-2	돈암동 산 6-1 공	155	155		1	69.7	69.7	4-2	돈암동 산 6-1 공	155	155		1	69.7	69.7		
	②	5개소						5	②	5개소						5		
	②-1	종암동 산 2-20 입						1	②-1	종암동 산 2-20 입						1		
	②-2	돈암동 74-28 공						1	②-2	돈암동 74-28 공						1		
	②-3	돈암동 74-28 공						1	②-3	돈암동 74-28 공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㉔-4	돈암동 82-211 공						1	㉔-4	돈암동 82-211 공						1	
	㉔-5	돈암동 산 3-3 임						1	㉔-5	돈암동 산 3-3 임						1	
전망대		돈암동 산 3-3 임	36	36	1	35.34	35.34		2	돈암동 산 3-3 임	36	36	1	35.34	35.34		
관 리 시 설	소 계		186	186	1	71.2	71.2				186	186	1	71.2	71.2		
	녹지관리 조소	5		186	1	71.2	71.2		5		186	186	1	71.2	71.2		
누계 및 기타			156,073								167,046.5						증) 10,973.5㎡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2,017	6,798				
변경					3,886	10,452.5				증) 3,654.5㎡
당초	중로	소 계			971	11,652				
당초		3	1	12	971	11,652	도시계획도로	83-131 도	산 1-28 임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당초	소로	소 계			1,123	5,202.5				증) 1,027.5㎡
변경					1,101	6,230.0				
당초		2	1	8	306	2,448	진입로	중로 3-1	산 2-18 임	감) 376.5㎡
변경		2	1	8	213	1795	진입로	산 2-18 임	산 1-94 임	
당초		3	1	4	37	148	부진입로	산 1-3 임	산 1-3 임	증) 954㎡
변경		3	1	8	124	1,102	부진입로	산 1-77 도	산 1-94 임	
당초		3	2	4	307	1,228	부진입로	산 82-255임	산 2-18 임	감) 788㎡
변경		3	2	5	117	440	부진입로	산 6-1 공	산 2-18 임	
당초		3	3	4	387	1,548	부진입로	산 2-18 임	산 6-3 임	
변경		3	3	4	399	1,548	부진입로	산 2-5 임	54-198 도	
당초		3	4	4	215	860	연결로	산 2-62 임	산 6-3 임	
변경		3	4	4	215	860	연결로	산 3-15 임	산 2-5 임	
신규		3	5	6	33	235	연결로	산 1-93 임	산 1-93 임	
신규		3	6	6	39	250	연결로	산 1-55 임	산 1-55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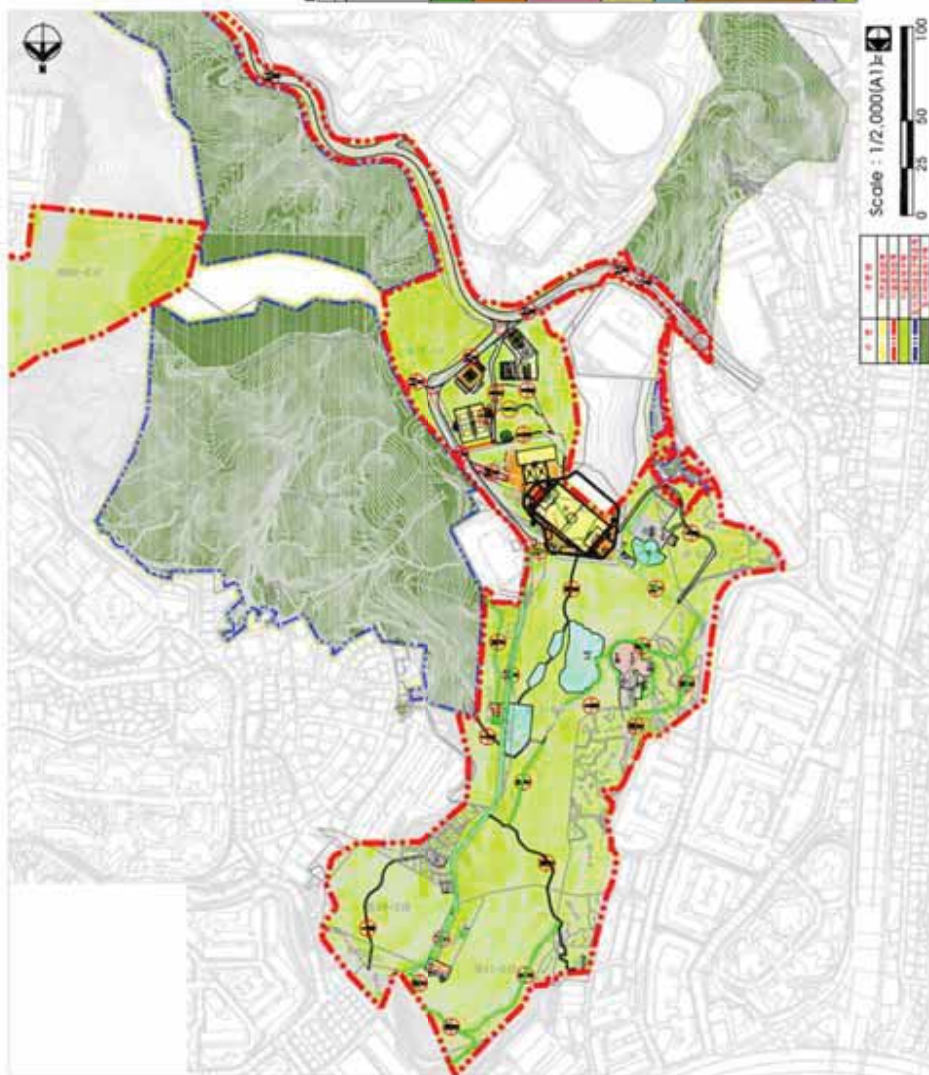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당초	산책로	소 계			894	1,595.5				
변경					2,785	4,222.5				증) 2,627㎡
당초			1	1.5	176	264	산책로	77-102 대	125-172 대	
당초			2	1.5	47	70.5	산책로	소로 3-3	산 2-42 임	
당초			3	1.5	162	243	산책로	산 6-1 임	82-326 대	
변경			3	1.5	232	368.0	산책로	82-125 공	산 2-42 공	
당초			4	2.0	274	548	산책로	산 6-1 임	산 6-21 임	
변경			4	2.0	223	636	산책로	81-2 대	산 6-22 임	
당초			5	2.0	94	188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5	2.0	94	195	산책로	산 1-55 임	산 1-94 임	
당초			6	2.0	40	80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6	2.0	40	57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당초			7	2.0	40	80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7	2.0	40	14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당초			8	2.0	36	72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8	2.0	36	117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당초			9	2.0	25	50	산책로	산 1-55 임	산 1-55 임	
변경			9	2.0	25	449	산책로	산 1-95 임	산 1-95 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 장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m)	(m)	(㎡)				
신규	산책로		20	1.5	76	339	산책로	산 6-1 공	626-2 공	
신규			21	1.5	247	249	산책로	산 3-16 임	산 3-15 임	
신규			22	1.5	212	37	산책로	산 3-15 임	산 3-15 임	
신규			23	1.5	49	159	산책로	산 1-18 임	산 3-15 임	
신규			24	2.0	121	242	산책로	산 2-42 공	산 2-42 공	
신규			25	1.5	137	258	산책로	15-4 공	산 6-1 공	
신규			26	2.0	148	302	산책로	82-206 공	81-2 대	
신규			27	1.5	65	141	산책로	산 6-1 공	산 6-1 공	
신규			28	1.0	21	236	산책로	82-354 대	82-143 공	
신규			29	1.5	27	89	산책로	산 6-21 임	산 6-1 공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2,000

개운산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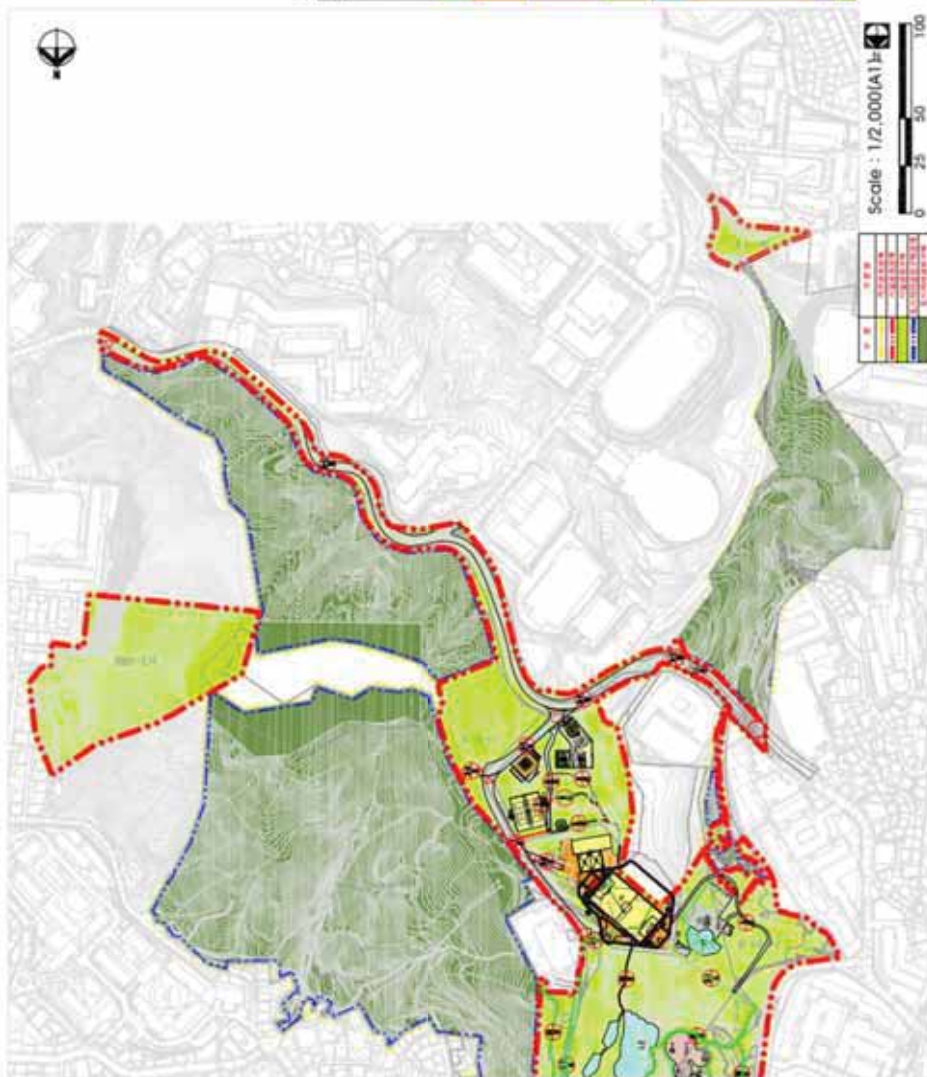


구분	구분명	면적(㎡)	비율(%)	비고
1	자연녹지	1,117,000	100.0	
2	자연녹지	1,117,000	100.0	
3	자연녹지	1,117,000	100.0	
4	자연녹지	1,117,000	100.0	
5	자연녹지	1,117,000	100.0	
6	자연녹지	1,117,000	100.0	
7	자연녹지	1,117,000	100.0	
8	자연녹지	1,117,000	100.0	
9	자연녹지	1,117,000	100.0	
10	자연녹지	1,117,000	100.0	
11	자연녹지	1,117,000	100.0	
12	자연녹지	1,117,000	100.0	
13	자연녹지	1,117,000	100.0	
14	자연녹지	1,117,000	100.0	
15	자연녹지	1,117,000	100.0	
16	자연녹지	1,117,000	100.0	
17	자연녹지	1,117,000	100.0	
18	자연녹지	1,117,000	100.0	
19	자연녹지	1,117,000	100.0	
20	자연녹지	1,117,000	100.0	
21	자연녹지	1,117,000	100.0	
22	자연녹지	1,117,000	100.0	
23	자연녹지	1,117,000	100.0	
24	자연녹지	1,117,000	100.0	
25	자연녹지	1,117,000	100.0	
26	자연녹지	1,117,000	100.0	
27	자연녹지	1,117,000	100.0	
28	자연녹지	1,117,000	100.0	
29	자연녹지	1,117,000	100.0	
30	자연녹지	1,117,000	100.0	
31	자연녹지	1,117,000	100.0	
32	자연녹지	1,117,000	100.0	
33	자연녹지	1,117,000	100.0	
34	자연녹지	1,117,000	100.0	
35	자연녹지	1,117,000	100.0	
36	자연녹지	1,117,000	100.0	
37	자연녹지	1,117,000	100.0	
38	자연녹지	1,117,000	100.0	
39	자연녹지	1,117,000	100.0	
40	자연녹지	1,117,000	100.0	
41	자연녹지	1,117,000	100.0	
42	자연녹지	1,117,000	100.0	
43	자연녹지	1,117,000	100.0	
44	자연녹지	1,117,000	100.0	
45	자연녹지	1,117,000	100.0	
46	자연녹지	1,117,000	100.0	
47	자연녹지	1,117,000	100.0	
48	자연녹지	1,117,000	100.0	
49	자연녹지	1,117,000	100.0	
50	자연녹지	1,117,000	100.0	
51	자연녹지	1,117,000	100.0	
52	자연녹지	1,117,000	100.0	
53	자연녹지	1,117,000	100.0	
54	자연녹지	1,117,000	100.0	
55	자연녹지	1,117,000	100.0	
56	자연녹지	1,117,000	100.0	
57	자연녹지	1,117,000	100.0	
58	자연녹지	1,117,000	100.0	
59	자연녹지	1,117,000	100.0	
60	자연녹지	1,117,000	100.0	
61	자연녹지	1,117,000	100.0	
62	자연녹지	1,117,000	100.0	
63	자연녹지	1,117,000	100.0	
64	자연녹지	1,117,000	100.0	
65	자연녹지	1,117,000	100.0	
66	자연녹지	1,117,000	100.0	
67	자연녹지	1,117,000	100.0	
68	자연녹지	1,117,000	100.0	
69	자연녹지	1,117,000	100.0	
70	자연녹지	1,117,000	100.0	
71	자연녹지	1,117,000	100.0	
72	자연녹지	1,117,000	100.0	
73	자연녹지	1,117,000	100.0	
74	자연녹지	1,117,000	100.0	
75	자연녹지	1,117,000	100.0	
76	자연녹지	1,117,000	100.0	
77	자연녹지	1,117,000	100.0	
78	자연녹지	1,117,000	100.0	
79	자연녹지	1,117,000	100.0	
80	자연녹지	1,117,000	100.0	
81	자연녹지	1,117,000	100.0	
82	자연녹지	1,117,000	100.0	
83	자연녹지	1,117,000	100.0	
84	자연녹지	1,117,000	100.0	
85	자연녹지	1,117,000	100.0	
86	자연녹지	1,117,000	100.0	
87	자연녹지	1,117,000	100.0	
88	자연녹지	1,117,000	100.0	
89	자연녹지	1,117,000	100.0	
90	자연녹지	1,117,000	100.0	
91	자연녹지	1,117,000	100.0	
92	자연녹지	1,117,000	100.0	
93	자연녹지	1,117,000	100.0	
94	자연녹지	1,117,000	100.0	
95	자연녹지	1,117,000	100.0	
96	자연녹지	1,117,000	100.0	
97	자연녹지	1,117,000	100.0	
98	자연녹지	1,117,000	100.0	
99	자연녹지	1,117,000	100.0	
100	자연녹지	1,117,000	100.0	

조성계획도[변경후]

개운산근린공원

SCALE=1/2,000



구분	구분명	면적(㎡)	비율(%)	비고
1	산림지역	1,234,567	45.2	
2	잔디밭	567,890	20.5	
3	운동장	345,678	12.8	
4	놀이기구장	234,567	8.7	
5	수역	123,456	4.6	
6	주차장	98,765	3.6	
7	기타	87,654	3.2	
합계		2,732,917	100.0	

◆ **성북구공고 제2022-1463호**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398호(2018.03.28.)로 열람공고 된 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2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열람내용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구 역 명 :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 도서 및 도면으로 같음

나. 열람기간 : 2022.11.03.(목) ~ 2022.11.17.(목)

다. 열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라. 의견제출 :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계획과(☎02-2241-26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북구공고 제2022-1465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283호(2022.06.30)로 조성계획 최종 결정 및 성북구고시 제2020-70호(2020.05.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성북구고시 제2020-147호(2020.08.13) 및 성북구고시 제2022-78호(2022.04.28)로 변경 고시된 『2020 북한산근린공원 조성』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이 완료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2020 북한산근린공원조성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다.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 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규모	실시계획 인가	사업기간
2020 북한산근린공원 조성	성북구 정릉동 산1-382	941㎡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70호 (2020.5.14.)	2020. 5.14. ~ 2022.10.21.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 위치도





◆ 금천구공고 제2022-1791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53-9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금 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22. 11. 3. ~ 11. 17. (14일간)

나. 열람장소 : 금천구청 11층 도시계획과(☎02-2627-1554, fax 02-2251-1715)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취지

- 1) 매년 금천구 관내 주택 및 사업체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증가할 납세자의 수요와 세무민원을 감안하였을 때 원활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공공청사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결정하고자 함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조서

- 1)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세무서	금천구 독산동 953-9	-	증)1,983.6	1,983.6	-	

-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물의 범위 결정

건 폐 율	용 적 른	높이(층)	비고
50% 이하	250% 이하	6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마. 관련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 서초구공고 제2022-2071호
『방배숲도서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방배숲도서관』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 모	근무(채용) 인원	개관(예정)
방배숲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26-1	연면적 1,635.04㎡ (지하2층/지상1층)	14명 (관장1, 직원13)	2023. 5월
층별 현황	지상1층 : 세미나실, 사무실, 수서실			
	지하1층 :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키즈룸, 중앙정원 등			
	지하2층 : 전기실, 기계실, 창고, 용역원실			

2.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3. 위탁업무

- 가.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운영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부대시설 포함)
- 나. 도서 대출·반납 관련 업무, 도서자료 관리
- 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 홍보, 진행
- 라. 도서관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반업무

4. 위탁조건

- 가. 위탁대상 도서관을 수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기관의 사업 추진 및 영리목적에 이용 금지
-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 다. 관련 법규 및 조례,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 준수
- 라.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
- 마. 구의 주요 추진시책에 적극 참여 및 협조

5. 신청자격

다음 가~라의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

- 가.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술수준, 재정능력,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 나. 서리풀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입지적 특징을 살려 자연친화적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 다.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기관
- 라. 최상의 독서문화 진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단체·기관

6. 신청 제외대상

- 가. 최근 5년 이내(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도서관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기관
 - 나. 최근 5년 이내(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기관
 - 다.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기관
 -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기관
- ※ 상기 가~라의 해당사항을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 무효 처리

7. 신청서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2. 10. 27. ~ 2022. 11. 09.(14일간)
 - 나. 접수기간 : 2022. 11. 07. ~ 2022. 11. 09.(3일간)
- ※ 접수 후 변경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접수장소 : 서초구청 문화관광과(도서관팀, 서초구청 본관4층)
 -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마. 접수자격 : 법인·단체·기관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를 소지한 자
- ※ 접수시간은 평일(월~금)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신청서 및 제출서식은 서초구청 홈페이지(www.seocho.go.kr)에 게시

8. 제출서류

- 가. 위탁운영신청서(붙임1) - 1부
- 나.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법인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 - 각 1부
- 다.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각 1부
- 라. 대표자 및 임원 이력서 - 각 1부
- 마. 서면심사자료(붙임2) - 2부 (원본1부, 사본1부, 첨부자료 모두포함)
- 바. 위원회심사자료(붙임3) - 12부 (원본1부, 사본11부, 첨부자료 모두포함)
- 사. 사업설명자료(PPT출력물, 기타 참고자료포함, 10분이내 발표) - 12부, 파일제출

9. 서면심사자료(마), 위원회심사자료(바), 발표자료(사) 작성 시 유의사항

- 가. 발표자료(PPT)는 저장매체(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
 - 나. 서면심사자료 및 위원회심사자료 작성방법 (붙임2 ~ 붙임3)
- 서면심사자료와 위원회심사자료는 스프링으로 편철하되, 별도로 편철함

- 제본 시 목차는 ‘방배숲도서관 위탁 심사 기준표’ 순서대로 A4용지 (세로)로 좌 편철 하
되,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양면 제출
- 위원회심사자료 제출 시 요약서를 A4용지 2장 이내로 요약·작성하여 별도 제출
- 심사자료 중 일부 첨부서류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및 맨 뒷장에 별도 항목으로 제출
- 다. 제출서류의 발급일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해 인정
- 부동산관련 재산입증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및 부채증명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발급

10. 위탁운영단체 선정 및 발표

- 가.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서면심사(정량평가) 및 도서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정
성평가) 후 최고득점 법인(단체)이나 기관을 위탁운영체로 선정
- ※ 위탁운영 신청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 나. 심사방법 : 사업설명회 신청접수 순으로 법인대표가 운영계획 발표(PPT, 10분 이내),
심의위원 질의·응답 등으로 실시(※ 불참 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다. 심사항목 : 2개 항목(적격성, 사업능력 : 상세사항 붙임 참고)
- 라. 결과발표 : 개별통지
 - 법인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법인관계자가 대리참석 시 법인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간주
 - 심의위원회에서 각 위원별 평가 총점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
가점수를 평균한 값을 최종평가 점수로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
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
 - 서면심사 및 위원회심사 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위탁운영 대상자로 선정하
며,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시 재공고함
 - 결과 점수가 동점일 경우 수탁체의 사업수행능력(정성), 적격성(정량)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11. 기타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함
-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를 약정 체
결함
- 다. 관련규정, 현지어건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부적
격 판정 등 불이익은 모두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
준수 하여야 함
- 라. 최종 선정된 단체는 방배숲도서관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 공증 및 계약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 이행보증보험은 ‘구’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위탁기간 동안 1년 단위 재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권은 원본으로 제출
- 마. 본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회는 별도로 갖지 않으며, 제출양식은 공고 시 별첨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별도 교부 하지 않음
- 바. 기타 문의사항은 서초구청 문화관광과(02-2155-8636 담당: 김진설)로 문의

◆ 서초구공고 제2022-2079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08호(1975.06.23.)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되고, 서초구고시 제2022-70호(2022.3.3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반포동 19-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19-3, 19-1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명칭 : 호남선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대수선 및 용도변경)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전체 면적 및 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지역, 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여객자동차정류장			-
대지면적	59,149.40 ㎡			-
건축규모	지하 5층, 지상 32층			-
주 용 도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
	기존	변경인가 (금회)	증 감 (금회-기존)	-
건축면적	25,738.34 ㎡	25,738.34 ㎡	변경없음	-
연 면 적	288,322.22 ㎡	288,048.33 ㎡	- 273.89 ㎡	금회 변경사항
용 적 륜 산정연면적	162,658.92 ㎡	162,410.40 ㎡	- 248.52 ㎡	금회 변경사항
건 폐 율	43.51 %	43.51 %	변경없음	-
용 적 율	275.00 %	274.58 %	- 0.42 %	금회 변경사항

- 시설별 면적

구분	시설용도		기 존	변경인가 (금회)	증감(㎡) (금회-기존)	시설내비율 (%)		
			면적 (㎡)	면적 (㎡)		기 존	금회	
운수 시 설	주 시 설	대합실	9,796.35	9,812.76	+ 16.41	77.05	77.09	
		승강장1) (승차대기장)	실내	1,436.73	1,436.73			0.00
			실외	536.30	536.30			0.00
		정류장소2) (승하차장)	실내	117.23	117.23			0.00
			실외	2,224.42	2,224.42			0.00
		사무실		1,428.32	1,428.32			0.00
		세차장3)	실내	265.74	265.74			0.00
			실외	301.23	301.23			0.00
		박차장4)		13,995.69	13,995.69			0.00
	전체공유		3,621.56	3,621.56	0.00			
	부대 시설	정비고	927.07	927.07	0.00	10.43	10.43	
		주유소	210.69	210.69	0.00			
		부속시설(매표소 등)	3,385.59	3,385.59	0.00			
		가스정압실	42.00	42.00	0.00			
	편의 시설	소화물취급소	164.38	164.38	0.00	12.52	12.48	
		식당, 소매 등	5,314.75	5,299.75	- 15.00			
	운수시설 소계			43,768.05	43,769.46	+ 1.41	100.00	100.00
비운 수 시 설	숙박시설		43,588.74	43,576.32	- 12.42	16.66	16.67	
	판매시설		143,458.56	143,470.75	+ 12.19	54.84	54.90	
	문화 및 집회		3,023.71	3,023.71	0.00	1.16	1.16	
	업무시설		3,583.76	3,583.76	0.00	1.37	1.37	
	운동시설		9,954.44	9,954.44	0.00	3.81	3.81	
	자동차관련시설		123.93	123.93	0.00	0.05	0.05	
	근린생활시설		654.72	654.72	0.00	0.25	0.25	
	주차장		57,223.95	56,948.88	- 275.07	21.86	21.79	
	소 계		261,611.81	261,336.51	- 275.30	100.00	100.00	
합 계 (운수+비운수)			305,379.86	305,105.97	- 273.89			
합계-1 (옥외시설제외)			288,322.22	288,048.33	- 273.89			

※ 승강장, 정류장소, 박차장, 세차장 실외면적은 시설면적에 산입 되나, 건물면적 산정시 제외. (주 1,2,3,4)

※ 운수시설 면적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7' 에 따른 별표의 시설기준이상 확보 함.

－ 대수선 (금회변경사항)

구 분	해당층	시설용도	면적(㎡)	비 고
대수선	지하1층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25.37	비시설 변경사항
	지상1층	판매시설	(신설) 37.46	
		판매시설	(철거) -116.58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25.37	
	지상중1층	판매시설	(신설) 37.46	
		판매시설	(철거) -118.27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25.37	
	지상2층	숙박시설	(바닥면적 제외) -12.42	
		판매시설	(바닥면적 제외) -12.95	
기재사항변경	지상1층	판매시설	-12.48	비시설 변경사항

－ 용도변경사항 상세 (금회변경사항)

층별	구분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인 가(금회)		비 고
			용 도	면적(㎡)	용 도	면적(㎡)	
	지하3층	용도변경	주차장	100.61	판매시설(창고)	100.61	비시설 용도변경 (주차장→판매시설·창고)
	지하2층	용도변경	주차장	131.70	판매시설	131.70	비시설 용도변경 (주차장→판매시설)
지하1층	시설 내 변경	운수시설(편익시설)	15.00	운수시설(대합실)	15.00	운수시설 내 세부 용도변경	
		운수시설(대합실)	207.82	판매시설	207.82	운수시설→판매시설 용도변경	
	용도변경	판매시설	209.23	운수시설(대합실)	209.23		
		주차장	43.21	판매시설	43.21	주차장→판매시설 용도변경	
운수↔판매시설 용도변경					417.05		
운수시설 내 세부용도 변경					15.00		
비 운수시설 용도변경					275.52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주)신세계센트럴시티 대표 박주형(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9-3, 19-12)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 인가 완료일 ~ 2025. 6.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사용 또는 수용할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반포동	19-3	대	58,483.00	58,483.00	(주)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반포동	19-12	대	717.40	717.40	(주)신세계 센트럴시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반포동)			
계				59,149.40					

사.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7)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강동구공고 제2022-183호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호(2015. 8. 27.)로 결정(변경)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상일동 주택용지)에 공동주택 건립 시 계획기준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주민,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 장소로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청취-강동구-공고문)에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3일

강 동 구 청 장

가. 공고명: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나. 도시관리계획(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변경내용)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시 계획기준(신설)

구 분	기 정	신 설	변경사유서
공동주택 (아파트) 건립 시 계획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현재 결정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최대개발규모, 불허용도, 높이 등)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따른다.	상일동 주택용지 일대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변경)하여 의제처리가 가능한 개별 사업 추진 시 사업기간 단축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다.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라. 열람장소: 강동구청 도시계획과(02-3425-6033), 상일1동 주민센터(02-3425-743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도 열람 가능

마.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열람도서 제공)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성남시 맑은물관리 사업소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416번길 22	서울시계 내 한강 (풍납동 386-1)	고무보트 1척	오탁방지막 철거 및 설치	2022.5.9. ~ 2022.11.30	2022.10.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서울시계내 한강 (성산대교)	(선박5척) 737.2㎡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강교 도장)	' 22.10.26. ~ ' 22.12.31.	' 22.10.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건우통신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b동 1809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마포나루길 256)	(통신관로) 49.2㎡	수상레포츠통합센터 통신인입관로매설	' 22.10.26. ~ 11.30.	' 22.10.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동양티피티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18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전기관로) 210㎡	수상레포츠통합센터 전기인입관로매설	' 22.10.26. ~ 11.15.	' 22.10.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국토안전관리원	경상남도 진주시 예나로 128번길 24	서울시계내 한강 (행주대교~한강철교)	(선박2척) 409.52㎡	한강철교, 행주대교 정밀안전진단	' 22.10.24. ~ 12.31.	' 22.10.20.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계 내 한강 (동호대교)	선박 3척 (749㎡)	동호대교 보수공사	2022.7.1.~ 2022.11.30.	2022.10.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 내 한강 (가양대교 인근)	선박 2척 (338㎡)	영상촬영	2022.11.02. ~ 2022.11.04.	2022.10.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2-38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6 LG팰리스 1905호	서울시계내 한강 (마포구 상암동 496-119번지상 한강)	(선박29척) 5,079㎡	공사 투입을 위한 선박 정박대기장소	' 22.11.01. ~ ' 22.11.30.	' 22.10.26.

기 타◆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73호****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721번지 일원
 - 면 적: 6,2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관 매설
 - 내 역: 가스관 D=762mm, L=5,826m
5. 점용기간: 2022. 2. 13. ~ 2027. 6. 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83호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변경없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579-1, 519-13, 519-15 및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50번지 일원
 - 면 적: [당초] 5,668㎡, [변경] (영구) 6,447.3㎡, (일시) 1,882.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당초) 한강공원 내 적환장 및 진입도로 설치
(변경) 한강공원 내 적환장 및 진입도로(교량 등) 설치
 - 내 역: (당초) 적환장 A=4,018㎡, 컨테이너 7개소, 진입도로 B=5.5m, L=300m
(변경) 적환장 A=4,018㎡, 컨테이너 7개소, 진입도로 B=5.5m, L=300m,
교량 1개소(A=779.3㎡)
5. 점용기간: 2021.08.28. ~ 2026.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28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건설사업단장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설개로 10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374-14번지 일원
 - 면 적 : 1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강동나들목 육갑문 이설 및 통로암거 설치
 - 내 역 : 기존 육갑문 철거 및 신설 1식 및 통로암거 설치(L=9m)
5. 점용기간 : 2022.10.24. ~ 2027.12.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1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노원구 상계동 813번지
 - 면 적: 242㎡(도봉구:130㎡, 노원구:112㎡)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중송전 전력케이블 매설
 - 내 역: 전력케이블(L=145m), 송전 4회선(D175mm*13공),
통신 3조(D100mm*3공)
5. 점용기간: 2020. 10. 05. ~ 2025. 12. 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2-3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안양천(영등포구, 양천구) 일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482, 484, 493, 494, 504, 504-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5가 31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9-379, 411-27
- 면 적 : 49.58㎡ (일시 1,289.8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목동교~도림천 간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내 역 : 작업구 2개소(공사 후 복구), 제수밸브 10개소(신설 2, 철거 후 복구 3, 폐쇄 5), 공기밸브 3개소(철거 후 복구 1, 폐쇄 2), 퇴수밸브 6개소(신설 1, 철거 후 복구 2, 폐쇄 3), 퇴수관로 95m, 가설전기(전기배선) 315m(공사 후 복구)

5. 점용기간 : 2022.10.28. ~ 2027.12.31.

6. 공사기간 : 2022.10.28. ~ 2023.12.15.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